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신영규

조성호·변영환·남윤재·김우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진

연구책임자	신영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변영환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위원
	남윤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우성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24-43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강혜규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ISBN 979-11-7252-060-1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4.43>

발|간|사

한국은 지속적인 출생률 감소와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문제에 대응하여 정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생률 감소 추세를 반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스웨덴의 인구 변화와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의 인구정책 수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신영규 부연구위원이 연구 책임을 맡았고, 원내의 조성호 연구위원, 남윤재 연구원이 참여하였으며, 원외에서는 Stockholm University의 변영환 박사와 김우성 박사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University of Gothenburg 이자연 박사님과 원내 이현주 선임연구위원께 특별히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2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직무대행

강 혜 규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스웨덴 인구정책의 발전과 동향	27
제1절 인구 관련 논의와 전개	29
제2절 인구 관련 정책의 특징과 현안	37
제3장 스웨덴의 인구 변화와 동향	43
제1절 도입	45
제2절 인구 성장	45
제3절 출산	51
제4절 이주	55
제5절 노동시장 인구	60
제6절 소결	63
제4장 스웨덴의 인구 관련 사회정책	65
제1절 노동시장정책	67
제2절 이민자 정책	80
제3절 가족정책	93
제4절 노후 소득보장	98

제5장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스웨덴과 한국의 인식 비교	109
제1절 조사 개요	111
제2절 조사 결과	112
 제6장 요약 및 결론	143
제1절 연구 요약	145
제2절 정책적 함의	152
 참고문헌	157
 부록	171
 Abstract	195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2-1〉 1930년대 및 1940년대 스웨덴 인구정책의 입법 현황	34
〈표 2-2〉 1960년대 이후 스웨덴 가족정책의 주요 변화	36
〈표 3-1〉 출산 국가별 입국자 규모(2023년 12월 31일 현재)	58
〈표 4-1〉 스웨덴 내 이주 인구의 규모와 구성 변화	82
〈표 4-2〉 스웨덴 아동수당 및 대가족보조금 현황(2024년)	98
〈표 5-1〉 스웨덴 및 한국 설문조사 개요	112
〈표 5-2〉 향후 결혼 의향	113
〈표 5-3〉 향후 자녀 출산 의향	116
〈표 5-4〉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	119
〈표 5-5〉 일반적인 적정 자녀 수에 대한 인식	121
〈표 5-6〉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고려사항별 중요도	124
〈표 5-7〉 자녀 출산에 따른 생활 변화에 대한 인식	128
〈표 5-8〉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에 대한 성역할 인식	130
〈표 5-9〉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에 대한 성역할 인식	133
〈표 5-10〉 어린 자녀 양육에 대한 성역할 인식	136
〈표 5-11〉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 정도	139
〈표 5-12〉 최근 인구 변화에 대한 인식	142

그림 목차

[그림 3-1] 스웨덴의 총인구 변화(1749~2023년)	47
[그림 3-2] 스웨덴 출생, 사망 및 인구 자연 증감 추세(1749~2023년)	49
[그림 3-3] 스웨덴 입국(international immigration)과 출국(international emigration) 및 순 국제 인구이동(net international migration) 동향(1851~2023년) ...	50
[그림 3-4] 스웨덴 기간 합계출산율(period total fertility rates)(1891~2022년)	52
[그림 3-5] 스웨덴 출산율 동향(1970~2023년)과 장기추계(2023~2070년)	54
[그림 3-6] 스웨덴 등록 인구 중 입국자(스웨덴 외 출생자)와 입국자 2세대(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입국자인 스웨덴 출생자)의 비중(2002~2023년)	59
[그림 3-7] 스웨덴 성별 고용률(15~74세 기준)(2001~2023년)	61
[그림 3-8] 스웨덴 성별 실업률(15~74세 기준)(2001~2023년)	61
[그림 3-9] 연령별 NEET 인구 비율(2007~2023년)	62
[그림 4-1] 스웨덴 및 주요 OECD 회원국 고용률 추이(2007~2018년)	70
[그림 4-2] 스웨덴 및 주요 OECD 회원국 노동조합 가입률 추이(1990~2018년)	70
[그림 4-3] 스웨덴 실업급여 수급자 규모 현황(2012~2023년)	73
[그림 4-4] 스웨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재정 지출 구성 변화(2000~2022년)	77
[그림 4-5] 스웨덴 및 주요 OECD 회원국의 가족정책 공공지출 규모(2019년)	95
[그림 4-6] 스웨덴 공적연금의 기본 구조	107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적 성과 부족
 - 한국은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대응하고 있지만, 정책적 성과는 부족함.
- 성공적 인구정책 경험이 있는 스웨덴의 사례 검토 필요
 -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성공적인 인구정책 사례를 보여준 스웨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스웨덴은 북유럽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음.
- 스웨덴 사례 검토를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 도출
 - 따라서 본 연구는 스웨덴이 다양한 정책과 제도로 인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맥락과 배경을 탐색하여 한국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기존의 국내 연구는 스웨덴의 가족정책 및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지만, 본 연구는 스웨덴의 사회정책 전반 및 이민정책까지 폭넓게 검토하고자 함.
 - 또한, 한국과 스웨덴 시민들의 결혼, 출산, 양육 등에 관한 인식을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참고함.

2. 주요 연구 내용

가. 스웨덴 인구정책의 발전과 동향

□ 1930년대 출산율 감소와 정책의 시작

- 1930년대 들어 스웨덴은 산업화로 인한 출산율 감소를 경험하였고, 알바와 군나르 뢰르달 부부는 과학적·민주적 방식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부모 됨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출산율 저하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음.
- 당시 다자녀 가정 주거 지원, 유급 출산휴가, 피임기구 판매 허용, 낙태 규제 완화 등이 주요 정책으로 도입되었음.

□ 1960년대 이후 성평등 정책 확대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지위 상승에 따른 대응으로 성평등 정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음.
- 부모휴가제도가 확대되고 공공 보육서비스가 전국에 확대되어 부모의 육아 부담 감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가정 내 성역할 평등 향상 등으로 이어짐.

□ 최근 스웨덴의 인구정책

- 최근까지 스웨덴은 보편적이고 관대한 가족정책으로 부모와 아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부담을 낮춤.
- 그럼에도 스웨덴에서도 2010년대 이후 출산율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원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나. 스웨덴의 인구 변화와 동향

□ 역사적 인구 성장

- 18세기까지 스웨덴의 인구는 200만 명 이하였지만, 꾸준한 인구 성장으로 2023년에는 1,055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 스웨덴 인구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대 수명 증가와 국제적 이민자 증가가 꼽힘.
- 1930년대에 감소하였던 스웨덴 인구는 20세기 중반 이후 정책적 노력으로 안정화되었으나 최근 다시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와 경제적 불확실성 등이 지목됨.

□ 고령화 진행

- 스웨덴의 기대 수명은 여성 84.9세, 남성 81.6세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인구 고령화로 이어짐.
-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의료·복지 시스템 부담 증가, 사회적 비용 확대 등의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음.

다. 스웨덴의 인구 관련 사회정책 및 시민 인식

□ 노동시장정책

-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 감소, 고용률 증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이는 높은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연대임금제도와 포괄적 단체교섭 제도를 통해 이루어졌음.

4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안정적이고 관대한 실업급여를 제공하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됨.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해 직업훈련, 공공 고용 창출, 임금보조금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함.
- 이민자 지원으로 스웨덴어 교육, 직업훈련, 시민 교육 등이 제공되고, 소득보장을 위해 수당도 지급함.

□ 이민자 정책

- 스웨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력을 충당할 목적으로 이민자와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지만, 1970년대 경제 침체로 노동 이민 규모를 축소하였음.
- 스웨덴의 초기 이민자 정책은 다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평등한 처우와 문화 다양성을 강조하였지만, 점차 사회통합을 강조하며 스웨덴어 및 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음.
- 최근에는 고숙련 노동자 이민은 장려하지만, 비숙련 노동자 이민은 제한하고 있으며, 난민은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수용하고 있음.

□ 가족정책

- 스웨덴의 가족정책에 대한 예산 투입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는 부모 모두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를 목적으로 함.
- 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 주도로 제공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가 차등 적용됨.

- 가족을 위한 대표적인 현금 급여로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이 보편적이고 관대하게 제공되고 있음.
 - 학생 및 실업자에게도 유급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됨.

□ 노후 소득보장

- 스웨덴의 공적연금은 보편적 복지 원칙 구현과 노인 빈곤 감소라는 목표를 위해 발전해왔음.
- 1990년대 연금 개혁을 통해 스웨덴의 공적연금은 확정 기여형 체계로 전환되었고, 생애 소득을 기반으로 급여액이 계산되기 시작하였으며, 기대 수명 및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장치가 도입되었음.
- 현재 스웨덴의 공적연금 체계는 보장연금, 소득연금, 프리미엄 연금 세 가지로 구성됨.
- 연금 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성이 확보되었지만, 소득대체율은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직장연금의 중요성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남.

□ 인식 조사 결과

- 스웨덴 응답자 중 결혼 의향이 있는 비율은 한국보다 낮지만, 출산 의향이 있는 비율은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 스웨덴에서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갖고자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함.
- 평균 자녀 계획 수는 스웨덴이 2.35명으로 한국의 1.74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집계되었음.
- 스웨덴에서 출산이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은 약 66%로, 한국(92.7%)보다 크게 낮았음.

- 자녀 양육이 여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은 스웨덴이 29.9%로 나타나 한국(21.4%)보다 높았음.

3. 결론 및 시사점

□ 정책 간 정합성의 필요성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뿐 아니라 노동시장정책, 이민자 정책, 노후 소득보장정책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스웨덴은 인구 문제를 ‘인구정책’으로 국한하지 않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하려 노력하였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이민자 정착 지원, 안정적 노후 소득보장 등 다양한 정책이 출산율 유지에 기여하였음.
- 한국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정책의 파편화를 탈피하고,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회구조적 개선과 정책 간 정합성을 확보해야 함.

□ 포용적 이민자 정책의 필요성

- 스웨덴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였고, 그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며, 보편적 교육·직업훈련 및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
- 최근 스웨덴에서 이민자 관련 갈등과 사회문제가 보고되고 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스웨덴의 인종·종교 갈등 수준은 낮은 편임.

- 한국 역시 낮은 출산율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스웨덴처럼 포용적이고 평등한 이민자 정책 도입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양육 부담 완화와 사회구조 개선

- 스웨덴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양육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전통적인 성별 분업 대신 평등한 성역할과 새로운 가족 모델을 만들어 왔음.
- 한국이 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비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전반의 개선이 필요함.
- 현금 지원과 서비스 확대를 넘어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고,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양육 가정을 평등하게 지원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주요 용어: 스웨덴, 인구정책, 양성평등, 결혼, 출산, 양육, 가족정책, 이민자 정책, 노동시장 정책, 노후 소득보장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97년 이후 1.5를 넘지 못했고, 2018년에는 0.977로 1.0 아래로 떨어진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22년에는 0.78까지 하락했다(통계청, 2024). 한편, 2000년에 7.2%였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여 2023년에는 18.2%를 기록했고, 2042년에는 35.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지속으로 인해 2021년부터 한국의 총인구수는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41년부터는 인구 규모가 5천만 명을 밑돌고, 2044년에는 인구부양비가 80을 넘을 전망이다(통계청, 2024. 09. 23).

한국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입했지만, 긍정적인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육아휴직,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높은 노인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정책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현행 정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작업의 출발점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의 인구정책 사례를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일은 정책적 대안 도출에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북유럽 복지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스웨덴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0년대 들어 꾸준히 감소하여 2021년에는 1.67을 기록했지만, 2002년 이후 매년 OECD 회원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OECD, 2024a).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가족정책, 양성평등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포용적 이민정책 등 다양한 정책의 도입과 조합을 통해 출산율을 유지하거나 높여왔다(Andersson, 2008). 따라서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인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인구구조 대응에 관한 기존 국내 연구들은 주로 가족정책과 양성평등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스웨덴 사례를 분석하였지만, 스웨덴의 사회정책 전반과 이민정책까지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가정 균형과 양성평등 달성을 목적으로 한 스웨덴의 개별 정책들이 국내에도 소개되었으나 다양한 정책들 사이의 관계와 스웨덴의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웨덴 인구정책의 발전 과정을 검토하고, 다양한 정책들의 맥락과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스웨덴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구 문제,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스웨덴 시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선행연구 검토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출산율과 성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인구구조를 보여왔지만, 2010년 이후, 이러한 국가들에서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는 북유럽의 안정적인 출산율 패턴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Hellstrand et. al., 2021). 반면,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이미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인구 감소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급격한 전환, 경제적 불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변화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지적된다(Frejka & Gietel-Basten, 2016).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는 장래 노동력의 부족 및 고령화, 연금 및 고령자 케어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Sobotka et. al., 2019), 각 국가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우선 과제는 스웨덴의 인구구조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정책들을 폭넓게 조사하는 것이므로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출산율이나 개인의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구와 관련하여 복지국가 스웨덴의 특징으로 언급되는 노동시장정책, 이민자 정책, 가족정책, 노후 소득보장의 네 가지 정책이 출산율 또는 출산 의도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가. 노동시장정책

여기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그중에서도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이 출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각각 1974년, 1978년에 부부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마련하였고, 각각 1995년, 1993년에 아버지에게 한 달을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Duvander & Johansson, 2012; Ellingsæter 2007; Ellingsæter & Leira, 2006; Lundkvist, 2011). Duvander et al.(2020)은 이러한 할당 제도의 도입이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국가 인구 통계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해당 데이터에는 부부의 나이, 소득, 교육 수준, 출산 순위, 결혼 상태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의 특징은 준 실험(quasi-experimental) 접근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아버지 할당제(father's quota)를 도입한 전후의 세대들과 비교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이 출산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노르웨이의 분석 결과, 아버지 육아휴직의 도입이 둘째와 셋째 자녀의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스웨덴에서는 아버지 육아휴직의 도입이 저소득층 가정에서 셋째 자녀를 가질 가능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결과는 통제 변수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이며, 통제 변수를 추가한 이후에는 유의미하지 않아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 효과 분석 결과에서는 노르웨이의 경우, 정책 도입 전에도 소수의 아버지만이 육아휴가를 사용했으며, 정책이 도입된 후에도 사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육아휴직의 도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이미 많은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었고,

정책 도입 이후에는 모든 계층에서 육아휴가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 아버지들의 사용률 증가가 두드러졌고, 이는 세 번째 자녀의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스웨덴은 아버지 육아휴직의 도입이 큰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이전의 스위스는 많은 기업에서 육아휴직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했지만, 모든 여성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었고, 출산한 여성에게 14주의 유급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05년에 제도를 마련하였다. Girsberger et al.(2023)은 스위스가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것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앞의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분석에서도 사용된 이중차분법(DID)으로 14주의 육아휴직제도가 둘째 자녀 출산 가능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4주의 육아휴직제도는 둘째 자녀 출산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후 둘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약 2% 증가했으며, 이러한 효과는 제도 도입 이후 9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 제도가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어린 자녀가 있음에도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한 효과가 있었다.

동유럽의 루마니아는 1990년에 육아휴직제도의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전에는 산전 52일, 산후 60일로 총 112일의 유급 출산휴직제도가 있었으나, 1990년의 개정을 통해 어머니들은 출산 후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Hiriscu(2024)는 회귀 불연속 설계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과 이중차분법(DID)을 이용하여, 1990년 1월 19일 이전과 이후에 출산한 어머니들이 21개월 이내에 둘째 자녀를 출산할 확률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제도의 확대는 21개월 이내에 둘째 자녀를 가질 가능성을 약

2.5% 증가시켰으며, 이 효과는 특히 25세 미만의 어머니와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 여성은 육아휴직을 통해 더 나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추가적인 출산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제도 확대 효과는 7년 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이는 육아휴직제도가 출산 시기의 긍정적인 조정을 통해 장기적인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 이민자 정책

이민은 국가 간의 인구이동(migration)으로 경제학적 요인과 인구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국제 인구이동의 경제학적 요인은 주로 국가 간 임금 격차에 따라 임금이 낮은 국가에서 임금이 높은 국가로의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설명한다(Powell, 2015). 반면, 인구학에서는 한 국가에서 인구를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s)과 흡입하는 요인(pull factors)이 있다고 정의한다(Lee, 1966). 예를 들어, 경제학에서 국제 인구이동의 중요한 요인인 임금의 경우, 임금이 낮은 국가는 임금 자체가 타 국가로 인구를 밀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임금이 높은 국가는 인구를 흡입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경제학과 인구학에서 설명하는 국제 인구이동의 요인을 크게 보면 동일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지난 2008년에 발생한 세계 경제 불황은 국가 간의 이동에 큰 영향을 미쳤고, Anelli & Balbo(2021)는 이러한 국가 간 이동이 이탈리아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탈리아인의 국제 이주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는데, 국외로 이주한 이탈리아인들이 대체로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낮은 인구 그룹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이주하지 않았다면 출산율이 더

낮았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경제 불황으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국외 이주가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이것은 이주가 없었다면 경제 불황이 출산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을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국제 이주가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들이 경제적 기회(취업 등)를 찾아 해외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로 인해 이주하지 않은 인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이 관찰되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국제 이주는 한 국가가 아닌 본국(origin country)과 이주국(destination country)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구학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Desiderio(2020)는 국제 이주가 이주국과 출신국 양쪽 모두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 이주 데이터와 출산율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국제 이주 데이터는 이주자와 그들의 본국, 이주국 간의 인구이동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였고, 출산율 데이터는 이주자의 본국과 이주국의 출산율(TFR)을 분석하여 각 나라의 인구 통계적 변화를 추적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주자들이 높은 출산율 국가 출신인 경우, 그들의 이주국 출산율을 증가시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주국의 출산 규범을 점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 즉 동화(assimilation) 및 적응(adaptation)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주자들이 이주국에서 오랜 기간 체류할수록 이주국의 출산 패턴에 동화되어 이들의 출산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주국의 평균 출산율에 점차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이는 이주자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본국으로 돌아온 이주자들은 그들이 경험한 이주국의 출산 규범을 출신국에 전파할 수 있으며, 이는 본국의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이민자들은 본국보다 출산율이 높은 국가 출신이므로, 이민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지만, 이것은 주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 온 이민자의 출산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최근 많은 국가가 저출산 국가이므로, Mussino et. al.(2021)은 만일 저출산 국가에서 오는 이민자가 많아질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스웨덴으로 이주한 저출산 국가 출신 이민자 여성들의 출산율 변화와 적응 패턴을 분석하였다. 스웨덴 통계청(Statistics Sweden)의 인구 등록부 데이터(Migrant Trajectories data collection)를 사용하여 1968년에서 2017년 사이 스웨덴에 거주한 모든 이민 여성들의 출산량(quantum)과 출산 시기(tempo)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민 여성들은 출산 시기(첫 출산 나이)에서 스웨덴의 패턴에 적응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스웨덴에 이주한 후 비교적 빨리 스웨덴 출산 패턴에 적응해 첫 출산 나이를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더 어린 나이에 스웨덴으로 이주한 여성일수록 스웨덴 여성들과 비슷한 나이에 첫 자녀를 출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출산량, 즉 자녀 수에서는 적응이 덜 나타났으며, 스웨덴에 더 오래 거주한 경우에도 자녀 수는 스웨덴 여성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태어난 이들의 2세들은 부모 세대보다 출산율이 더 낮았으며, 스웨덴 출신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도 자녀 수가 적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유럽 출신 2세 이민자들은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다. 가족정책

가족정책은 아동 복지와 제도 또는 생활 방식으로서의 가족 지원에 중점을 둔 국가 정책을 말하며, 광의의 가족정책은 인구 통계,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자원, 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연관성, 사회 조직으로서 가족의 역할 및 중요성과 관련이 있으며, 협의의 가족정책의 가장 일반적인 구성 요소는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현금 혜택, 육아 및 조기 교육 서비스, 가족 관련 목적을 위한 고용 휴가 등으로 구성된다(Daly, 2015).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서는 가족·아동 정책(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영역을 가족·아동 정책총괄(general policies for families with families), 자녀 관련 휴가(child-related leave), 영유아 공보육 및 교육(formal care and education for very young children), 아동돌봄체계(typology of childcare systems)로 분류 및 정의하고 있어(김은지 외, 2023), 이와 관련된 정책을 다룬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Luci & Thévenon(2013)은 1982~2007년 18개 OECD 국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족정책이 출산율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8개 OECD 국가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이 데이터에는 국가별 출산율과 가족정책 변수를 포함하여, 국가 간 및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금 지원과 아동 보육 서비스는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 직후가 아닌 자녀 양육 기간에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지원과 보육 서비스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산과 관련된 유급 휴가는 출산율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급 휴가가 주로 출산 직후의 짧은 기간만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Frejka & Gietel-Basten(2016)은 15개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에서 출산율 변화 추세와 그에 대한 가족정책의 영향을 OECD, Human Fertility Database와 Eurostat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책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국가에서 시행된 가족정책을 네 가지 모델로 구분하였는데, 첫 번째는 포괄적 가족정책 모델(Comprehensive family policy model), 두 번째는 친출산 정책 모델(Pro-natalist policies model), 세 번째는 임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Temporary male bread-winner model), 그리고 네 번째는 전통적 가족정책 모델(Conventional family policies model)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1990년 이후에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태어난 세대에서 출산율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났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가족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포괄적 가족정책 모델(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이로써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친출산 정책 모델(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은 금전적 지원에 의존한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체코, 슬로바키아)은 육아휴직제도가 잘 정비되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실패하여 출산율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가족정책 모델(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은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최근 수십 년간 스페인은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해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lowest low fertility)을 기록하고 있으며, 스페인 여성의 출산 연령은 평균 32.6세로 매우 늦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스페인 정부는 다양한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Miguel et. al.(2023)은 그 중에서 부모휴가(parental leave), 공공 유치원 서비스(public pre-school service), 금전적 지원(monetary benefits) 등의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08~2019년 스페인의 출산율과 가족정책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과 전략적 시나리오 기법(strategic scenarios)을 바탕으로 개발된 수학적 모델을 활용하여 장래 출산율 변화를 예측한 이 연구는 스페인에 어떤 가족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출산율 감소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또한, 가족정책은 출산율을 일정 부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국제적 불확실성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출산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독일 또한 유럽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낮은 수준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족정책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녀 수당(child benefit)은 유럽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1996년에 자녀 수당 개혁이 진행되었는데, Riphahn & Wijnck(2017)는 독일의 자녀 수당의 개혁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독일에서 가장 큰 국가 단위 설문조사인 Mikrozensus 데이터와 독일 사회경제 패널(Socio-economic Panel, SOEP)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가정에서 자녀 수당 개혁이 첫째 자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수당이 첫째 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둘째 자녀

출산율은 자녀 수당 개혁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수당이 첫째 자녀 이후에 추가 출산을 결정할 때 경제적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라. 노후 소득보장

농경 시대에 자녀는 노동력으로 기여하거나, 노후에 부모를 부양하는 역할을 했고, Becker(1981)는 이를 투자재로서 자녀를 갖는 목적이라 하였으며, 현재에도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자녀가 노후 보장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자녀를 가지려는 욕구가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노후 안전 가설(old-age security hypothesis)이라 한다 (Leibenstein, 1957).

대표적인 노후 소득보장 제도인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Evan & Vozárová (2017)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금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1990~1999년 동안에는 연금 지출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연금 지출이 17% 증가할 때 출산율은 0.34명 감소하였다. 이는 노후 보장이 강화됨에 따라 자녀를 통한 노후 부양의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00~2013년 동안에는 연금 지출의 부정적 영향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나 그 강도는 다소 약해졌다.

미시적인 접근법으로 브라질의 연금제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Danzer & Zyska(2023)의 연구는 연금 개혁으로 인해 여성들의 출산율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완결 출산율¹⁾은 개혁 이후 20년간

1) 45세를 기준으로 하였다.

평균적으로 1.3명 감소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출산 확률이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제도가 노후 부양을 위한 자녀의 필요성을 줄임으로써 추가 자녀 출산을 억제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나미비아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녀를 통한 노후 부양이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앞서 노후 안전 가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 연금제도가 없거나 미비한 사회에서는 부모가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미비아는 1990년대에 사회 연금을 확대하면서 이러한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Rossi & Godard(2022)는 나미비아의 사회 연금제도의 확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연금제도가 확대된 후, 특히 30세 이후의 여성들 사이에서 출산율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노후 보장이 강화되면서 자녀에 의존할 필요성이 줄어든 결과로 해석되며, 노후 안전 가설의 타당성을 높이는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소결

이 절에서는 출산율이나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폭넓게 검토해보았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노동 시장정책에 있어서 육아휴직제도가 잘 활용되면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서 추가 자녀 출산 가능성이 증가하고,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정책에서 이민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주국의 출산 패턴에 적응하여 출산율이 점차 이주국의 평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주자의 출산율이 높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적 통합과 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지면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제 인구이동은 본

국의 경제적 불안정성이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본국의 출산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가족정책에서 자녀 양육 기간에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지원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회성 지원보다 장기적인 지원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동 보육서비스의 제공과 이용률 증가는 부모의 일·가정의 양립을 원활하게 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보육시설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출산율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유급 육아휴직은 주로 출산 직후의 단기간에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인 출산 계획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가족정책은 현금 지원, 보육서비스,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정책들이 결합될 때, 출산율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소득보장정책에서 연금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을수록, 자녀를 통해 노후를 부양받을 필요성이 줄어들어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노후 보장이 강화됨에 따라 자녀를 더 많이 낳을 동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금 같은 노후 소득보장정책이 강화될수록, 장기적으로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나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2. 연구 내용

앞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스웨덴의 인구정책을 노동시장정책, 이민자 정책, 가족정책, 노후 소득보장정책 네 영역으로

확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즉, 각 영역에서 스웨덴이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무슨 정책들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검토한다.

이에 앞서 스웨덴의 인구전략 및 인구정책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스웨덴의 인구 관련 논의와 접근 방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스웨덴의 인구구조 변화와 현황을 관련 지표들을 통해 탐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구 문제, 결혼, 출산, 양육에 관한 스웨덴과 한국 시민들의 인식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 국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스웨덴의 인구정책을 분석한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스웨덴 인구 관련 데이터 및 통계자료를 검토하고, 스웨덴의 인구전략 및 이민정책에 관한 기존 문헌을 분석한다. 또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된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한 문헌을 살펴본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한국과 스웨덴 시민의 인구 문제, 결혼, 출산, 양육, 그리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는 조사업체의 응답자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했으며, 조사 대상은 한국과 스웨덴 거주 시민 각 2,500명이다. 조사표는 공통 설문지를 개발한 후 현지 언어로 번역 및 검수 과정을 거쳐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웨덴의 인구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세부 정책들 사이의 관계, 인구 관련 최근 쟁점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취합하였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스웨덴 인구정책의 발전과 동향

제1절 인구 관련 논의와 전개

제2절 인구 관련 정책의 특징과 현안

제2장 스웨덴 인구정책의 발전과 동향

본 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스웨덴의 인구정책이 어떤 경로를 통해 발전했는지를 확인하고 최근의 동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인구정책 초기에 스웨덴의 정치·사회적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로 인해 어떤 정책들이 도입되고 변경되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스웨덴 인구정책의 근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변곡점이 되었던 1930년대와 1960년대의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후 최근 스웨덴의 인구 관련 정책의 특징을 정리하고, 쟁점으로 논의되는 현안들을 간략히 검토한다.

제1절 인구 관련 논의와 전개

1. 1930년대 이전

스웨덴은 1749년부터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인구 통계를 작성해 왔다(Sköld, 2004). 하지만 인구 문제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가 본격화된 1870년대이다. 이 시기 다른 유럽의 산업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스웨덴에서도 도시화와 산업화, 세속화에 따른 출산율의 저하가 시작되었고, 이 흐름은 2차 세계 대전 이후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 시기 스웨덴에서 이루어진 출산율 감소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대응 역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다르지 않았는데,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흐름을 반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정책 대응은 전통적인 성관계, 가족 제도, 모성보호를 지원하여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Winter, 1988). 구체적으로 1910년에 피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임기구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고, 낙태는 엄격히 금지되었다. 또한 모성보호를 위해 1900년에 출산휴가 조항을 담은 노동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여성에게 출산 직후 4주 동안 고용주가 일을 시킬 수 없도록 강제하는데, 그 목적은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에 필요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유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모유 수유를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1912년에 휴가 기간이 6주로 연장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적 지원이 없는 무급 휴가였다. 1911년에 유급 출산휴가(maternity insurance) 법안에 대한 의회 표결이 이루어졌지만, 이 법안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즉시 폐기되었다. 무급 규정은 아이를 낳은 여성에게 경제적인 수입을 담당하는 남편이 존재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Ohlander, 2012).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1870년대에 태어난 여성들 가운데 네 명 중 한 명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고, 노동자 계층에서는 혼외 출생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 또한 남편이 있지만,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거나, 가정을 버리고 떠난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1900년대 초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세 명 중 한 명이 (남편의 도움 없이) 아이들을 홀로 책임지고 있었다. 또한 이 비율은 낮은 사회계층에 속할수록 높게 나타났다(Ohlander, 2012).

이 시기 사회민주당(사민당)과 노동조합(노조) 내의 여성위원회에서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출산휴가 기간에 경제적 지원, 학교에서 급식 제공, 혼외자의 아버지에게 경제적 책임 부과, 피임과 출산 계획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 보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민당과 노조 내에서

다수 의견으로 채택되지 못했고, 사민당 역시 당시에는 의회 내 소수 정당에 불과했다.

이 시기 출산율 하락의 흐름은 지속되어서, 1900년경에 가족당 평균 4명의 아이를 가졌던 것에 반해 1930년대에는 가족당 평균 2명 이하로 줄었다(Ohlander, 2012).

2. 1930년대 인구정책으로서의 가족정책의 시작

스웨덴의 인구정책은 1930년대에 첫 번째 전환점을 맞게 된다. 1930년대 초반의 출산율은 여성 한 명당 1.67 수준으로 떨어졌는데(Winter, 1988), 이 수준은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인 2.1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더욱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인구정책의 전환점은 1934년 “인구 문제의 위기(Kris I Befolkningsfragan)”라는 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회학자이자 사민당 여성 그룹에서 활동했던 알바 뮈르달(Alva Myrdal)이 남편이자 사민당 동료이며, 훗날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경제학자인 군나르 뮈르달(Gunnar Myrdal)과 함께 쓴 이 책은 사회과학 서적임에도 당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인구 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1935년 의회 내에 초당파적으로 인구위원회(Population Commission)가 설립되고,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민당이 “가족을 복원하는 정부”를 표방하며 1936년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뮈르달 부부의 인구 문제에 대한 진단과 제안에 기반한 인구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Winter, 1988). 스웨덴어 사전에 인구정책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Ohlander, 2012).

뮈르달 부부는 출산을 감소가 가져올 사회적인 결과, 즉 사회와 경제가 활력을 잃고, 민주주의가 노인 세대의 관점에서 운영되며, 스웨덴이라는 국가와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Winter, 1988).

그런데 스웨덴의 정책적 대응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국가들에서 보이는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개인들의 자발적인 부모 되기(voluntary parenthood)를 촉진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또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통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보수주의자들과 달리, 출산에 있어서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했다. 뮈르달 부부는 당시 50%에 가까운 아이들이 여성이 원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난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이런 경우 많은 가정들이(특히 여성 단독 가정)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아이들이 스웨덴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할 때, 아이들의 수뿐 아니라 질이 중요하고, 개인들이 원하는 배우자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의 아이들 갖게 될 때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다고 보았다(Myrdal, 1939).

구체적으로 교육활동을 통해 가족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가족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개혁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만드는 것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이들의 보건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현금 지원보다는 산모와 아이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보육, 의료, 교육 등의 사회 서비스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이 일을 하면서도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출산 관련 해고를 금지하고, 출산휴가 시 경제적 지원을 할 것과 여성이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성교육과 피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Myrdal, 1939).

뮈르달 부부의 제안은 보수당은 물론, 사민당과 노조 내에서도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구스타브 뮐러(1932년 이후 20년간 사회부 장관 역임)를 비롯한 사민당 지도부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민당이 추구하는 전면적인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동력과 중산층의 지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Ohlander, 2012). 이 판단은 맞았고, 1936년 선거로 구성된 1937년 의회 회기는 “어머니와 아이들”에 대한 회기로 불릴 만큼 인구정책으로서의 가족정책을 중심의 제로 다뤘다.

인구위원회는 1935년부터 1938년까지 활동하면서, 사회 각계의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 정치인들의 토의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와 18개의 부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인구위원회의 수많은 제안들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제안들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입법화된 인구정책들은 〈표 2-1〉과 같다.

먼저, 다자녀 가족에 대한 주택지원과 출산휴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법제화되었는데, 다만 그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한정되었다. 또한 청년세대가 가정을 쉽게 꾸릴 수 있도록 결혼자금 융자 지원이 도입되었다. 여성의 출산과 가족 계획에 대한 결정권을 높이기 위해 피임기구의 판매가 허용되었고, 낙태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다. 1939년에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해고를 금지하는 고용보호법이 제정되었고, 1947년에는 보편적인 아동수당이 도입되었다. 이 수당은 아이의 어머니에게 지급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주부들과 농촌의 여성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수입을 가지게 되었다(Ohlander, 2012).

〈표 2-1〉 1930년대 및 1940년대 스웨덴 인구정책의 입법 현황

입법년도	법안	내용
1935	사회주택 지원법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자녀 가족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1937	결혼자금 융자법	청년들이 결혼 시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구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결혼자금 대출 지원
1937	출산 지원법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에 대해서 6주간의 출산휴가 기간에 생활자금 지급과 융자 지원
1938	피임기구 허용	피임기구의 판매를 금지했던 1910년 법의 폐기
1938	낙태법 개정	낙태에 대한 규제 완화
1939	고용보장법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1947	아동수당법	보편적인 아동수당의 도입

출처: 저자 작성.

3. 1960년대 이후 일과 가정에서 양성평등 정책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유럽의 나치주의자들이 인구정책이란 이름으로 특정 인종의 순수혈통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국가가 출산을 통제하고 개입한 것이 알려지면서, 1950년대 이후 스웨덴에서 인구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가족정책이란 이름으로 기존의 인구정책의 내용이 논의되고 실행되었다(Bergenheim & Klockar Linder, 2020; Etzemüller, 2011)

1930년대 인구정책에서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지만, 여전히 “출산과 아이들의 양”을 강조하고, 사회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인구위원회의 보고서는 남녀는 결혼해야 하고, 결혼이 성적 관계를 위한 최상의 형태임을 강조하고, 아이는 네 명을 낳아 기르도록 권장하고 있다(Hirdman, 1994). 반면 사회적인 지원은 여전히 최소한도로 남아 있었다.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책임으로 남아 있었

고, 경제적 지원은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었다. 여전히 가정주부를 주된 여성 역할 모델로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Lundqvist, 2015).

1960년대 들어 사민당 내의 여성운동 단체들이 1930년대의 인구 문제 해결(인구 규모 유지)을 주목적으로 하는 가족정책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개인의 행복과 권리증진에 목적을 두는 정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사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시민 개개인들의 존엄하고 인간적인 삶이 사회적 필요에 우선하는 목적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여성이 아이를 가질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Ohlander, 2012). 여성의 사회적 역할 또한 큰 변화가 있었는데, 1965년이 되면 이미 결혼한 여성의 44%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반면 당시의 복지국가는 공공 보육시설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가정과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이 유지되고 있었다(Lundqvist, 2015).

이에 1960년대에 사민당 정부는 일과 가정, 사회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한다. 1962년, 의회에 가족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아이를 기르는 가정과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공공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어머니에게만 주어지던 출산휴가(maternity leave)와 출산수당(maternity allowance)은 1970년대부터 부모 모두가 사용하는 부모휴가(parental leave)와 양육보험(parental insurance)으로 전환되었다. 여성의 가족 계획에 대한 선택권도 보장되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주요 정책 변화를 요약하면 <표 2-2>와 같다.

이 시기는 또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이 부족하여 기업과 노조 모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사민당 정부는 기존에 주부 역할을 하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이들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과 공공 보육서비스를 확대

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뤄진 정책 추진의 결과로 고용이 되지 않은 여성의 수는 1960년대 중반 120만 명에서 1990년 8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Lundqvist, 2015).

〈표 2-2〉 1960년대 이후 스웨덴 가족정책의 주요 변화

정책 목표	정책 내용	연도
가족 계획의 선택권 보장	피임약 판매 승인	1964
-	낙태 허용	1975
-	일방의 자유의사로 이혼 성립	1973
유급 출산휴가(여성만)	3개월, 기본 수준 급여	1955
유급 출산휴가(여성만)	6개월, 기본 수준 급여	1963
부모휴가(부모 모두)	6개월, 90% 임금	1974
부모휴가 확대	9개월(90% 임금) + 3개월(기본 급여)	1980
부모휴가 확대	12개월(90% 임금) + 3개월(기본 급여)	1989
부모휴가 아버지 쿼터 도입	12개월(75% 임금) + 3개월(기본 급여) 12개월 중 1개월은 아버지(또는 어머니)에게 할당	1995
아버지 쿼터 연장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	2002
아이 병가 도입	아이가 아플 때 사용, 연간 10일, 90% 임금	1974
아이 병가 기간 연장	최대 연간 60일	1989
파트타임 전환 권리	육아 기간 근무시간/일수 단축 권리	1979
일에서 동등 기회법	직장에서 남녀 동등 기회 보장	1980

출처: 1) "Does family policy affect fertility? Lessons from Swede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Björklund, A., 2006,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 "Parenthood change and policy reform in Scandinavia," 1970s-2000s. In *Politicising Parenthood in Scandinavia*, Leira, A., 2006, Policy Press.

3) "The invisible child? The struggle for a Social democratic family policy in Sweden, 1900-1960s", In G. Bock & P. Thane Editor(Eds.), *Maternity and Gender Policies: Women and the rise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s, 1880s-1950s*, Ohlander, A. S., 2012, Routledge.

제2절 인구 관련 정책의 특징과 현안

1. 인구 관련 정책의 특징

현재 스웨덴의 인구 관련 정책은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에서 부모 모두 동등하게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인구정책이란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1930년대에 인구정책으로 제안된 내용들이 가족정책, 사회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가족정책은 1930년대에 기초가 놓이고, 1960년대 발전된 원칙들을 계승하고 있다. 첫째로 자발적인 부모 되기를 촉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가 개인들의 결혼, 출산, 육아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신 부모와 아이 개개인이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조건의 형성과 증진에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둘째로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중심에 놓고, 원하는 배우자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의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 셋째로 일과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여성이 경제활동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남성이 경제활동 때문에 아이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육아와 가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넷째로 모든 아이의 건강과 교육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인 정책들도 1960~1970년대 도입된 정책들을 계승, 확장하고 있다. 첫째로, 개인들이 자유의사에 기반해 가족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피임과 낙태, 이혼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없애거나 최소로 하고 있다.

둘째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부모휴가는 2024년 현재 1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고(출산 예정 2개월 전부터 사용 가능), 이 기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보험에서 소득에 비례하는 급여를 지급한다(13개월은 소득비례 급여, 3개월은 기본 급여). 부모휴가는 개별 가정의 상황에 따라 부모가 자유롭게 나눠서 사용할 수 있지만, 소득비례 급여가 지급되는 13개월 중 3개월은 나눠서 사용할 수 없다. 흔히 아빠 쿼터라고 불리는 3개월은 부모 중 한 명이 꼭 사용해야 한다. 부모휴가 기간은 아이가 여덟 살이 될 때까지 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 근무시간 단축과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무일수를 50%로 줄이고, 일하지 않는 50%에 대해서 부모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소득비례 급여는 임금의 80%를 지급하는데, 기준이 되는 임금의 상한선은 2024년 월 47,750크로나로, 스웨덴 평균 임금인 40,000크로나보다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임금이 평균 임금보다 20% 이상 높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80%보다 낮아지게 된다. 아이의 병간호를 위한 병가는 현재 12세 미만의 아이에 한해 연간 최대 120일까지 가능하다(Försäkringskassan, 2024).

셋째로 보육서비스는 현재 한 살 이상의 모든 아이들과 부모의 권리로서 확립되어 있다(한 살 이하 아이의 보육은 부모 책임). 보육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는데, 신청하는 모든 아이들에게(집에서 2킬로미터 이내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정도를 재정으로 부담한다. 2024년 현재 스톡홀름의 경우, 부모는 첫째아이의 경우 부모 월 소득의 3%(둘째 아이는 2%, 셋째 아이는 1%, 넷째 아이는 무료)를 보육시설 이용료로 내는데, 이 금액이 한 아이당 1,688크로나를 넘는 경우 1,688크로나만 낸다.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높게, 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Stockholms stad, 2024).

그렇다면 과연 스웨덴의 가족정책이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었을까? 1990년대 이후 인구학자들을 중심으로 스웨덴의 가족정책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Hoem, 1990, 1993, 2005). 스웨덴의 출산율은 1930년대에서 1970년대 말까지 1.6~1.7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1970년대 말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1980년대 말에 2.1 수준으로 오른다. 1970년대 말은 1960년대에 시작된 새로운 가족정책(일과 가정에서 부모의 동등한 역할 촉진)이 자리를 잡은 시기와 일치한다. 보육시설이 확대되어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능해지고, 부모휴가의 기간과 급여 수준이 대폭 확대된 시기이기도 하다. 육아 기간에 근무시간 단축도 가능해지고, 아이에 대한 병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과 가족의 양립이 수월해진 시기이기도 하다.

스웨덴뿐 아니라, 스웨덴 모델의 가족정책을 채택한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1980년대부터 출산율이 반등하고, 이후 인구대체율인 2.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스웨덴 모델은 인구학계의 조명을 받게 된다. 이 중 군나르 안데르손의 연구(Andersson, 2008)는 정밀한 인구통계 분석 방법을 통해서 스웨덴 여성의 최종 출산율이 1980년대 이후에 안정적으로 1.9~2.1 사이를 유지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가족정책이 출산율을 높게 유지하는 데 기여를 했음을 밝히고, 그 이유를 제도적인 변화가 가져온 개인의 행태 변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 소득세 과세와 개인별 사회보장 체계의 도입으로 부부의 성별 역할 분담에 대한 경제적 이점이 사라졌다. 둘째로 임금에 비례하는 부모휴가 급여는 여성들이 출산 이전에 노동시장에서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로 부모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무일수나 일하는 시간을 육아를 위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넷째로 부담 없는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전일제 어린이집을 통해

아이를 기르는 여성이 출산 직후에 직장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로 아이에 대한 병가를 통해서 부모가 아이의 필요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안데르손의 연구를 비롯해서 최근까지 사회학과 인구학의 다양한 국제적인 비교 연구들이 스웨덴 모델의 가족정책과 출산율의 관계가 유의미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Billingsley & Ferrarini, 2014; Billingsley, et al., 2022; Esping-Andersen, 2009).

2. 인구 문제 관련 현안

스웨덴의 합계출산율(TFR)이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10년 2.0 수준에서 2023년 1.6 수준으로 낮아졌는데(Statistics Sweden, 2024c), 그 원인에 대해 인구학자와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해당 연도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통계라, 이를 통해 현재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의 최종 출산율이 어떻게 될지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1970년대 말 이후 여성들의 출산 시기가 점차 늦어졌지만, 최종적으로 출산하는 아이의 수는 2명가량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2010년 이후 합계출산율의 감소가 최종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다른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쟁과 환경위기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점, 젊은 세대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는 점, 대도시의 주택난으로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 점,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지위 확보에 걸리는 기간이 예전보다 길어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

한 요인들로 인해서 스웨덴에서 향후 최종 출산율이 감소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3장

스웨덴의 인구 변화와 동향

제1절 도입

제2절 인구 성장

제3절 출산

제4절 이주

제5절 노동시장 인구

제6절 소결

제3장 스웨덴의 인구 변화와 동향

제1절 도입

본 장은 스웨덴의 인구변천 및 인구구성 변화에 관한 주요 통계를 바탕으로 인구 성장, 출산, 이민, 노동인구의 변화 등의 주요 인구 동향을 다룬다. 스웨덴의 인구 통계는 스웨덴 통계청이 정식으로 출범한 1968년 이후는 물론이고, 1968년 이전의 자료도 폭넓게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스웨덴 인구 동향의 모든 변화를 서술하기보다는 중요한 정책적 혹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인구의 변화와 최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구 동향, 예컨대 2010년대 이후 스웨덴의 출산율 감소와 꾸준한 국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인구 구성의 변화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스웨덴의 인구 변화를 인구 성장, 출산, 이주, 노동시장의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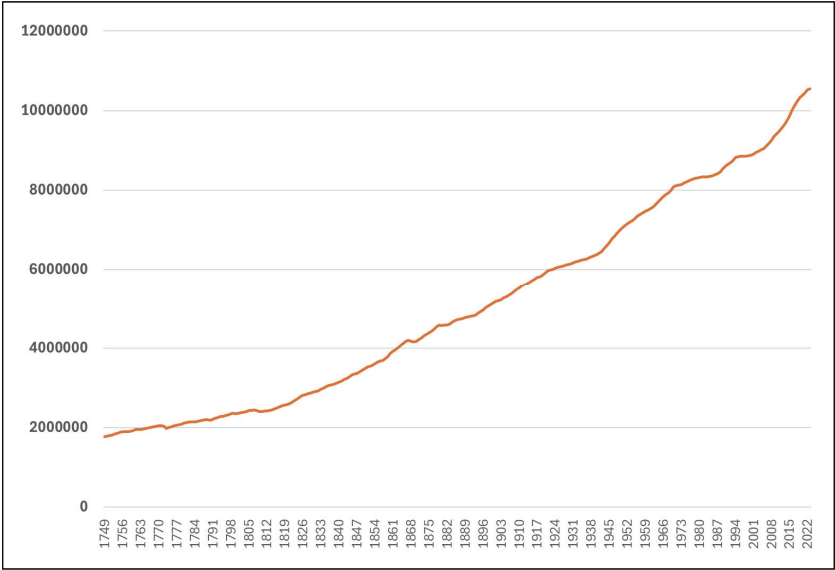
제2절 인구 성장

1. 인구 성장의 추이

출생, 사망, 이주 등 모든 인구 동태의 종합적인 결과물은 인구 규모의 변화이다. 스웨덴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의 기근과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자연 인구 감소와 19세기에 일어난 대규모 국제 인구 유출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꾸준한 인구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은 스웨

덴 통계청(Statistics Sweden, Statistikmyndigheten)의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18세기 중반부터 최근까지의 스웨덴의 인구 성장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공식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연도인 1749년의 스웨덴 인구는 약 176만 명으로, 현재의 인구인(2023년 12월 31일 기준) 1,055만의 약 1/6 수준이었다. 스웨덴 인구는 1767년에 처음으로 200만 명, 1835년에 처음으로 300만 명, 1897년에 처음으로 500만 명을 넘어섰다. 20세기에도 인구 성장은 꾸준히 이어져 1950년에는 처음으로 700만 명을 기록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대규모 국제 전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스웨덴은 전쟁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겪지 않았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대규모 노동 이민으로 인한 인구 증가를 경험했다. 21세기에 인구 성장세는 이전보다 둔화하였으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처음으로 인구 천만 명을 기록했으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스웨덴의 등록 인구는 약 1,055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2023년에 발표한 스웨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에도 스웨덴의 완만한 인구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2032년에는 1,100만 명, 2054년에는 1,200만 명, 인구추계 마지막 연도인 2070년에는 약 1,270만 명의 인구가 스웨덴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Statistics Sweden, 2023).

[그림 3-1] 스웨덴의 총인구 변화(1749~2023년)



출처: “Befolkningsutvecklingen i riket efter kön. År 1749-2023,” Statistics Sweden, 2024b. http://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sv/ssd/START_BE_BE0101_BE0101G/BefUtvKon1749/를 바탕으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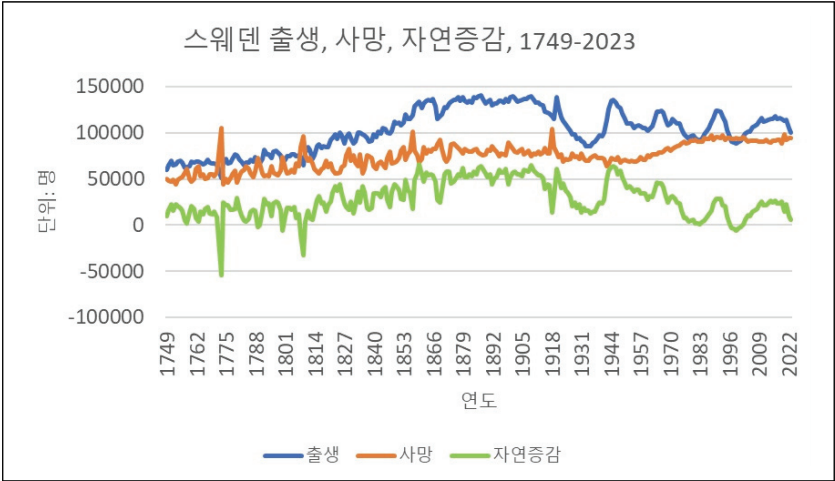
2. 스웨덴 인구의 자연 증감

인구 증감의 요인은 크게 자연 증감(출생과 사망의 변화)과 국제 인구 이동(입국과 출국의 변화)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구의 순 자연 증감은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로, 순 국제 인구이동은 입국자와 출국자의 차이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림 3-2]는 1749년부터 최근까지 스웨덴에서 발생한 출생자와 사망자의 규모와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인구의 자연 증감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770년대 초반과 1809년의 급격한 사망자 수 증가는 기근과 감염병으로 인한 초과 사망 때문으로, 해당 시기에는 인구 자연 감소(음의 인구 자연 증감) 두드러진다(Dribe et al., 2015). 19

세기 초반의 감염병 대유행 이후 스웨덴의 출생자 수는 1860년대까지 꾸준히 상승한 후 1910년대 초반까지 대해 13만 명에서 14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스웨덴의 출생자 수는 주기적인 변동을 보여주는데, 후술하겠지만 이는 가임기 여성 인구수의 변동보다는 출산율의 주기적인 변동과 더욱 관련이 깊다. 같은 기간에 사망자 수는 등락을 계속하다가 1930년대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증가했고,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초반 사망자 수의 감소는 의학 기술의 발전과 위생 및 영양상태의 개선으로 인한 나이별 사망률의 감소 때문이지만, 이후 인구 고령화로 인해 나이별 사망률이 높은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절대적인 사망 인구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망률 감소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는 기대여명인데, 0세 기대여명, 50세 기대여명, 그리고 65세 기대여명은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기간에도 COVID-19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꾸준히 상승하여 2023년 현재 여성의 0세 기대여명²⁾은 84.9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81.6세로 추정된다 (Statistics Sweden, 2024d).

2) 0세 기대여명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의 나이별 사망률 조건하에 평균적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수명이다. 예컨대 2024년 스웨덴의 여자는 2024년 현재 스웨덴의 나이별 사망률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평균적으로 84.9세를 살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2] 스웨덴 출생, 사망 및 인구 자연 증감 추세(1749~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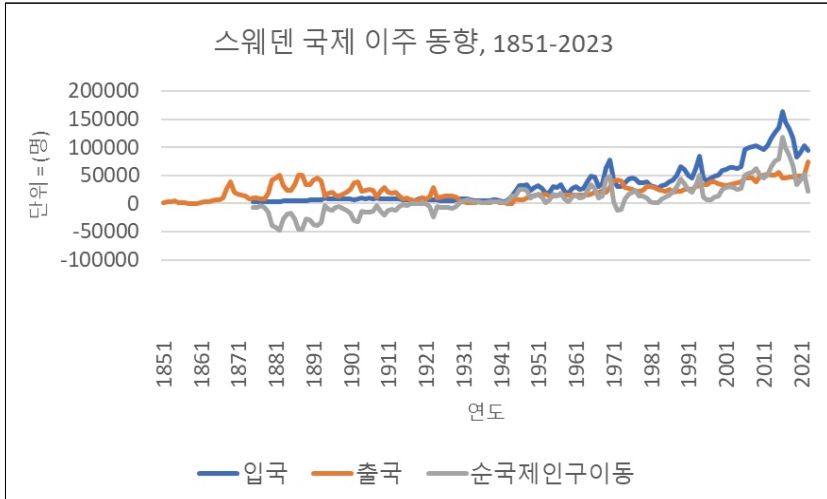


출처: “Antal personer med utländsk eller svensk bakgrund (fin indelning) efter region, ålder och kön. År 2002-2023,” Statistics Sweden, 2024a. https://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sv/ssd/START__BE__BE0101__BE0101Q/UtlSvBakgFin/를 바탕으로 재구성.

3. 국제 이주와 인구 증감

1809년에 마지막 순 자연 인구 감소를 보인 이후, 스웨덴은 2세기 가까운 기간 계속 순 자연 인구 증가를 보이다가 1997년부터 2001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능가하는 순 자연 인구 감소를 보인다. 인구의 자연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림 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웨덴의 총인구는 감소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이민으로 인한 인구 유입 때문이다.

[그림 3-3] 스웨덴 입국(international immigration)과 출국(international emigration) 및 순 국제 인구이동(net international migration) 동향(1851~2023년)



출처: "Antal personer med utländsk eller svensk bakgrund(fin indelning) efter region, ålder och kön. År 2002-2023," Statistics Sweden, 2024a. https://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sv/ssd/START_BE_BE0101_BE0101Q/UtlSvBakgFin/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3-3]은 스웨덴 통계청의 국제 이주 통계를 바탕으로 1851년부터 2023년까지 입국(international immigration), 출국(international emigration), 그리고 국제 이주가 전체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순 국제 인구이동을 보여준다. 입국과 출국 통계가 모두 제공되는 1875년을 기점으로 1930년대 초반까지, 스웨덴은 입국자보다 출국자가 많아 국제 인구이동이 인구 감소에 기여하는 나라였다. 출국자 통계가 시작되기 전인 19세기 전반은 물론, 1851년 이후에도 대규모의 해외 출국자가 발생했는데, 대부분은 대서양을 건너 북미 지역에 정착하고자 출국한 경우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다른 북유럽 국가와 대륙 유럽으로부터의 대규모 노동 이민과 1970년대 이후 지금

까지 이어지는 다변화된 인구 국제 유입으로 인해 스웨덴은 이후 대부분 기간 양의 순 국제 인구이동을 기록했고(Bengtsson et al., 2005), 인구 자연 감소를 기록하던 1990년대 말에도 총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출산율 감소와 기대여명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경험한 여러 유럽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국제 이주가 스웨덴 인구 증감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van Nimwegen & van der Erf, 2010).

제3절 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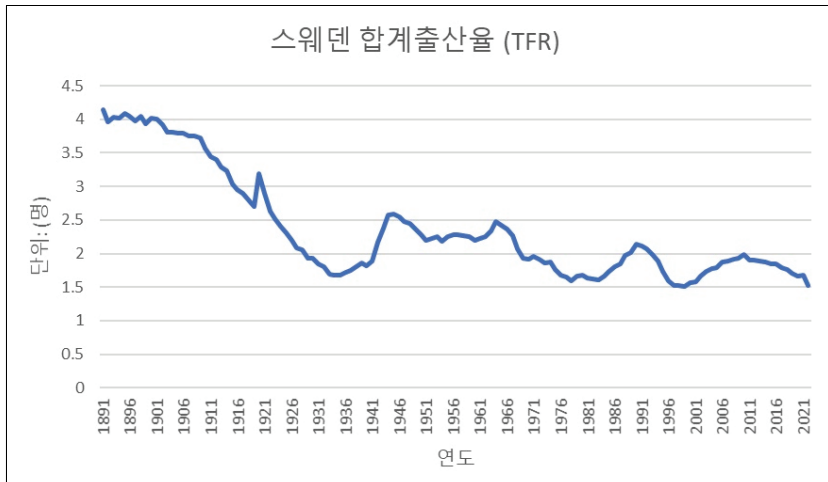
1. 20세기 스웨덴 출산율의 변동

스웨덴의 출산율은 1930년대까지 일부 예외적인 구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30년대 이후에는 감소 추세가 둔화하고 합계 출산율 기준 1.5명에서 2.5명 사이에서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국가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산율로 정의하는 대체출산율(replacement-level fertility)을 약 2.1명이라고 가정한다면,³⁾ 스웨덴은 1927년에 합계출산율이 2.08명을 기록하면서 1891년 이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을 밑도는 숫자를 보여주었다. 20세기 후반에 대체로 스웨덴의 출산율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높았던 원인으로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과 가족 및 육아 정책이 부모의 공동 육아와

3) 대체출산율은 가임 기간 여성의 연령별 사망률은 물론 영·유아 사망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 시기별로 모두 조금씩 다르다. 본문의 2.1명, 혹은 2.08명은 가임 기간 여성 사망률과 영·유아 사망률이 모두 현저하게 낮은 국가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세기 초반 스웨덴의 대체출산율은 오늘날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육아 부담의 탈 가족화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며, 성평등을 중시하는 정책이 출산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중시했다는 점이 주로 언급된다(Hoem, 2005). 또한 적은 터울로 두 명의 자녀 가지기를 권장하는 육아휴직제도(이른바 speed premium 정책) 또한 대부분의 부모가 두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도록 도운 정책으로 평가받는다(Andersson et al., 2006).

[그림 3-4] 스웨덴 기간 합계출산율(period total fertility rates)(1891~2022년)



출처: "HFD country," Human Fertility Database, 2023. <https://www.humanfertility.org/Country/Country?cntr=SWE>를 바탕으로 재구성.

2. 2010년 이후: 스웨덴과 북유럽 국가의 출산율 감소

2010년도 이후 최근까지 가장 두드러지는 출산율의 변화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현상이다. 스웨덴의 경우 2010년 합계출산율이 1.99로 1992년 이후 최고점을 기록한 뒤, 2021년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소폭 반등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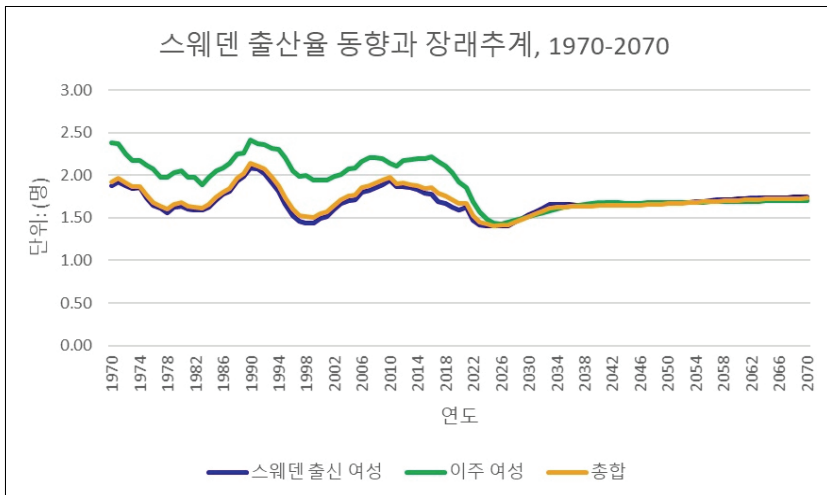
웨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었던 북유럽 국가들인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단순히 출산 연령이 늦춰지는 출산 지연으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코호트 합계출산율⁴⁾의 감소를 동반한 현상이다(Hellstrand et al., 2021). 최근 북유럽의 출산율 감소는 그 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구학과 사회학계의 수수께끼로 인식되었다. 출산율 감소의 시작은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전 세계로 확산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이지만, 경제 위기의 충격은 스웨덴을 비롯한 노르딕 국가에서 제한적이었다. 또한 2010년 이후 뚜렷한 사회보장제도의 변화가 없었고, 스웨덴의 경우 COVID-19 이전까지 꾸준한 경제 성장과 실업률 감소를 보여주는 등 거시경제 혹은 제도적으로 출산율에 악영향을 줄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Comolli et al., 2021). 최근 연구에 따르면, 출산율 감소는 지역이나 교육 수준에 큰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나타난 현상이며, 개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고용 안정성과 출산율 감소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Ohlsson-Wijk & Andersson, 2022). 그러나 최근 출산율 감소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며, 일부 학자들은 객관적인 거시경제적 혹은 제도적 변화보다 주관적인 경제적 불확실성 혹은 고용 불확실성이 출산 의향과 출산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Vignoli et al., 2020, 2022).

4) 코호트 합계출산율은 특정 여성 코호트가 평생 동안 실제로 낳은 아이의 수를 집계한 것으로, 특정 나이별 출산율 조건이 유지될 경우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이의 수인 기간 합계출산율과는 차이를 보인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합계출산율은 별도의 표시가 없다면 기간 합계출산율이다.

3. 스웨덴 출산 감소의 영향과 미래 전망

2010년부터 지속된 출산율 감소가 미래에도 이어질지는 스웨덴 내부에서도 상당한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이다. 지난 10여 년간의 출산율 감소 여파로 인해 출생아 수가 감소했고, 이는 학령기 아동 수의 감소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2023년의 출생아 수가 2003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능가하는 인구 자연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Statistics Sweden, 2024e).

[그림 3-5] 스웨덴 출산율 동향(1970~2023년)과 장기추계(2023~2070년)



출처: "Children per woman by country of birth 1970-2023 and projection 2024-2070," Statistics Sweden, 2024c. <https://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population/population-projections/population-projections/pong/tables-and-graphs/children-per-woman-by-country-of-birth-19702022-and-projection-20232070/>를 바탕으로 재구성.

제4절 이주

1. 1970년대 이전: 출국(emigration) 사회에서 입국(immigration) 사회로의 전환

인구의 국제 이동(international migration)은 스웨덴의 인구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림 3-3]에서 볼 수 있듯이 스웨덴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출국(international emigration)은 1851년부터, 입국(international immigration)은 1875년부터 공식 통계가 존재한다. 19세기에 스웨덴은 대규모 인구 해외 유출을 경험하는 국가였다. 대량 인구 유출로 인해 순 국제 인구이동(net international migration)은 출국과 입국 기록이 모두 존재하는 19세기 후반 이후 20세기 전반까지 꾸준히 순 유출을 기록했다. 출국 규모는 미국으로 약 110만 명, 캐나다로는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20세기 초반 스웨덴의 인구 규모가 약 500만 명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 있다(Runblom & Norman, 1976). 출국자의 상당수는 저숙련 노동자보다는 중간 정도의 숙련도를 보이는 노동자였는데 이는 대서양 이주에 들어가는 비용이 빈곤층이나 저숙련 노동자가 감당하기에는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Dribe et al., 2023). 대규모 출국은 스웨덴 인구 증가 정체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 공급의 감소로 인한 스웨덴 실질 임금 상승을 불러오기도 했다(Ljungberg, 1997).

대규모 출국 사회에서 입국 사회로 탈바꿈하게 된 계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상대적으로 전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대부분의 생산 시설을 보전한 스웨덴이 산업 구조 고도화와 경제 성장으로 인한 노동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주변 북유럽 국가 및 유럽 국가로부터 노동 입국자를 유치한 것이었다.

2. 1970년대 이후: 국제 입국 경로의 다변화, 유럽연합, 그리고 국제 분쟁으로 인한 이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스웨덴 국제 입국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노동 입국은 1970년대 초반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대규모 노동 입국이 지속되자 국내 노동시장에서 노동 입국자와의 경쟁이 과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반영한 1968년 이후 이민정책의 변화로 인해 북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스웨덴으로 들어오는 노동 이민의 수는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 변화로 인해 입국자 중 북유럽 지역을 제외한 국가에서의 노동 이주가 급감하면서 다른 입국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는데, 가족 구성원과의 재회를 위한 이주(가족 이주)와 난민 이주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국제 분쟁이나 내전 이후에는 난민 신청을 위한 인도주의적 목적의 이주자 수가 급증하는 패턴이 반복된다(Bengtsson et al., 2005). 특히 분쟁과 내전 이후 스웨덴에 대규모의 난민 신청자가 유입된 것은 최근의 현상이 아닌데, 1970년대 남미, 1980년대 이란을 비롯한 중동 지역, 1990년대 초반 구유고슬라비아 지역 등에서 유입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대규모 난민 신청자 유입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난민 신청자의 유입 등이 최근 사례라고 볼 수 있다.

3. 입국자(immigrants)와 입국자 2세대(second generation)의 비중 증가

많은 사회학자와 인구학자가 제2차 세계대전이 유럽 사회를 바꾼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Alba & Foner, 2015; Luthra et al., 2018). 상당한 수준의 순 국제 인구이동을 보여주었던 스웨덴도 예

외가 아니다. 이러한 이주 패턴의 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본문에서 모두 다루기 어렵다. 하지만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입국자와 입국자 2세대(입국자가 정착한 국가(destination country)에서 태어난 자녀)⁵⁾ 비중의 증가이다.

[그림 3-6]에서 볼 수 있듯이, 21세기 초반, 스웨덴 등록 인구에서 입국자와 입국자 2세대의 비중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다. 예컨대 2002년에 입국자와 입국자 2세대의 규모는 약 191만 명으로 둘의 비중을 합하면 전체 인구의 약 21%가 입국자이거나 입국자 2세대였다. 이후 입국자와 입국자 2세대의 규모는 절대적으로도 증가하여 2023년 현재 입국자와 입국자 2세대는 약 369만 명에 달하며, 이는 1,055만 명의 스웨덴 등록 인구 중 약 3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입국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과 더불어, 입국자의 출신 국가 역시 다변화되었다. 1960년대까지 다른 북유럽 국가와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로 유입된 노동 이민자와 1970년대 이후에도 비교적 북유럽 국가 간 인구이동이 자유로웠던 제도적 배경이 있고, 또 과거 핀란드를 식민지로 지배했으므로 핀란드 내부에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인구 집단이 존재하는 이유 등으로 인해 핀란드 출신 입국자가 최근까지 스웨덴 입국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리아 출신 입국자가 핀란드 출신 입국자를 제친 것은 2017년으로, 역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신청자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현재 스웨덴 내부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입국자 집단은 <표 3-1>에서 보는 것처럼 시리아, 이라크, 핀란드, 폴란드, 이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구유고슬라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인도 순이며, 북유럽,

5) 일부 문헌에서는 부모를 따라 어릴 때 이주한 입국자도 입국자 2세대에 포함하기도 한다. 스웨덴의 경우 공식 통계에서 부모의 출생 국가를 비교적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 통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집단은 부모 모두,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입국자인 좁은 의미로 정의된 입국자 2세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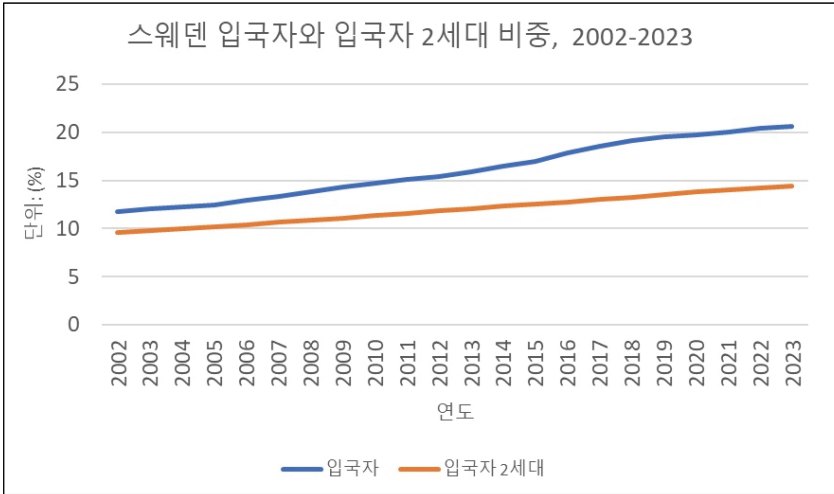
동유럽, 중동, 동아프리카, 남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난민의 수는 위의 표에서 등장하지 않았는데, 스웨덴 정부는 그 규모를 2023년 현재 약 38,000명으로 집계했다(Regeringskansliet, 2023).

〈표 3-1〉 출신 국가별 입국자 규모(2023년 12월 31일 현재)

순위	국가	수(명)	총인구 중 비중(%)	입국자 인구 중 비중(%)
1	시리아	197,201	1.9	9.1
2	이라크	145,586	1.4	6.7
3	핀란드	129,406	1.2	6.0
4	폴란드	100,706	1.0	4.6
5	이란	86,838	0.8	4.0
6	소말리아	68,290	0.6	3.1
7	아프가니스탄	67,738	0.6	3.1
8	구유고슬라비아	60,636	0.6	2.8
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60,003	0.6	2.8
10	인도	58,094	0.6	2.7
11	독일	56,969	0.5	2.6
12	튀르키예	56,871	0.5	2.6
13	에리트리아	49,639	0.5	2.3
14	태국	45,940	0.4	2.1
15	노르웨이	39,951	0.4	1.8
16	중국	38,253	0.4	1.8
17	덴마크	37,655	0.4	1.7
18	루마니아	36,738	0.3	1.7
19	영국	32,916	0.3	1.5
20	레바논	29,876	0.3	1.4

출처: “Antal personer med utländsk eller svensk bakgrund (fin indelning) efter region, ålder och kön. År 2002~2023,” Statistics Sweden, 2024a. https://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sv/ssd/START_BE_BE0101_BE0101Q/UtlSvBakgFin/

[그림 3-6] 스웨덴 등록 인구 중 입국자(스웨덴 외 출생자)와 입국자 2세대(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입국자인 스웨덴 출생자)의 비중(2002~2023년)



출처: “Antal personer med utländsk eller svensk bakgrund (fin indelning) efter region, ålder och kön. År 2002-2023,” Statistics Sweden, 2024a. https://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sv/ssd/START_BE_BE0101_BE0101Q/UtlSvBakgFin/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스웨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스웨덴의 출산율 감소 추세는 2020년대에 최저점을 기록한 후 다시 반등해서 서서히 2010년대 중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이전에 스웨덴에서 태어난 여성에 비해 국제 이주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대체로 높았던 상황과 달리 미래에는 스웨덴에서 태어난 여성과 이주 여성의 출산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측된다(Statistics Sweden, 2024c). 이는 2010년대 이후 이미 이주 여성과 스웨덴에서 태어난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수렴하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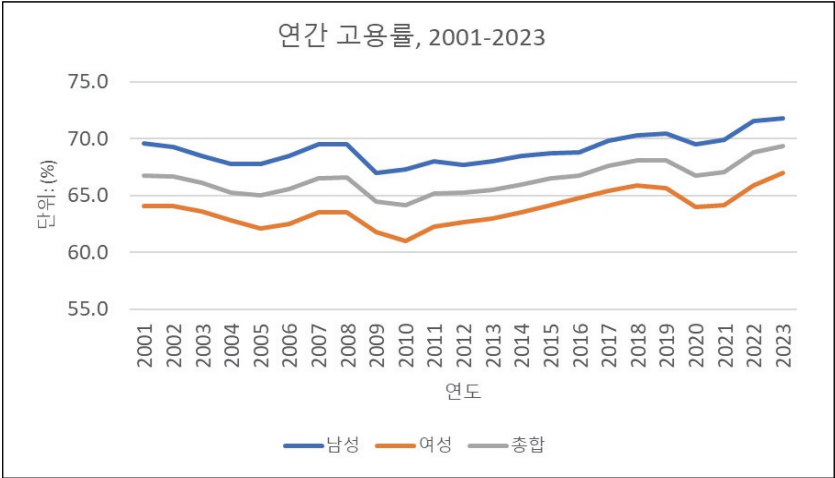
제5절 노동시장 인구

공식 통계에 나타난 스웨덴 노동시장의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최근 COVID-19 같은 거시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변동을 제외하고는 고용률이나 실업률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먼저 고용률을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소폭 하락한 고용률은 2020년 이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0년 COVID-19의 영향으로 하락한 고용률은 2022년에 COVID-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을 볼 수 있다.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이 성별과 관계없이 구성원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고용률에서는 여전히 성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고용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약 6%p 내외의 남녀 간 고용률 격차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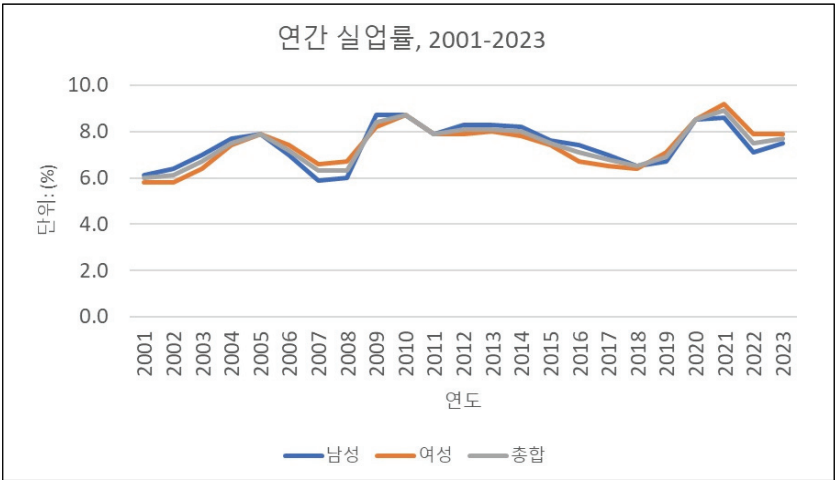
실업률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이후 COVID-19의 영향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두 사건 사이에는 고용률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반면, 실업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이후 고용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업률은 2022년부터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고용률과 비교하면 실업률의 성별 격차는 크지 않으며, 때로는 남성의 실업률이, 때로는 여성의 실업률이 더 높은 패턴을 반복하다가 최근에는 여성의 실업률이 더 높은 양상을 보인다.

[그림 3-7] 스웨덴 성별 고용률(15~74세 기준)(2001~2023년)



출처: “Population aged 15-74 (LFS) by sex, age and labour status. Year 2001-2023,” Statistics Sweden, 2024f. http://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en/ssd/START__AM__AM0401__AM0401A/NAKUBefolkning2Ar/를 바탕으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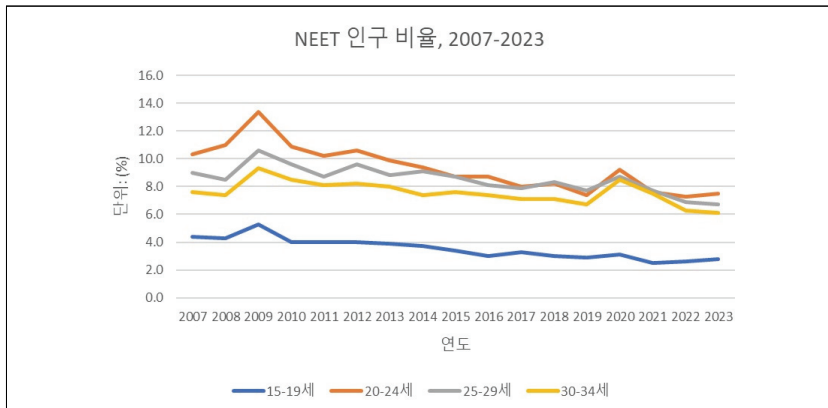
[그림 3-8] 스웨덴 성별 실업률(15~74세 기준)(2001~2023년)



출처: “Population aged 15-74 (LFS) by sex, age and labour status. Year 2001-2023,” Statistics Sweden, 2024f. http://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en/ssd/START__AM__AM0401__AM0401A/NAKUBefolkning2Ar/를 바탕으로 재구성.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의 동향만큼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동향 역시 중요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집단 사이에서 무직 상태로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그 외 교육을 받지 않는 인구의 규모(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는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노동시장 인구 관련 지표 중 하나이다. 스웨덴 통계청은 2007년부터 15~34 인구를 대상으로 NEET 인구의 비율을 발표하고 있는데, 2008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NEET 인구의 비율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인다. 비록 NEET 인구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NEET 상황에 노출된 청년들이 이후에도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크며 (Bäckman & Nilsson, 2016), NEET 상태가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Manhica et al., 2019) 해당 인구 집단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3-9] 연령별 NEET 인구 비율(2007~2023년)



출처: “Young people aged 15-34 (LFS) not in employment and not in any education and training (NEET) by sex and age. Year 2007-2023,” Statistics Sweden, 2024g. http://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en/ssd/START__AM__AM0401__AM0401U/NAKUNEETBefolkningAr/를 바탕으로 재구성.

제6절 소결

지금까지 스웨덴 인구 동향 중 중요한 내용을 인구 성장, 출산, 이주 그리고 노동시장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을 밑돌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사망자도 증가해서 인구의 자연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대규모의 국제 인구가 유입되어 완만한 인구 증가를 보여왔다. 스웨덴은 2023년 현재 인구의 삼 분의 일 이상이 입국자 혹은 입국자의 자녀인 이민 사회이자 다문화 사회로 자리매김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스웨덴 인구 동향의 변화 중 특히 한국 사회가 주목할 부분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 20세기 후반까지 스웨덴의 가족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은 부모 모두의 노동시장 참여와 육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했고,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최근 출산율의 변동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의 가족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이 애초에 출산율 유지 혹은 반등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와 같은 정책의 확대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단정하거나 출산율의 변화를 이러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회적 맥락이나 다른 제도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단순히 가족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둘째로, 스웨덴 이주 패턴의 변화는 국제 분쟁이나 내전으로 인한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인해 변화된 것도 있지만, 1960년대 말 노동 이민의 제한처럼 스웨덴 내부의 제도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기도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제 인구이동은 이처럼 정책적 요소와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받으며, 특히 정책적 변화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은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제 이주 관련 정책을 논의할 때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제4장

스웨덴의 인구 관련 사회정책

제1절 노동시장정책

제2절 이민자 정책

제3절 가족정책

제4절 노후 소득보장

제4장 스웨덴의 인구 관련 사회정책

제1절 노동시장정책

1. 스웨덴의 노동시장 개관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사이의 대등한 권력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 스웨덴은 노동조합 가입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는 노동조합이 회원 관리와 운영을 주도하는 자발적 실업보험제도인 겐트(Ghent) 시스템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일자리를 찾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노동자들과 긴밀히 접촉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유지되는 것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스웨덴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65.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5.8%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24b).

1950년대부터 시행된 연대주의적 임금정책(solidaristic wage policy)은 스웨덴 노동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다. 연대주의적 임금정책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산업부문의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수익성이 낮은 부문의 임금을 비교적 더 큰 폭으로 인상하는 관행을 뜻한다. 당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경제학자인 Gustav Rehn과 Rudolf Meidner가 제안한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보다 평등한 임금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 정책은 당시 스웨덴에 중앙집권적 단체교섭의 체계가 이미 갖추어져 있었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연대주의적 임금정책으로 인해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체계적으로 인상될 수 있었

고, 이는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 감소로 이어졌다. 그 효과로 1960~1980년대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임금 평등 수준이 더 높아졌다. 또한, 연대주의적 임금정책은 스웨덴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왔다. 전국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기업들은 시장에 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경쟁력 있고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과 산업부문만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즉, 자본이 부가가치가 낮은 기업과 산업부문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과 산업부문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Einhorn & Logue, 2003). 이 과정에서 실업에 대한 관대한 수준의 금전적 보상과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직업훈련은 스웨덴 노동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웨덴은 단체교섭 적용률도 매우 높다. 2018년 기준으로 스웨덴은 단체교섭 적용률이 88.0%로 나타나, 같은 해 OECD 회원국 평균인 32.1%보다 2.7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OECD, 2024c). 스웨덴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가운데 9명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산업부문별로 체결하는 단체교섭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받고, 노동 환경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스웨덴은 산업화 시대에 중앙집중적 단체교섭의 전통을 유지했다. 국가 수준에서 진행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자단체의 중심 역할은 스웨덴노동조합연맹(Landsorganisationen i Sverige, LO)이 맡았고, 스웨덴사용자연합(Svenska Arbetsgivareföreningen, SAF)과 스웨덴산업연맹(Sveriges Industriförbund; SI)은 경영자단체를 대표했다.⁶⁾ 이처럼 1956년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전통적으로 스웨덴 민간 산업부문의 단체교섭은 ‘국가 단위-산업부문 단위-지역 단위’의 세 가지 수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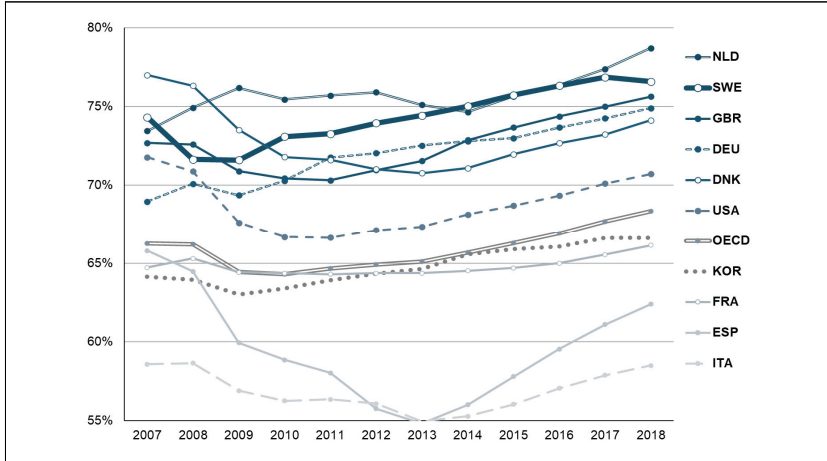
6) 스웨덴사용자연합(Svenska Arbetsgivareföreningen, SAF)과 스웨덴산업연맹(Sveriges Industriförbund, SI)은 2001년 스웨덴기업연맹(Svenskt Näringsliv, SN)으로 통합되었다.

진행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국가 단위의 임금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산업 부문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임금 문제 외에 노동자와 관련이 깊은 정책들에 관한 쟁점들은 여전히 국가 단위에서 논의되고 협정이 체결되고 있다. 소득비례연금, 건강보험, 육아수당, 산재보험 등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국가 단위에서 위와 같은 정책 이슈가 다루어지는 반면, 산업부문별 교섭에서는 주로 최저임금과 경력직에 대한 임금, 초과 근무 및 대기 수당, 근무시간의 길이와 스케줄, 휴일 및 휴일수당 등 임금과 근무시간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다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직업훈련, 출퇴근 시간 수당, 사용자의 근무시간 계획 권한, 장기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 등과 같은 문제도 다루어지곤 한다. 지역 단위의 교섭은 산업부문별 교섭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지역 및 사업장의 맥락에 따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다룬다(ETUI,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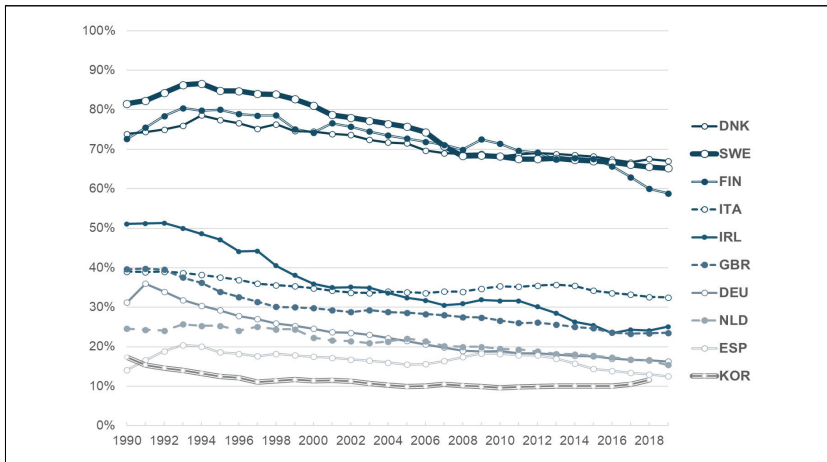
스웨덴의 임금 교섭은 일반적으로 3년마다 이루어진다. 즉, 산업부문별 협상을 통해 결정된 임금 수준과 규칙이 모든 사업장에 3년 동안 적용되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모두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동의하고 있으므로 스웨덴에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4-1] 스웨덴 및 주요 OECD 회원국 고용률 추이(2007~2018년)



출처: “Infra-annual labour statistics,” OECD, 2024d. [https://data-explorer.oecd.org/vis?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IALFS_INDIC&df\[ag\]=OECD.SDD.TPS&df\[vs\]=1.0&dq=.UNE_LF_M...Y..T.Y_GE15..M&lom=LASTNPERIODS&lo=13&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IALFS_INDIC&df[ag]=OECD.SDD.TPS&df[vs]=1.0&dq=.UNE_LF_M...Y..T.Y_GE15..M&lom=LASTNPERIODS&lo=13&to[TIME_PERIOD]=false)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4-2] 스웨덴 및 주요 OECD 회원국 노동조합 가입률 추이(1990~2018년)



출처: “Trade union density,” OECD, 2024b. [https://data-explorer.oecd.org/vis?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TUD_CBC%40DF_TUD&df\[ag\]=OECD.ELS.SAE&df\[vs\]=1.0&dq=..&pd=2000%2C&to\[TIME_PERIOD\]=false&vw=tb](https://data-explorer.oecd.org/vis?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TUD_CBC%40DF_TUD&df[ag]=OECD.ELS.SAE&df[vs]=1.0&dq=..&pd=2000%2C&to[TIME_PERIOD]=false&vw=tb)를 바탕으로 재구성.

2. 실업급여

가. 실업급여제도 개요

가장 대표적인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assive labor market policy)인 실업급여는 실업자들이 빈곤에 처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에 대한 높은 투자와 적극적인 활용으로 유명한 스웨덴은 관대한 급여 수준과 자격 요건을 특징으로 하는 실업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에서 발견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하는 국가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투자도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이다(Pignatti & Van Belle, 2021). 이러한 제도적 특징은 실업자들이 교육과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창업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에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고려가 정책 설계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웨덴은 겐트 시스템을 통한 실업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실업보험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국가가 운영하는 기초 실업보험으로서 고용 상태에 있는 모든 노동자는 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실업 상태가 되면 기초 실업급여(grundbelopp)를 받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민간조직인 실업보험기금(arbetslöshetskassa; a-kassa)이 운영하는 실업보험으로서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일자리를 잃게 되면 소득연계 실업급여(inkomstrelaterad ersättning)를 받을 수 있다. 즉, 실업보험기금에 가입되어 있는 실업자는 소득연계 실업급여를 받고, 그렇지 않은 실업자는 기초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다. 또한,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했더라도

소득연계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는 기초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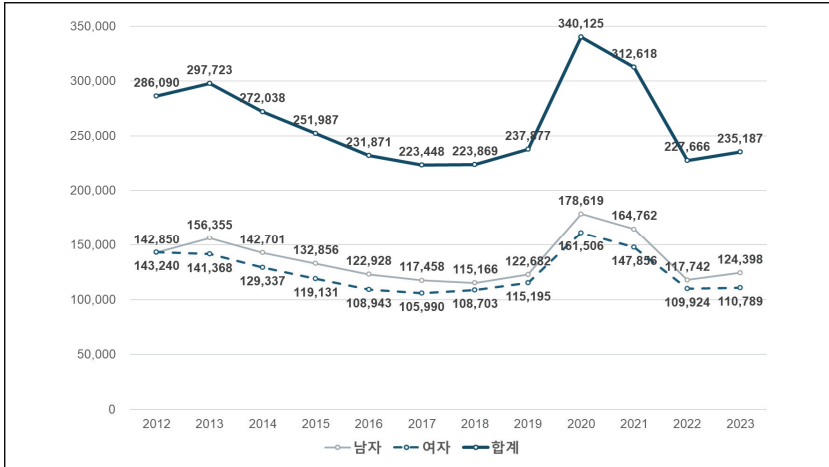
실업보험기금은 산업부문별로 나누어져 실업보험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노동자들은 자신이 고용되어 활동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실업보험기금에만 가입할 수 있다. 반드시 고용 상태일 때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업 상태에 있더라도 실직 전 근무 조건이 실업보험기금의 회원 요건에 맞으면 가입할 수 있다. 단, 만 64세 이상은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할 수 없고,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업보험기금의 회비는 일반적으로 월 100~200크로나 수준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스웨덴의 실업급여 수급자 규모는 20~3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 인구가 약 1,000만 명 수준이므로 매년 전체 인구의 2~3% 정도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2013년에 30만 명에 육박했던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2017년과 2018년에 22만 명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2019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34만 명 넘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는 그 규모가 작아지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31만 명대를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 227,666명이 실업급여를 받았다. 2023년에는 그 수가 조금 늘어 235,187명으로 집계되었다(Inspektionen for arbetsloshetsförsäkringen, 2024).

2023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로 지급된 총급여액은 약 154.4억 크로나였다. 이 가운데 기초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약 7.5억 크로나로 4.9%였고, 소득연계 실업급여 지급액 규모는 약 146.9억 크로나로 95.1%를 차지했다(Inspektionen for arbetsloshetsförsäkringen, 2024).

[그림 4-3] 스웨덴 실업급여 수급자 규모 현황(2012~2023년)

(단위: 명)



출처: “Antal personer som fått arbetslöshetsersättning - ersättningstagare,” Inspektionen för arbetslöshetsförsäkringen, 2024. <https://www.iaf.se/statistikdatabasen/nya-statistikdatabasen/antal-personer-som-fatt-arbetsloshetsersattning---ersattningstagare/>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스웨덴의 “실업보험법(Lag(2024:506) om arbetslöshetsförsäkring)”의 규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65세까지 지급된다. 65세가 되기 전 고용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Nordic Co-operation, 2024a).

- 일자리를 구하면 매일 3시간 이상, 주당 평균 17시간 이상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함.
- 스웨덴 공공 고용서비스센터(Arbetsförmedlingen)에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노동시장 참여가 가능해야 함.

- 또한, 실업에 처하기 전에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무 기록이 있어야 한다(Sveriges A-Kassor, 2024).
- 실직일 직전 12개월 중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
- 실직일 직전 12개월 중 6개월 동안 연속으로 420시간 이상 근무하고 각 달에 40시간 이상 근무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실업자가 소득연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전 12개월 이상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여 월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연계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없는 실업자는 기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연계 실업급여 신청에는 연령 제한이 없으나 기초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20세 이상이어야 한다(Sveriges A-Kassor, 2024).

이러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피고용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즉, 자영업자도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위 조건들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도 실업보험기금들 가운데 하나에 가입하여 소득연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급여 수준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대 300일 동안 지급된다. 주당 5일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실업자는 60주에 걸쳐 급여를 받게 된다. 만약 실업자에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150일(30주) 동안 실업급여 지급이 연장된다.

소득연계 실업급여의 금액은 실직 전 소득의 80%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상한액인 세전 월 26,400크로나를 넘지는 못한다. 만약 실업 전 고용계약상 근무 형태가 시간제 근무였거나 근무일 수가 12개월 미만이었다면 소득연계 실업급여 금액은 줄어든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첫 200일 동안은 실직 전 소득의 80%가 지급되지만, 이후 100일 동안은 70%만 지급된다. 기초 실업급여의 금액은 실업 전 노동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4년 기준 최대 세전 월 11,220크로나가 지급된다(Arbeitsförmedlingen, 2024; Sveriges A-Kassor, 2024).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스웨덴은 복지제도를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하고 활발히 활용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 또는 실업의 위험이 큰 사람들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거나 고용을 통해 미래 소득 증가를 이룰 수 있도록 공적 재원을 통해 지원되는 모든 형태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유형으로는 ‘구직활동 보조’, ‘직업훈련’, ‘공공부문 고용 창출’, ‘임금보조금’ 등이 꼽힌다(Martin, 2015). 스웨덴 연구자인 Calmfors, Forslund & Hemström (2002)은 적극적 노동시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달성함으로써 노동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전히 스웨덴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OECD(2024e)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스웨덴의 지출 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2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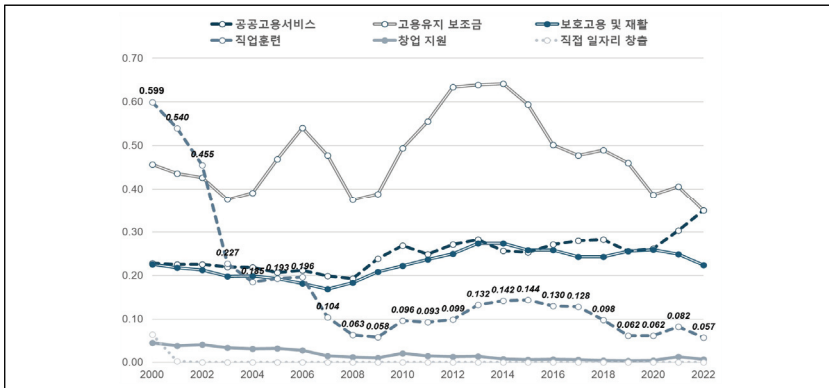
균 공적 지출 규모는 GDP 대비 0.426%이지만, 스웨덴은 0.988%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웨덴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오랜 기간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특성은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져 왔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00년대 초까지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은 직업훈련이었다. 1980년대 말까지는 노동시장에 투입된 예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직업훈련 및 재교육에 사용될 정도였고(Knudsen & Rothstein, 1994), 1990년대 중반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단기적으로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유지 보조금의 비중이 확대되었지만, 1990년대 후반 들어 다시 직업훈련의 비율이 높아졌다(Calmfors et al., 2002).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직업훈련에 대한 지출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활성화 정책(activation policy)의 중요성이 스웨덴에서도 강조되었고, 복지국가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위기 이후 찾아온 경기 호황으로 인해 직업교육의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Bengtsson, 2012; Ulku & Muzi, 2015; Gottfries, 2018). 이러한 정책 기조가 이어지던 2006년에 집권한 중도우파 연립정부는 2007년부터 “일자리 및 자기개발 보장(jobb- och utvecklingsgarantin)”이라는 명칭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직업훈련보다는 공공 고용서비스를 통한 구직활동 촉진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구직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들이 여러 차례 추가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지금까지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정리해보면, 과거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직업훈련을 강조하였지만, 현재는 공공 고용 서비스를 통한 구직활동 촉진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스웨덴의 재정 지출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00년에 직업훈련의 재정

지출 규모는 GDP 대비 0.599%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2년에는 그 수치가 0.455%로 감소하였고, 2003년에 전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0.227%로 급감하였다. 이후 2007년에 또 한 차례 크게 줄어 0.104%를 기록하였고, 2018년까지 GDP 대비 0.1% 내외를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더 감소하여 2022년에는 0.057%까지 떨어졌다. 이와 반대로 공공 고용서비스를 위한 재정 지출 규모는 꾸준히 커지고 있다. 2008년까지 그 규모는 GDP 대비 0.2%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지만, 2009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21년에는 처음으로 0.3%를 넘었다.

[그림 4-4] 스웨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재정 지출 구성 변화(2000~2022년)

(단위: % of GDP)



주: 직업훈련을 위한 지출 규모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그 수치를 추가 표시함.

출처: "Public spending on labour markets," OECD, 2024e.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isseminateArchiveDMZ&df\[id\]=DF_DP_LIVE&df\[ag\]=OECD&df\[vs\]=&av=true&pd=2000%2C2022&dq=OAVG%2BUSA%2BGBR%2BTUR%2BCHN%2BSWE%2BESP%2BSVN%2BSVK%2BPRT%2BPOL%2BNOR%2BNZL%2BNLD%2BMEX%2BLUX%2BLTU%2BLVA%2BKOR%2BJPN%2BITA%2BISR%2BIRL%2BISL%2BHUN%2BGRC%2BDEU%2BFRA%2BFIN%2BBEL%2BBGR%2BCAN%2BBEL%2BAUT%2BAUS.PUBLMPEXP.TRAINING%2BTOT%2BINCENTIVE%2BSUPPEMP%2BJOBCREATION%2BPRERET%2BEMPINCENTIVE%2BOOWORKINCOME%2BPUBEMPSERV.PC_GDP.A&to\[TIME_PERIOD\]=false&vw=tb](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isseminateArchiveDMZ&df[id]=DF_DP_LIVE&df[ag]=OECD&df[vs]=&av=true&pd=2000%2C2022&dq=OAVG%2BUSA%2BGBR%2BTUR%2BCHN%2BSWE%2BESP%2BSVN%2BSVK%2BPRT%2BPOL%2BNOR%2BNZL%2BNLD%2BMEX%2BLUX%2BLTU%2BLVA%2BKOR%2BJPN%2BITA%2BISR%2BIRL%2BISL%2BHUN%2BGRC%2BDEU%2BFRA%2BFIN%2BBEL%2BBGR%2BCAN%2BBEL%2BAUT%2BAUS.PUBLMPEXP.TRAINING%2BTOT%2BINCENTIVE%2BSUPPEMP%2BJOBCREATION%2BPRERET%2BEMPINCENTIVE%2BOOWORKINCOME%2BPUBEMPSERV.PC_GDP.A&to[TIME_PERIOD]=false&vw=tb)를 바탕으로 재구성.

스웨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그들의 사회통합을 높이기 위해 이민자를 위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의 명칭은 “etableringsprogrammet”으로 이는 스웨덴어로 입문 프로그램(introduction program)이라는 뜻이다. 스웨덴 중앙정부인 고용부(Arbetsmarknadsdepartementet) 산하 조직인 공공 고용서비스센터(Arbetsförmedlingen)가 이 프로그램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별 맞춤형 계획 추진과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이루어지고, 그 목표는 이민자가 가능한 한 빨리 스웨덴어를 배우고, 일자리를 구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난민 또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최근 거주 허가증(residence permit)을 받은 사람이거나 그러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다. 스웨덴의 입문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Arbetsförmedlingen, 2024).

- 스웨덴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경우,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svenska för invandrare, SFI) 교육
- 스웨덴 시민 교육(civic orientation)
- 기술을 학습하거나 개발해야 하는 경우, 다양한 수준의 직업훈련
- 직업 실무 경험(job experience)
- 구직활동 지원
- 창업을 고려 중인 경우, 창업 지원 및 상담
- 직업역량 검증(validation of competencies)

입문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전일제로 운영된다. 다만 프로그램 참가자가 시간제 근무를 하거나 육아휴직,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전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간제 참여가 허용된다. 이민자는 최대 24개월 동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스웨덴 개인식별번호(personnummer)를 받은 후 36개월이 도래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만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민자의 교육 수준이 스웨덴의 의무교육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이민자는 성인 교육기관(folkhögskola)이 제공하는 스웨덴어 학습과 기초교육을 받아야 한다(Arbetsförmedlingen, 2024).

입문 프로그램 참여자는 스웨덴 사회보험청(Försäkringskassan)으로부터 프로그램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입문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하루에 231크로나씩 지급되고, 입문 프로그램 참여가 시작되면 하루에 308크로나씩 지급된다. 이 수당은 일주일에 5일 기준으로 지급되고, 시간제 참여의 경우에는 줄어든 금액이 적용된다. 만약 프로그램 참가자의 가정에 돌보아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최대 3명의 자녀에 대해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데 0~10세 자녀에 대해서는 월 800크로나, 11~20세 자녀에 대해서는 월 1,500크로나가 추가된다. 그러나 자녀가 월 4,000크로나 이상의 소득을 번다면 추가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Försäkringskassan, 2024).

제2절 이민자 정책

1. 배경

스웨덴은 1930년대까지 인구의 외국으로의 유출이 스웨덴으로의 유입보다 많았지만, 1940년대 이후 이민의 유입이 더 많은 국가가 되었다. 스웨덴의 이민 인구는 1970년까지 전체 인구의 6.7%에 머물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현재 본인이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부모 모두가 외국 출신인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27.2%(287만 명)를 차지하고 있다(Statistiska Centralbyrån, 2024).⁷⁾

이러한 스웨덴 인구 구성의 변화는 스웨덴의 이민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역사적으로 인구 구성의 변화는 1945년 이후 전개된 이민정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1970년대 이후에는 인구 구성의 변화가 이민정책의 변화를 추동하기도 했다. 이민정책은 크게 신규 이민에 대한 이민정책과 이미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에 대한 이민자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규 이민정책은 다시 노동 이민, 난민 이민, 가족 이민에 대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스웨덴의 신규 이민에 대한 정책은 어떤 이유로 어느 지역의 이민자를 어떤 규모로 수용할지에 대해 억제 정책과 자율화 정책을 오가면서 전개되어 왔다. 정책의 변화는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Byström & Frohnert, 2017). 첫째로 1930~1945년의 시기에는 나치의 박해와 2차 세계대전으로 스웨덴 주변 국가들에서 발생한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난민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둘째로 1945~1970년의 시기에는 전후 경제 호황기에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

7) 같은 기간 스웨덴의 인구는 808만 명에서 1,055만 명으로 증가했다(SCB, 2024).

해 노동 이민을 자율화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 셋째로 1970~1994년의 시기에는 경제 침체가 오면서, 노동 이민을 억제하게 되지만, 난민과 가족 이민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책을 유지한다. 넷째로 1995년 유럽연합 가입 이후에는 한편으로는 (유럽연합 내) 노동 이민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난민 이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은 1950년대까지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다. 이민자들이 주로 전쟁 난민이어서, 이들에 대해서 임시 거주를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 난민 중에 스웨덴에 남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1950년대 노동 이민이 늘면서 이민자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이민자 정책은 큰 틀에서 이민자들에게 스웨덴인들과 동등한 사회,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이 일정치 않았다. 종교, 언어, 관습 등의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1950년대 동화 정책에서 1970년대에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전환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스웨덴 사회로의 통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족 이민의 경우,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관대한 정책을 유지해 왔다. 최근 가족의 범위를 가까운 친족에서 직계가족으로 한정하게 되었지만, 대체적으로 기존의 관대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이민 인구를 이민의 동기를 중심으로 구분할 때, 정치적인 박해와 전쟁을 피해온 난민, 일자리를 찾아온 노동 이민, 기존 이민자의 초청으로 온 가족 이민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출신 지역별로는 크게 북유럽 국가, 북유럽 외 유럽 국가, 비유럽 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민 인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류는 1970년대 이전까지 북유럽 국가들에서 온 노동 이민자였지만, 현재는 1980년대 이후 난민으로 온 이민자와 그들을 통한 가족 이민자이다.

〈표 4-1〉은 출신 국가별로 이민 인구의 규모와 구성이 1970년 이후 2016년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통계는 이민 1세대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스웨덴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우선 1970년에는 전체 54만 명 이민 인구 가운데, 60% 가량인 32만 명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출신이고, 이들은 북유럽 노동시장 협약에 따라서 스웨덴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스웨덴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과 거주를 할 수 있었다. 북유럽 국가들 다음으로는 독일이 4만여 명, 구 유고연방 국가들이 3만여 명, 그리스와 폴란드가 각각 1만 명 수준이었다.

15년 뒤 1985년에는 이민 인구가 65만 명으로 늘고, 북유럽 출신 비중이 절반 이하(47%)로 줄어든다. 대신 비유럽 지역인 터키, 칠레, 이란, 이라크, 소말리아 출신의 이민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난민과 그 가족 이민인데, 터키의 경우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인 쿠르드족 출신, 칠레의 경우 1970년대 군사쿠데타 이후 정치적 박해를 받은 사람들, 이란, 이라크, 소말리아의 경우 내전과 지역 전쟁의 난민들이다.

〈표 4-1〉 스웨덴 내 이주 인구의 규모와 구성 변화

(단위: 1,000명)

출신 국가	1970년	1985년	1997년	2010년	2016년
덴마크	39	41	39	46	41
핀란드	235	228	201	169	154
노르웨이	45	43	43	43	42
그리스	12	14	11	11	17
구유고연방	34	39	125	154	168
폴란드	11	29	40	70	89
독일	42	38	37	48	50

출신 국가	1970년	1985년	1997년	2010년	2016년
이라크		4	33	122	135
이란		8	50	62	71
시리아			11	21	149
터키	4	19	31	43	47
칠레		13	27	28	28
소말리아	4*	14*	12	38	64
합계	538	646	950	1385	1784

주: * 아프리카 출신 이주 인구 전체 규모를 뜻함.

출처: "Invandringens historia: Från 'folkhemmet' til dagens Sverige," Byström & Frohnert, 2017, p.5, Delegationen för migrationsstudier.에서 번역하여 제시함.

1997년에 이민 인구는 난민과 그 가족 이민을 중심으로 다시 95만 명으로 증가한다. 이 중에 구 유고연방 출신이 1985년 대비 3배로 늘어 12만 5천 명이 되었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 보스니아 무슬림계에 대한 인종학살이 일어나자,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동유럽 공산체제 붕괴 뒤 폴란드 출신도 증가해서 4만 명이 되고, 이란과 이라크 출신은 7배 이상 증가해 8만여 명이 되었다. 레바논 내전과 관련하여 시리아 출신(레바논 내 시리아계 기독교인들 중심)이 1만여 명이 되었고, 칠레와 터키 출신 이민자도 각각 2배로 늘어났다. 2010년에 이민자 인구는 138만 5천 명으로 증가했다. 구 유고연방 출신과 폴란드 출신이 각각 15만 명, 7만 명으로 늘고, 중동 4개국 출신이 두 배로 늘어 25만 명이 되었다. 소말리아 출신도 1997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해서 4만 명가량이 되었다. 2016년의 이민자 인구는 다시 178만 명으로 늘었는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그룹은 시리아 출신이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유입으로 2010년에 2만 명이던 시리아 출신 이민자는 6년 만에 15만 명으로 늘어났다.

2. 이민자 정책의 역사

가. 1930~1945년: 난민정책 중심의 이민자 정책

이 시기의 이민자 정책은 온전히 난민정책으로 특징지어졌는데, 이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과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박해,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유럽에서의 인도주의적 위기와 관련이 있다. 1933년 독일에서 나치당의 집권 이후 독일 거주 유대인들의 대규모 해외 이주가 시작되었는데, 이 당시 스웨덴의 이민법(1927년 제정)은 스웨덴 인종과 노동시장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인들의 스웨덴 이주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Hammar, 1964). 또한 당시에는 난민에 대한 국제협약이나 규범이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스웨덴의 사민당 정부는 나치 탄압을 받았던 독일 사민당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피난처를 제공했고, 이들 가운데는 전후 서독의 총리가 되는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와 오스트리아의 총리가 되는 브루노 크레이스키(Bruno Kreisky)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스웨덴이 피난처를 제공할 경우 대규모의 집단적 이주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이민법을 엄격히 적용했다.

당시 이민법에 따르면, 거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 허가가 있어야 하고, 고용 허가는 특정된 사업장에 한정되고, 스웨덴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발급되었다. 고용 허가가 없는 경우, 개별 이민 신청자들이 스웨덴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1937년, 외국인법을 통해서 정치적인 난민에 대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 법제화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독일과 동유럽에서 피난을 온 유대인들의 경우 대부분 국경에서 입국 신청이

거절되었다. 1939년 여름까지 약 5,000명의 난민만 받아들였고, 이 중 2/3 가량이 유대인이었다(Nilsson, 2004; Åmark, 2011).

그러나 나치의 유대인 집단 학살이 유럽 전역에서 본격화되고,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스웨덴의 난민정책은 적극적인 수용으로 전환하게 된다. 독일의 침공이 덴마크와 노르웨이, 핀란드로까지 이어지면서, 전쟁 중에 유대인을 포함한 많은 난민들이 스웨덴으로 피난을 왔고,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20만 명에 가까운 전쟁 난민을 수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난민 수용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스웨덴 정부가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들이었다. 정부는 난민에 대한 임시 거주 허가를 발급했지만,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는 않았다. 스웨덴 내 유대인 교회와 노동운동 단체들의 난민구호 기금, 스웨덴 적십자사 등이 난민 수용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면, 그 기금에 상응해서 정부가 비공식적인 난민 쿼터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대규모의 난민 수용이 이루어졌다(Byström & Frohnert, 2017). 전쟁이 끝나자 대다수의 난민들은 자신의 출신 국가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일부는 스웨덴에 계속 남게 되었다.

나. 1945~1970년: 노동 수요 대응을 위한 이민자 정책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전쟁의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았던 스웨덴은 산업생산 능력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고, 전후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이 시기, 이민정책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장의 노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이민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우선, 1940년대 말 북유럽 노동시장위원회가 설립되어, 1954년 북유럽 국가들 간의 노동시장을 통합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이 맺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경우 1940년대 말부터 노동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 협약으로 북유럽 국가의 시민들은 비자 없이 다른 북유럽 국가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고 거주하면서 해당 국가의 시민들과 동등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 노동 이민의 규모와 직종은 각국 노동시장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당시 노동 이민이 스웨덴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스웨덴 노동시장 당국이 북유럽 노동 이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북유럽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섬유와 의류, 차(tea) 산업, 그리고 스웨덴 가정의 가사 도우미로 주로 일을 했고, 남성들의 경우 숙련 노동자인 경우 금속과 엔지니어링 등의 수출 산업, 비숙련 노동자인 경우 임업 분야에서 주로 일했다.

북유럽 이주 노동자로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없게 되자, 스웨덴 기업들은 노동 이민을 다른 유럽 국가로부터도 받아들이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스웨덴 노동조합 총연합회(LO)는 향후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서 반대했다. 하지만 1948년 설립된 노동시장위원회(Labor Market Board)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노동 이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사업장별로 노조가 북유럽 지역 밖에서 오는 신규 노동자의 고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조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 1950~1960년대 노조가 반대를 해서 고용이 안 된 경우는 신청자의 2% 미만에 머물렀고, 이 시기 유럽 전 지역에서 스웨덴으로의 노동 이민은 거의 자유로웠다고 볼 수 있다(Byström & Frohnert, 2017).

1947년부터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스, 구유고연방, 터키 등에서 노동자들이 수입되기 시작하고, 1950년에서 1970년 사이 이민자의 수는 20만 명에서 54만 명으로 증가한다. 이 시기에 이민으로

62만 명이 스웨덴에 들어오고, 이 가운데 25만 명이 다시 출신 국가로 돌아가거나 스웨덴을 거쳐 제3국으로 떠난 결과이다.

노동 이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노동조합 운동은 무엇보다도 이민자들에게 스웨덴 노동자와 동일한 조건이 제공되도록 보장했다.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서 1960년대에 채택된 방문노동자제도(Guest worker system)와 달리, 스웨덴의 이주 노동자들은 임금과 사회보장 혜택 등에서 차별받지 않았고, 가족을 스웨덴으로 데려올 수 있었으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스웨덴의 노동조합이 이주 노동자에 대해 동등한 처우를 주장한 이유는 이주 노동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을 허용할 경우, 스웨덴 모델의 노동시장 제도가 흔들리게 되고, 스웨덴 사회에서 이민자들이 하류 계층을 형성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주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스웨덴 노동자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선호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난민정책 또한 이 시기에 큰 변화를 맞이한다. 전후에 국제연합(UN)이 창설되고, 1951년 난민에 대한 국제협약(제네바 협약)이 맺어졌다. 스웨덴이 1954년 이 협약을 비준하면서, 이후로는 스웨덴 정부가 아닌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HCR)이 난민 심사를 하고, 난민의 수를 정하되, 최종적으로 스웨덴 정부가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난민을 받게 되었다. 나아가 스웨덴은 1954년 외국인 법을 제정하면서 제네바 협약보다 난민의 인정 범위와 난민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더 관대한 접근을 채택했다. 다만 이 시기에 난민은 많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1968년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해서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할 때 체코슬로바키아 난민 2,700명이 받아들여진 것과 비슷한 규모의 폴란드계 유대인을 받아들인 것이 있다.

당시 이민자들은 스웨덴인들에 비해서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은 낮아서, 스웨덴 경제에 부담이기보다는 도움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다만 사회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점차 동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다가 1960년대 말에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다. 1970~1994년: 노동 이민 제한, 난민정책 유지, 이민자 권리 증진

스웨덴의 이민정책은 1970년대 다시 한번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하게 된다. 1971~1972년 시기 경제 침체가 오자, 노동조합총연맹은 1972년 북유럽 이외 지역으로부터 오는 노동 이민에 대한 중단을 결정한다. 노동 시장위원회의 노조 대표와 각 사업장의 노조도 이에 따라 신규 노동 이민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사민당 정부도 노조의 결정을 결국 수용했다. 노조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고용주 단체들이 반발했지만, 1973~1974년 세계적으로 오일쇼크가 와서, 경제가 침체하고 실업률이 급증하자 결국 북유럽 이외 지역으로부터의 노동 이민은 중단되게 된다. 그리고 이 조치는 1995년 스웨덴이 유럽연합에 가입할 때까지 지속된다(Byström & Frohnert, 2017).

반면 이 시기에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이민자들의 권리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1964년 사민당 학생 그룹의 일원이자 폴란드계 유대인인 다비드 슈바르츠(David Schwarz)는 최대 일간지인 다겐스 님헤테르(Dagens Nyheter)에 동화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기고하는데, 다비드는 스웨덴이 다양한 이민자 집단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존중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문화

사회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가가 모든 사람들의 본래의 정체성(original identity)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조를 비롯해서 스웨덴 사회에서 이민자들은 노조 가입을 비롯한 사회 참여가 낮고, 스웨덴 사회 적응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었는데, 다비드의 기고가 계기가 되어 이후 본격적으로 이민자들의 스웨덴 사회 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Hansen, 2001).

1967년 정부 차원의 이민자 문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1975년 신이민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신이민법이 채택한 방법은 이민자 및 소수자를 위한 다문화주의 정책이다. 이 정책으로 다양한 이민자 그룹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이민자들의 모국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이민자들의 단체와 종교를 지원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Borevi, 2012).

난민정책과 가족 이민정책은 계속 관대한 방향으로 유지, 확장되었다. 1960년대 말 이후 스웨덴이 국제적 연대를 이상으로 삼아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네바 협약이 규정한 정치적 난민 외에 인도주의적 난민(전쟁 난민)을 받아들이고, 이후 라틴 아메리카와 중동과 아프리카의 더 광범위한 난민 그룹도 받아들였다.

대표적으로 1973년 군사쿠데타 이후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게 된 칠레의 사회주의정당 정치인들과 지식인, 노조 활동가들과 그 가족들을 받아들였고(1만 명),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베트남 난민 6천 명을 받아들였다. 1975~1982년 레바논 내 종교 집단 간 내전으로 생명이 위협에 처한 레바논 내 시리아계 기독교인 8,000명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후 이란과 이라크 전쟁의 난민, 터키에서 탄압받던 쿠르드족, 소말리아 내전의 난민들을 받아들였다(Byström & Frohnert, 2017).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난민의 수가 사회적 수용 능력을 넘어서 급증하게 되고, 비유럽 지역에서 온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난민들이 난민의 주를 이루게 되면서, 스웨덴 사회에서 난민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특히 대규모 난민 수용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특히 인구 유출로 주택 사정에 여유가 있는 지방)에 난민들을 할당해서 분배하게 되면서, 스웨덴 각지의 작은 마을들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난민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갑자기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마을 인구수의 20%에 가까운 난민을 수용하고 지원하게 된 이모(Gimo)의 주민들이 외국인 혐오 감정을 표현하면서 강하게 반발하여 뉴스의 헤드라인에 등장했고, 화보(Sjöbo)에서는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난민 수용을 거부하기도 했다(Rosenberg, 1995). 정치적으로는 1988년 반이민을 기치로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이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스웨덴 민주당은 점차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대해서 2022년 원내 제2정당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부터 난민 수용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엄격해지고 있었는데, 구유고연방국가들 간의 내전에서 무슬림계에 대한 인종학살이 일어나자, 1992~1993년에 다시 대규모의 보스니아, 코소보 난민이 유입되게 되었다.

3. 1995년 EU 가입 이후의 이민자 정책

1995년 유럽연합(EU) 가입으로 스웨덴의 노동시장이 유럽연합과 통합되게 되었다. 따라서,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의 이민자들은 스웨덴의 노동시장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스웨덴인들과 동등한 처우를 보장받게 되었다. 북유럽 국가들 간의 노동시장 통합도 변함없이 유지되

었다. 이 기간 스웨덴의 경제는 1990년대 초중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유럽 출신 노동 이민의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시기에 노동 이민정책은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노동 이민을 촉진하고 비숙련 노동자의 이민을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난민정책에 대해서는 난민의 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난민에 대한 심사가 보다 엄격해지고, 친족에 대해서 허용되었던 가족 이민의 대상이 직계 가족으로 한정되게 되었다. 특히 2015년 대규모 시리아 난민의 유입은 난민정책 전환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015년 한해에 16만 명 이상이 덴마크를 통해 스웨덴에 도착해서 난민을 신청하자, 국경에 대한 통제를 시작하고, 더 이상의 유입을 막고 있다. 2016년과 2021년에는 난민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과 가족 이민을 신청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이민자 정책에 있어서는 다문화를 지원하는 정책에서 스웨덴 사회로의 통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후 대도시 외곽에 중동계 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들이 생겨나면서 지역적인 인종 분리, 언어 분리, 계도화가 일어나고 이들 이민자들의 범죄율이 높아지면서(Adamson, 2020),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다문화 정책이 문제시되었다. 학교에서 이민자 자녀들에 대해 모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민자들에 대한 스웨덴어 교육 지원이 강화되고, 이민자 단체들과 종교에 대한 지원이 없어졌다. 개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존중하되, 이에 대한 국가적인 재정적 지원은 없어졌다.

대신 이민자 정책은 이민자들을 스웨덴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민자들을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집단으로 보고, 별도의 제도로 지원하기보다는, 스웨덴인들과 동일한 교육, 직업훈련, 복

지제도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정책 전환은 이민자 인구 구성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난민 출신이 많아지면서, 이민자들이 스웨덴인들에 비해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Bevelander, 2011). 이 때문에 고용과 연계된 연금 등의 사회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못 받게 되고, 정부재정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많게 되면서 이민자가 스웨덴 사회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4. 이민자 정책의 특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스웨덴의 이민정책은 국제정치적인 상황과 국제 규범, 국내의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정책에 따라 전개되어 왔는데,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민 인구의 규모와 구성이 변화되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인도주의적 대응과 국제 규범에 대한 지지로 시작된 난민정책은 1980년대 이후 난민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들이 스웨덴 사회 적응에 있어 문제를 겪는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현재는 난민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다. 유럽연합 가입 후 스웨덴 정부가 유럽 내 노동 이민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유럽 내 노동 이민은 스웨덴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고(Österman et al. 2024), 사회통합에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민자 정책은 이민자들에게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에서 스웨덴인과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되, 문화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다문화화를 지원하는 정책에서 스웨덴 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이민정책에 있어 스웨덴의 역사적 경험은 크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로 노동 이민정책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자국 시민들과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 통합과 노동시장의 안정을 유

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로 난민정책에 있어서는 인도주의적인 이상과 함께 사회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셋째로 이민자 정책에 있어서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지원보다는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지원이 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3절 가족정책

1. 스웨덴의 가족정책 개관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재정에서 가족을 위한 공공지출 규모가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OECD 회원국의 가족정책 공공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스웨덴이 GDP 대비 3.4% 규모의 재정을 가족정책에 투입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가족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를 위한 지출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고, 현물 급여를 위한 지출 규모는 중간 수준이다(OECD, 2024f). 스웨덴의 가족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20세기 중반부터 부모 모두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웨덴은 재정 투입의 확대와 함께 부모 및 아동 관련 수당의 도입, 공립 어린이집 확대, 가족을 위한 세제 개혁, 아버지의 권리와 책임의 강화 노력 등을 함께 추진하였다(Duvander & Ferrarini,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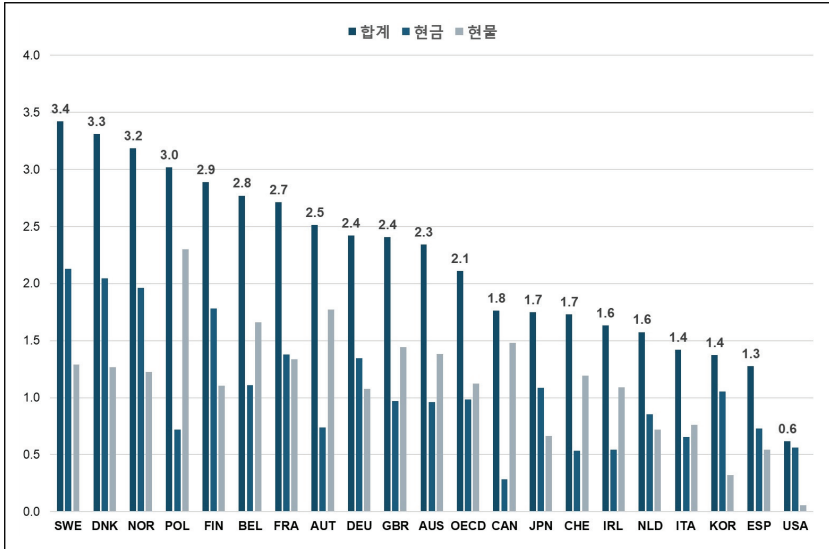
스웨덴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제공된다. 스웨덴의 정부 구조는 ‘국가-광역(regional)-지방(local)’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21개로 나누어진 광역지방자치단체(län; county)는 보건의료

서비스, 문화, 대중교통, 지역 개발 등에 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290개 기초지방자치단체(kommuner; municipalities)는 돌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직업교육, 환경 보호, 상하수도서비스, 응급서비스 등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를 담당한다(Sveries Kommuner och Regioner, 2024). 반면 중앙정부는 현금 급여 전반을 관리하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와 서비스 품질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사회서비스 기획과 제공은 물론 그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을 모두 직접 결정한다. 이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기초지방의회가 기초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기에 가능하다.

가족을 위한 다양한 수당은 스웨덴 사회보험청(Försäkringskassan)이 담당하고 있다. 사회보험청은 스웨덴 중앙정부 기관으로서 각종 수당 및 기초 실업급여를 비롯한 현금 급여를 담당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재정과 지원사업을 관리한다. 사회보험청은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부모 급여(parental benefits), 아동수당(child allowance), 장애아동지원수당(care allowance for disabled child), 가족을 위한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 for families with children) 등을 제공한다(Försäkringskassan, 2024).

[그림 4-5] 스웨덴 및 주요 OECD 회원국의 가족정책 공공지출 규모(2019년)

(단위: % of GDP)



출처: “OECD Family Database,” OECD, 2024f.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oecd-family-database.html>를 바탕으로 재구성.

2.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가. 보육서비스와 유아교육

스웨덴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부모는 자녀가 1세가 되어야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전까지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것을 권장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유치원(förskolan)은 1~5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와 함께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Nordic Co-operation, 2024b). 각 가정이 지불하는 돌봄서비스 이용료는 가구소득,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 돌봄서비스 이용 자녀의 수, 지방정부의 보조금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된다. 스톡홀름시(City of Stockholm)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가족이 부담하는 돌봄서비스 이용료 상한액은 월 1,688 크로나다(Stockholm stad, 2024). 6세가 되면 모든 아동은 유치원에서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 이후 13세까지 부모는 방과 전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Sweden.se, 2024).

나. 노인돌봄서비스

법률에 따라 스웨덴에 거주하는 노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노인돌봄서비스는 재가서비스, 시설돌봄서비스, 교통서비스 등이다. 스웨덴의 노인 대부분은 자신의 집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생활하고 싶어 하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그들에게 폭넓은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서비스 이용료는 서비스 내용과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자산조사를 통해 이용자 부담금을 결정하는데 그 금액은 사회서비스법(Socialtjänstlag)의 규정에 따라 월 최대 2,200크로나를 넘을 수 없다. 자택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관이 운영하는 보호시설이나 요양시설로 거처를 옮겨 돌봄서비스를 받는다(Informationsverige.se, 2024).

3. 가족을 위한 현금 급여

가. 휴직급여

스웨덴에서 부모는 자녀 한 명당 최대 480일 동안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같은 가구에 함께 살 경우에는 부모에게 각각

240일의 육아휴직이 배정되고, 한 명의 부모가 혼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만 480일이 배정된다. 240일 중 195일은 임금에 비례한 육아수당이 지급되고, 45일은 최저 금액이 지급된다. 이때 최고 인정 임금은 월 43,750크로나인데 평균적으로 임금의 약 73%가 육아수당 급여 금액으로 책정된다. 최저 수당액은 하루에 180크로나다(Nordic Co-operation, 2024c). 두 부모 간에 유급 육아휴직 일수를 교환할 수 있는데 임금 비례 육아수당이 지급되는 195일 중 90일에 대해서는 부모 사이에 주고받을 수 없다(Försäkringskassan, 2024).

스웨덴에서는 학생이나 실업자도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색다르다. 학생이나 실업자의 경우, 유급 육아휴직 일수는 임금 노동자와 같지만, 수당액에는 차이가 있다. 학생이나 실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6개월 이상 일했던 사람은 당시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그에 비례한 육아수당 급여를 받는다. 반면 고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250크로나가 수당으로 지급된다(Försäkringskassan, 2024).

나. 아동수당

스웨덴에 거주하면서 16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녀 각각에 대해 아동수당을 받는다. 한 가정에 아동수당 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추가로 대가족보조금(large family supplement)도 받을 수 있다(Nordic Co-operation, 2024). 2014년 3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의 아동수당은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에게 지급되지만, 2014년 3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아동수당은 부모에게 절반씩 지급된다. 대가족보조금도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아동수당 급여액은 자녀 1인당 월 1,250크로나다. 대가족보조금은 자녀가 많아질수록 커져 16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정은 월 150크로나를 받고, 6명인 가정은 월 4,240크로나를 받는다 (Försäkringskassan, 2024).

〈표 4-2〉 스웨덴 아동수당 및 대가족보조금 현황(2024년)

16세 미만 자녀 수	아동수당(월)	대가족보조금(월)	합계
1	1,250크로나	-	1,250크로나
2	2,500크로나	150크로나	2,650크로나
3	3,750크로나	730크로나	4,480크로나
4	5,000크로나	1,740크로나	6,740크로나
5	6,250크로나	2,990크로나	9,240크로나
6	7,500크로나	4,240크로나	11,740크로나

출처: “Social insurance authority of Sweden,” Försäkringskassan, 2024. <https://www.forsakringskassan.se/english/moving-to-working-studying-or-newly-arrived-in-sweden/social-insurance-in-sweden>를 바탕으로 재구성.

제4절 노후 소득보장

1. 배경

스웨덴의 노후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다. 스웨덴의 현 공적연금 제도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의 이상을 가장 잘 구현한 연금제도로, 다른 국가들에서 시행해온 다양한 연금제도들에 비해 노인 빈곤을 낮추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연금 모델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다른 국가들의 공적연금에 비해서 높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현재의 제도적 특성을 갖추기까지 공적연금 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골간을 형성한 1990년대의 연금 개혁에 대해서 자세히 다

루고자 한다.

스웨덴 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정부의 재정으로 모든 은퇴자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베버리지형 모델과 사회보험의 형태로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인 연금을 보장하는 비스마르크형 모델을 통합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보편주의에 기반한 연금 모델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서,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rpi & Palme, 1998; Byun, 2024). 두 번째 특징으로는 1990년대에 연금 개혁을 통해서 인구 노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 있다. 이때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확정 급여형(defined benefits)에서 확정 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으로 전환을 이루었는데, 이 개혁의 결과,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은 확보한 반면, 평균 임금을 받던 노동자의 경우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1990년 64%에서 2020년 44%로 낮아졌다(Nelson et al., 2020).

2. 공적연금의 역사

가. 1913년 국민연금의 시작

스웨덴에서는 1913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공무원과 군인 등 특수 직군만 연금 혜택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형식의 기본연금(public pension)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회부조 형식의 보충연금(supplementary pension)의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사회보험 형식의 기본연금은 의무가입 제도로 도입되었고, 완전 기여형으로 연금 납부자들이 자신들이 낸 금액에 비례해서 연금을 받았다. 반면, 사회부조 형식의 보충연금은 정부 재정을 사용해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 소득 조사(means-tested)에 기초해 수급 자격을 정했다. 군인과 공무원은 국민연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공무원 연금을 통해 연금을 지급했다.

1930년대 초가 되면, 절대다수의 은퇴자들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는데, 점차 노후 보장에 있어서 기본연금에 비해 보충연금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그 이유는 기본연금의 지급액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게 설계된 데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 지급액 수준이 오르지 않은 반면, 보충연금은 지속적으로 지급액 수준이 오르고, 수급 조건이 점차 완화되어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선진 산업 국가들 가운데 공적연금을 처음으로 도입할 때 사회보험 형식과 사회부조 형식을 동시에 도입한 것은 스웨덴(1913), 미국(1935), 스위스(1946) 세 나라뿐이다. 특히 1930년 이전에는 스웨덴이 유일했다. 사회보험 형식만 도입한 국가로는 독일(1889), 오스트리아(1906), 벨기에(1924), 이탈리아(1919), 네덜란드(1913), 핀란드(1937), 일본(1941) 등이 있다. 또한 사회 부조 형식만 도입한 국가로는 오스트레일리아(1908), 덴마크(1891), 프랑스(1905), 뉴질랜드(1898), 노르웨이(1936), 영국(1908), 아일랜드(1924)가 있다. 이 중 오스트리아의 경우 1906년에 사회보험 형식의 연금만 도입했지만, 1927년에는 사회부조 형식의 연금을 도입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사회부조 형식을 먼저 도입하고, 이후 사회보험 형식을 도입했다(Palme, 1990).

나. 1946년 베버리지 모델의 국민연금 도입

1946년 강력한 노동운동과 사민당 정부의 주도로, 평등주의 이상에 기초한 국민연금제도(Folkpension, FP)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하나로 통합된 국민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공무원, 군인 연금도 국민연금으로 통합), 동일한 연금 혜택을 받게 되었다. 동시에 수입과 자산조사에 기초한(means-tested) 사회부조 형식의 연금이 폐지되었다.

국민연금의 수준이 사회부조 연금보다는 높지만, 이전의 사회보험 연금보다 낮아서, 중산층이 노후에 공적연금에 의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다. 1959년 소득연계형 연금 도입

베버리지 모델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중산층의(민간부문 화이트 칼라 직군, 공무원, 고숙련 생산직 등)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계층 간, 정당들 사이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격렬한 정책 논쟁이 일어났다. 당시 사민당 정부는 중산층의 이해를 공적연금제도 안에 포용하는 소득연계형 연금(Allmän tilläggspension, ATP)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즉, 보편적인 기본연금(FP)에 소득연계형 연금(ATP)을 결합하여, 소득연계형 연금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을 위한 기본연금 부분은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고, 소득연계 연금은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이렇게 영국의 베버리지 모델과 독일의 비스마르크 모델을 통합한 스웨덴 보편주의 모델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이후 스웨덴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불평등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Korpi & Palme, 1998).

연금의 최대 납부 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이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15년간의 평균 소득의 60%를 연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했다(30/15원칙). 연금액은 소비자 물가 지수와 연동되어 증가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연금(FT)과 소득연금(ATP) 사이에 단계적으로 지급금액이 증가하도록 특별보충연금(PT)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만 일을 한 사람의 경우 소득연금 액수가 작아서 기본연금액보다도 낮게 된다. 이 경우, 전혀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같은 액수의 기본연금액만 받으면 공정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특별보충연금을 주어서 기본연금액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은 액수를 받도록 했다.

라. 1994년 연금제도의 현대화와 재정 안정화

1980년대부터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성, 실효성,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1984년 의회 내 연금 개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재정 안정성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했다. 첫째는 기대 수명의 증대로 인구 노령화가 진행된 것이다. 연금제도가 부과형 방식(pay-as-you-go, PAYG)과 확정 급여(defined benefit principle) 방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퇴 세대의 연금 지급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은퇴 세대는 낸 연금액에 비해서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되지만,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연금 납부액을 내야 연금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다.

둘째는 연금액을 물가 지수에 연동해서 생긴 것이었다. 스웨덴이 1970년대 중반의 오일 쇼크 이후 경제위기에 대응할 때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경제 불황 속에서도 물가는 상승했고, 기본연금액도 이에 따라 상승했다. 그러나 기본연금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비해 소득연계 연금의 경우, 상한액에 기준이 묶여 있어서, 점차적으로 중

산층의 노후 생활 보장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두 가지 문제 외에 소득이 가장 많은 15년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똑같이 30년 동안 일하고, 30년 평균 소득이 비슷한 경우라도, 저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소득 수준이 생애주기 동안 비교적 일정한데, 숙련 노동자나 대학 졸업자들은 소득 수준이 생애주기 동안 상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숙련 노동자들이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노동 참여가 일반화되고, 양성평등을 향한 개혁이 지속되면서, 가족 내 전통적인 성별 분업에 기초한 연금 모델을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현행 공적연금 제도의 내용과 특징

1994년의 연금 개혁은 재정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소득연계 연금을 확정 급여형(defined benefits)에서 확정 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으로 바꾸었다. 즉, 법적으로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의 수준을 규정하지 않고, 납부할 기여금의 수준만 규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받게 될 연금액은 기본적으로 기여금의 총액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은퇴 세대의 노령화가 진행되어서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지면, (이미 낸 연금 총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연금 수급액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1994년의 연금 개혁은 연금 개시 시기의 인구, 경제 구조적인 조건들을 반영해서 연금 지급액이 정해지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출산율이 줄어서 연금을 납부할 젊은 세대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은퇴 세대의 연금액도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연금제도는 기존의 소득대체율(60%)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지만, 국가가 이 대체율을 유지할 의무는 없었지

게 되었다. 연금의 납부 기간은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났고, 연금액은 최고소득 15년이 아닌 납입 기간 전체의 평균 소득 수준에 근거해서 산정하도록 했다. 사회보장 소득(실업보험, 병가보험, 부모보험 급여)에 대해서도 급여의 18.5%를 연금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이 금액을 정부와 가입자가 분담하도록 했다. 완전 적립식 프로그램(프리미엄 연금)이 새롭게 도입되어서, 공적연금이 3층의 프로그램(보장연금, 소득연금, 프리미엄 연금)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우선 보장연금(Guarantee Pension)은 소득 연금액이 없거나 낮은 사람들을 위한 기본연금(FT)을 계승한 것으로 여전히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고, 소득지수에 연계하는 대신, 저소득 은퇴자의 최저 생계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여전히 물가지수에 연계되도록 했다. 보장연금에 대한 수급 조건을 강화해서 65세 이전에는 수령할 수 없도록 하고, 보장 금액을 받으려면 65세 이전에 40년 동안 스웨덴에 거주하도록 했다.

소득연계 연금은 소득연금과 프리미엄 연금,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뉘게 되었다. 연금 기여금은 가입자 소득의 18.5%로 하는데, 이 가운데 16%는 소득연금으로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연금 기구가 운영하는 계좌(notional accounts)에 적립하고, 2.5%는 프리미엄 연금으로 완전 적립식 개인 계좌(fully funded individual accounts)에 적립하도록 했다. 전자는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부과식(PAYG) 구조를 유지하지만, 후자를 통해서 적립식(fully funded) 구조가 부분적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프리미엄 연금에 대해서 개인은 연금 펀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소득비례 연금액을 조정하는 기준은 물가지수(price index)에서 (평균 소득에 연동하는) 소득지수(income index)로 바뀌었다.

사회적 성역할의 변화를 반영하고, 더욱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미망인 연금(widow's pension)은 폐지되고, 연금 수급 기간에 제한을 둔 유족 연금(survivor's pension)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기대 수명 연장 추세를 반영해서, 고정된 은퇴 연령을 설정하지 않되, 61세 이전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고, 연금 수령의 시작 시기를 65세 이후로 미룰 수도 있도록 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할 경우 연금액을 필요에 따라 총액의 25, 50, 75, 100%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거시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의 ATP 펀드를 5개의 국가 연기금(AP Fund 1, 2, 3, 4, 6)으로 재편해서, 이 기금의 운용으로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적립하도록 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해 경제 위기 상황이 와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프리미엄 연금은 개인이 사설 연기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7호 국가 연기금(AP 7호 펀드)을 통해서 운용한다. 이러한 연금 개혁의 조치들은 1998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되어서, 2003년 이후 완전히 실행되어, 현재 공적 연금의 틀을 이루고 있다.

연금 개혁의 결과, 연금 재정이 안정화되어서, 공적연금의 지출 규모는 2003년 이후 사회보장지출의 30~35%, 국내총생산의 8~9%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OECD, 2024g). 반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평균 임금의 노동자를 기준으로 할 때 1990년 64%에서 2020년 44%로 낮아졌다(Nelson et al., 2020).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짐에 따라 최근 직장별로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서 제공되는 직장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충하는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Greve, 2018). 직장연금은 스웨덴의 대다수의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고용주가 가입자 임금의 4.5~6%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내고, 평균 임금 소득자의 경우, 은퇴 전 소득의 22% 정도를 연금액으로 받게 된다(Anderson,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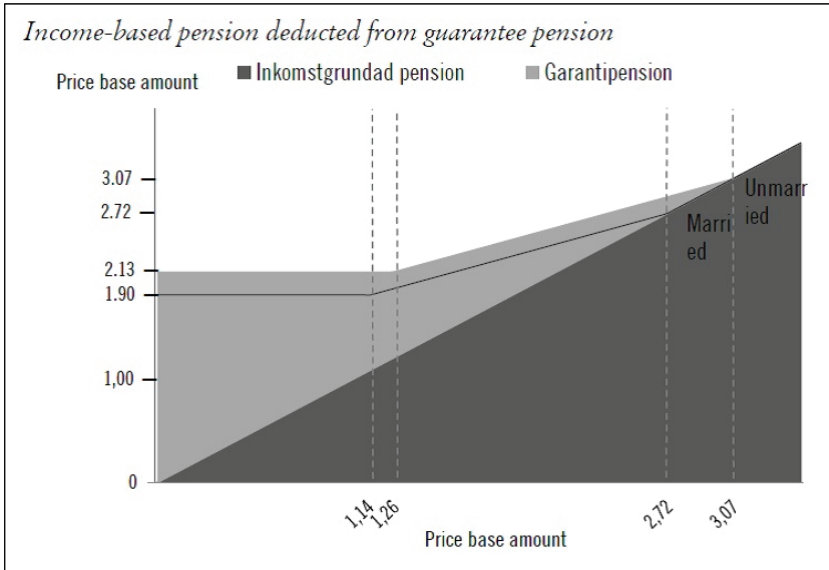
따라서 공적연금과 직장연금을 결합하면, 평균 임금을 받던 노동자는 1990년대 수준인 은퇴 전 소득의 66%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24년 기준 보장연금은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월 11,603크로나(한화로 약 150만 원)이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505크로나이다(Pensions myndigheten, 2024). 보장연금의 혜택은 소득연금이 기초연금액보다는 조금 더 많은 노인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주어진다. 2024년 기준 소득연금이 17,655크로나(한화로 약 230만 원)를 넘지 않는다면, 보장연금이 단계적으로 추가적인 연금 혜택을 준다. 아래 [그림 4-6]을 보면 보장연금의 지급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보장연금은 기초 소득을 모든 노인에게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공적연금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다. 정부 재정을 통한 보장연금은 2015년 기준 공적연금 전체 지급액의 5.27%에 불과하다. 이는 스웨덴의 현 은퇴 세대의 경우 남녀 모두 고용률이 높아서, 보장연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연계 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내는 연금 납부액과 연금 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pensionable income) 상한선이 있는데, 2022년 기준 월 47,748크로나(약 620만 원)이다. 이보다 높은 소득에 대해서는 상한선 금액의 7%만 낸다. 그런데, 고용주가 내는 10.2%에 대해서는 소득의 상한선이 없다. 따라서 고임금자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내는 10.2% 중에 상한선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으로 받지 못한다. 이 금액은 정부로 들어가고, 재정을 통한 연금의 재분배 기능(출산, 병역 기간 연금 크레딧 제공 등)에 기여를 한다.

[그림 4-6] 스웨덴 공적연금의 기본 구조



출처: "The Swedish old-age pension system,"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p. 29.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스웨덴과 한국의 인식 비교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제5장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스웨덴과 한국의 인식 비교

제1절 조사 개요

본 장에서는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 현상, 결혼, 출산 및 육아, 인구정책에 관한 스웨덴 시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일과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주제별로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스웨덴 시민의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 결과를 검토한다. 또한, 한국의 관점에서 스웨덴 시민 인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동일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도 주제별로 제시하여 스웨덴과 한국의 인식을 전반적으로 비교할 것이다.

스웨덴에서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는 2024년 8월 스웨덴에 거주하는 20세부터 49세까지의 성인 남녀 2,500명(남자 1,288명, 여자 1,212명)을 대상으로, 인구 현상, 결혼, 출산 및 육아,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여 스웨덴 인구정책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스웨덴 조사와 비교하기를 위해 동일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이하 성인 남녀 2,500명(남자 1,288명, 여자 1,212명)을 대상으로 2024년 6월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두 나라 모두에서 표본은 지역, 성, 연령별 비례 할당 방식을 통해 추출되었으며,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5-1〉 스웨덴 및 한국 설문조사 개요

구분	스웨덴	한국
목표 모집단	2024년도 8월 현재 스웨덴에 거주하는 20~49세 이하 성인 남녀	2024년도 6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이하 성인 남녀
조사 모집단	2024년도 8월 기준 20~49세 이하 스웨덴 거주자	2024년도 6월 기준 20~49세 이하 한국 거주자
표본 크기	2,500명 (남자 1,288명, 여자 1,212명)	2,500명 (남자 1,250명, 여자 1,250명)
추출 틀	2024년 8월 기준 (주)엠브레인컨설팅과 제휴한 스웨덴 조사업체의 패널 가입자 리스트에서 무작위 추출	2024년 6월 기준 (주)엠브레인컨설팅의 패널 가입자 리스트에서 무작위 추출
표본배분	지역/성/연령별 비례배분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2024년 8월 27일~9월 9일	2024년 6월 10일~6월 20일
조사 내용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인구 문제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 등	
조사 기관	(주)엠브레인컨설팅	

출처: 저자 작성.

제2절 조사 결과

1.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인식

가. 결혼 의향

먼저, 현재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앞으로 결혼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표 5-2〉는 이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2%인 반면,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19.6%였다. 한국의 경우 결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2.9%, 결혼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19.8%로 나타났다. 한국과 비교하면 스웨덴의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약 2.7%p 낮았지만,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4.6%p 더 높았다. 다만 스웨덴의 조사 대상자 중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3.7%로 나타나 한국 응답자보다 약 6%p 높게 나타났다.

스웨덴 응답자의 향후 결혼 의향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우선 성별에 따라 남자는 52.5%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는 47.8%가 의향이 있다고 답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교육 수준은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향후 결혼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주거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혼인상태가 동거/사실혼인 경우,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 결혼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향후 결혼 의향

(단위: %, 명)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생각 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합계
한국	52.9	24.2	5.4	17.6	(1,383) 100.0
스웨덴	50.2	19.6	6.5	23.7	(1,884) 100.0
성별($\chi^2=11.652^{**}$)					
남자	52.5	17.7	7.6	22.2	(956) 100.0
여자	47.8	21.6	5.3	25.3	(928) 100.0
연령($\chi^2=327.260^{***}$)					
20~24세	74.9	5.5	5.2	14.3	(307) 100.0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생각 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합계
25~29세	68.3	7.3	4.2	20.3	(385) 100.0
30~34세	52.7	15.2	5.2	26.9	(402) 100.0
35~39세	42.0	27.4	6.4	24.2	(281) 100.0
40~44세	27.3	32.2	9.7	30.7	(267) 100.0
45~49세	20.7	41.3	10.3	27.7	(242) 100.0
지역($\chi^2=30.579^{***}$)					
대도시	57.3	15.5	4.6	22.5	(626) 100.0
대도시의 외곽	47.0	23.1	7.6	22.3	(368) 100.0
중소도시	48.6	20.1	6.4	24.9	(642) 100.0
농어촌	41.1	23.4	9.7	25.8	(248) 100.0
교육($\chi^2=23.539^*$)					
ISCED 1 or 2	48.5	28.8	8.6	14.1	(163) 100.0
ISCED 3	49.8	18.6	7.3	24.3	(923) 100.0
ISCED 4 or 5	48.3	18.6	5.6	27.6	(377) 100.0
ISCED 6	52.2	20.1	5.0	22.7	(299) 100.0
ISCED 7 or 8	56.6	16.4	4.1	23.0	(122) 100.0
혼인상태($\chi^2=102.326^{***}$)					
미혼	44.9	20.6	8.4	26.1	(777) 100.0
동거/사실혼	60.6	15.4	4.4	19.6	(889) 100.0
이혼/별거/사별	26.6	33.0	8.3	32.1	(218) 100.0
자녀 여부($\chi^2=23.811^{***}$)					
자녀 있음	45.5	24.8	6.4	23.3	(761) 100.0
자녀 없음	53.4	16.0	6.5	24.0	(1,123) 100.0
취업 여부($\chi^2=8.098^*$)					
취업	52.1	18.7	6.1	23.1	(1,414) 100.0
비취업	44.7	22.1	7.7	25.5	(470) 100.0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생각 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합계
가구소득($\chi^2=73.363^{***}$)					
19,999코로나 or lower	34.7	27.3	11.1	26.8	(395) 100.0
20,000~29,999코로나	48.9	20.3	6.2	24.6	(487) 100.0
30,000~44,999코로나	54.4	15.8	5.3	24.6	(476) 100.0
45,000~64,999코로나	57.6	17.9	4.1	20.4	(363) 100.0
65,000~75,000코로나	63.2	13.5	4.9	18.4	(163) 100.0
가구 유형($\chi^2=81.560^{***}$)					
무자녀 미혼	48.9	18.5	7.3	25.3	(655) 100.0
유자녀 미혼	23.8	32.0	13.9	30.3	(122) 100.0
무자녀 기혼 ¹⁾	59.8	12.6	5.3	22.2	(468)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57.1	19.8	4.1	19.0	(268)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44.2	26.1	5.7	24.0	(371)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 자녀 출산 의향

〈표 5-3〉에서는 향후 자녀 출산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앞으로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웨덴 응답자 가운데 43.2%가 그렇다고 답했고, 자녀를 낳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 비율은 39.6%였다. 한국의 경우, 자녀를 낳겠다는 응답 비율은 31.2%였고, 낳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은 47.3%였다. 스웨덴의 자녀 출산 의향 비율은 한국보다 12.0%p 높고, 출산하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은 한국보다 7.7%p 낮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스웨덴 시민들이 한국 시민들보다 자녀 출산 의

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의 조사 결과를 성별에 따라 비교하면 아이를 낳겠다는 의향은 여자(40.1%)가 남자(46.0%)보다 낮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적은 사람일수록 출산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동거/사실혼 혹은 미혼인 경우, 취업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출산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장 낮은 소득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출산 의향이 다소 낮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표 5-3〉 향후 자녀 출산 의향

(단위: %, 명)

구분	낳을 생각이다	낳지 않을 생각이다	생각 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합계
한국	31.2	47.3	5.9	15.6	(2,500) 100.0
스웨덴	43.2	39.6	3.0	14.3	(2,500) 100.0
성별($\chi^2=54.356^{***}$)					
남자	46.0	34.5	4.9	14.6	(1,288) 100.0
여자	40.1	45.0	1.0	13.9	(1,212) 100.0
연령($\chi^2=803.494^{***}$)					
20~24세	77.0	8.0	5.2	9.8	(326) 100.0
25~29세	70.0	13.7	3.2	13.0	(437) 100.0
30~34세	51.0	22.8	3.2	23.0	(535) 100.0
35~39세	31.9	51.6	1.5	14.9	(395) 100.0
40~44세	19.7	66.2	2.3	11.8	(441) 100.0
45~49세	9.8	77.9	3.0	9.3	(366) 100.0
지역($\chi^2=37.893^{***}$)					
대도시	50.3	33.9	2.6	13.2	(882) 100.0

구분	날을 생각이다	날지 않을 생각이다	생각 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합계
대도시의 외곽	37.1	44.4	4.0	14.6	(480) 100.0
중소도시	42.1	39.8	3.1	15.1	(810) 100.0
농어촌	35.4	47.3	2.4	14.9	(328) 100.0
교육($\chi^2=26.671^{**}$)					
ISCED 1 or 2	42.6	36.6	8.2	12.6	(183) 100.0
ISCED 3	44.0	39.1	3.0	13.8	(1,151) 100.0
ISCED 4 or 5	42.3	38.3	2.3	17.1	(520) 100.0
ISCED 6	41.8	43.2	1.6	13.4	(433) 100.0
ISCED 7 or 8	43.7	40.4	2.8	13.1	(213) 100.0
혼인상태($\chi^2=184.741^{***}$)					
미혼	48.0	28.3	3.7	19.9	(777) 100.0
동거/사실혼	50.3	34.4	1.5	13.8	(889) 100.0
법률혼	32.8	56.8	3.4	7.0	(616) 100.0
이혼/별거/사별	26.1	51.8	5.5	16.5	(218) 100.0
자녀 여부($\chi^2=306.158^{***}$)					
자녀 있음	31.3	56.1	1.3	11.2	(1,276) 100.0
자녀 없음	55.5	22.3	4.7	17.5	(1,224) 100.0
취업 여부($\chi^2=12.738^{**}$)					
취업	44.2	39.4	2.4	13.9	(1,940) 100.0
비취업	39.5	40.0	5.0	15.5	(560) 100.0
가구소득($\chi^2=32.431^{**}$)					
19,999코로나 or lower	37.8	39.6	5.0	17.6	(437) 100.0
20,000~29,999코로나	46.3	34.2	2.5	17.0	(553) 100.0
30,000~44,999코로나	44.4	38.9	3.2	13.5	(651) 100.0
45,000~64,999코로나	43.0	43.6	2.0	11.4	(589) 100.0
65,000~75,000코로나	43.0	43.3	2.2	11.5	(270) 100.0

구분	낳을 생각이다	낳지 않을 생각이다	생각 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합계
가구 유형($\chi^2=483.030^{***}$)					
무자녀 미혼	52.1	22.6	4.4	20.9	(655) 100.0
유자녀 미혼	26.2	59.0	0.0	14.8	(122) 100.0
무자녀 기혼 ¹⁾	59.4	22.0	5.1	13.5	(56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53.8	34.0	2.3	9.9	(426)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19.1	68.5	1.0	11.4	(728)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 자녀 계획

자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낳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낳고자 하는지를 물었다. <표 5-4>는 이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스웨덴 조사 대상자는 평균 2.35명의 자녀를, 한국 조사 대상자는 평균 1.74명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 결과로부터 한국 시민들보다 스웨덴 시민들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자녀를 갖고자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연령대별로는 35~39세가 약 2.47명으로 다른 연령대들 중 가장 많은 수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법률혼이거나(2.59명) 동거/사실혼인 경우가(2.31명) 미혼이나(2.29명) 이혼/별거/사별인 경우보다(2.18명) 많은 수의 자녀를 계획한다고 응답했다. 자녀가 있는 경우(2.63명)가 없는 경우(2.18명)보다 많은 수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었다.

〈표 5-4〉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

(단위: %, 명)

구분	평균	합계
한국	1.74	(780) 100.0
스웨덴	2.35	(1,079) 100.0
성별($t=-1.359$)		
남자	2.32	(593) 100.0
여자	2.38	(486) 100.0
연령($F=2.671^*$)		
20~24세	2.39	(251) 100.0
25~29세	2.37	(306) 100.0
30~34세	2.29	(273) 100.0
35~39세	2.47	(126) 100.0
40~44세	2.25	(87) 100.0
45~49세	2.03	(36) 100.0
지역($F=0.907$)		
대도시	2.34	(444) 100.0
대도시의 외곽	2.40	(178) 100.0
중소도시	2.36	(341) 100.0
농어촌	2.25	(116) 100.0
교육($F=1.215$)		
ISCED 1 or 2	2.33	(78) 100.0
ISCED 3	2.40	(507) 100.0
ISCED 4 or 5	2.30	(220) 100.0
ISCED 6	2.28	(181) 100.0
ISCED 7 or 8	2.31	(93) 100.0
혼인상태($F=8.856^{***}$)		
미혼	2.29	(373) 100.0
동거/사실혼	2.31	(447) 100.0

구분	평균	합계
법률혼	2.59	(202) 100.0
이혼/별거/사별	2.18	(57) 100.0
자녀 여부($t=9.424^{***}$)	.	.
자녀 있음	2.63	(400) 100.0
자녀 없음	2.18	(679) 100.0
취업 여부($t=-0.999$)	.	.
취업	2.34	(858) 100.0
비취업	2.39	(221) 100.0
가구소득($F=2.600^*$)	.	.
19,999크로나 or lower	2.38	(165) 100.0
20,000~29,999크로나	2.26	(256) 100.0
30,000~44,999크로나	2.34	(289) 100.0
45,000~64,999크로나	2.46	(253) 100.0
65,000~75,000크로나	2.27	(116) 100.0
가구 유형($F=79.068^{***}$)	.	.
무자녀 미혼	2.27	(341) 100.0
유자녀 미혼	2.50	(32) 100.0
무자녀 기혼 ¹⁾	2.10	(338)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2.25	(229)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3.27	(139)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라. 일반적인 적정 자녀 수에 대한 인식

스웨덴과 한국에서 적정하다고 여겨지는 자녀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두 국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적정 자녀 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로 두 국가 사이에 적정 자녀 수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적정 자녀 수는 평균 1.58명이었지만, 스웨덴에서는 평균 2.25명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시민들이 한국 시민들보다 평균적으로 0.67명의 자녀를 더 낳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표 5-4〉 참조)와 비교하면 두 국가 모두 적정 자녀 수가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의 조사 결과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적정 자녀 수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혼인상태의 경우, 이혼/별거/사별인 응답자는 평균 2.39명이라고 답하여 다른 집단의 응답자들보다 조금 높았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2.42명)가 없는 경우(2.08명)보다 많은 수의 자녀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가구 유형 측면에서는 유자녀 미혼 및 기혼인 경우가 무자녀 미혼 및 기혼보다 많은 수의 자녀를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5-5〉 일반적인 적정 자녀 수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평균	합계
한국	1.58	(2,500) 100.0
스웨덴	2.25	(2,500) 100.0
성별($t=-1.668$)		
남자	2.21	(1,288) 100.0

구분	평균	합계
여자	2.29	(1,212) 100.0
연령(F=2.915*)	.	.
20~24세	2.36	(326) 100.0
25~29세	2.32	(437) 100.0
30~34세	2.31	(535) 100.0
35~39세	2.19	(395) 100.0
40~44세	2.20	(441) 100.0
45~49세	2.11	(366) 100.0
지역(F=0.349)	.	.
대도시	2.23	(882) 100.0
대도시의 외곽	2.29	(480) 100.0
중소도시	2.25	(810) 100.0
농어촌	2.26	(328) 100.0
교육(F=0.058)	.	.
ISCED 1 or 2	2.27	(183) 100.0
ISCED 3	2.25	(1,151) 100.0
ISCED 4 or 5	2.24	(520) 100.0
ISCED 6	2.26	(433) 100.0
ISCED 7 or 8	2.23	(213) 100.0
혼인상태(F=7.286***)	.	.
미혼	2.10	(777) 100.0
동거/사실혼	2.29	(889) 100.0
법률혼	2.34	(616) 100.0
이혼/별거/사별	2.39	(218) 100.0
자녀 여부(t=7.738***)	.	.
자녀 있음	2.42	(1,276) 100.0
자녀 없음	2.08	(1,224) 100.0
취업 여부(t=-0.030)	.	.
취업	2.25	(1,940) 100.0

구분	평균	합계
비취업	2.25	(560) 100.0
가구소득(F=2.559*)		
19,999크로나 or lower	2.11	(437) 100.0
20,000~29,999크로나	2.28	(553) 100.0
30,000~44,999크로나	2.29	(651) 100.0
45,000~64,999크로나	2.31	(589) 100.0
65,000~75,000크로나	2.21	(270) 100.0
가구 유형(F=29.348***)		
무자녀 미혼	2.08	(655) 100.0
유자녀 미혼	2.22	(122) 100.0
무자녀 기혼 ¹⁾	2.07	(56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2.14	(426)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2.62	(728)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마. 가족 계획을 위한 고려사항

가족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떤 점들을 우선 고려하는지를 살펴보고 두 국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항목을 물어보았다. 설문지는 11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하였고, 응답자는 각각에 대해 5점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에 따라 중요도를 선택하였다. <표 5-6>은 이에 대한 스웨덴과 한국에서의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여준다.

스웨덴의 경우, 가족 계획 수립 시 본인의 건강(87.8%), 배우자의 건강(87.3%), 주거 여건(84.5%) 순으로 중요(‘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 비율 합계)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경력 단절의 가능성(48.6%),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불확실성(54.6%), 정부의 충분한 지원(61.9%)을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한국 시민들은 설문지에 제시된 모든 고려사항을 스웨덴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불확실성이 가족 계획 수립 시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한국 86.6%, 스웨덴 54.6%로 나타나 양국 간 차이(32.0%p)가 가장 컸다. 또한, 두 나라 시민들의 응답은 경력 단절의 가능성과 정부의 충분한 지원 항목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경력 단절 가능성이 가족 계획 수립 시에 중요하다는 의견은 한국 72.2%, 스웨덴 48.6%로 그 차이는 23.6%p였고,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한국 84.5%, 스웨덴 61.9%로 나타나 그 차이는 22.6%p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스웨덴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력 단절의 가능성, 정부의 지원 수준 등은 가족 계획 수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인다.

〈표 5-6〉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고려사항별 중요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가정의 경제적 여건						
스웨덴	2.9	2.8	12.1	45.6	36.6	(2,500) 100.0
	(5.7)		(12.1)	(82.2)		
한국	0.1	0.6	5.0	31.8	62.5	(2,500) 100.0
	(0.7)		(5.0)	(94.3)		
본인의 건강						
스웨덴	1.1	2.0	9.2	43.4	44.4	(2,500) 100.0
	(3.1)		(9.2)	(87.8)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한국	0.0	0.2	4.5	35.8	59.5	(2,500) 100.0
	(0.2)		(4.5)	(95.3)		
배우자의 건강						
스웨덴	1.3	2.1	9.2	40.2	47.1	(2,500) 100.0
	(3.4)		(9.2)	(87.3)		
한국	0.0	0.2	4.4	35.0	60.4	(2,500) 100.0
	(0.2)		(4.4)	(95.4)		
본인의 취업 상태						
스웨덴	1.9	3.5	17.0	42.9	34.7	(2,500) 100.0
	(5.4)		(17.0)	(77.6)		
한국	0.2	1.4	11.0	35.9	51.6	(2,500) 100.0
	(1.6)		(11.0)	(87.5)		
배우자의 취업 상태						
스웨덴	2.1	3.9	19.3	42.6	32.1	(2,500) 100.0
	(6.0)		(19.3)	(74.7)		
한국	0.7	2.7	16.1	32.6	47.8	(2,500) 100.0
	(3.4)		(16.1)	(80.4)		
주거 여건						
스웨덴	1.2	2.6	11.8	45.3	39.2	(2,500) 100.0
	(3.8)		(11.8)	(84.5)		
한국	0.1	0.3	9.2	43.8	46.6	(2,500) 100.0
	(0.4)		(9.2)	(90.4)		
일-생활 균형						
스웨덴	1.2	2.5	12.6	41.6	42.1	(2,500) 100.0
	(3.7)		(12.6)	(83.7)		
한국	0.0	0.9	9.4	42.7	46.9	(2,500) 100.0
	(0.9)		(9.4)	(89.6)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경력 단절의 가능성						
스웨덴	4.3	10.6	36.6	32.6	16.0	(2,500) 100.0
	(14.9)		(36.6)	(48.6)		
한국	0.7	3.7	23.3	41.8	30.4	(2,500) 100.0
	(4.4)		(23.3)	(72.2)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스웨덴	2.3	4.1	18.8	41.9	33.0	(2,500) 100.0
	(6.4)		(18.8)	(74.9)		
한국	0.3	1.8	14.6	45.0	38.3	(2,500) 100.0
	(2.1)		(14.6)	(83.3)		
정부의 충분한 지원						
스웨덴	3.0	6.7	28.4	39.8	22.1	(2,500) 100.0
	(9.7)		(28.4)	(61.9)		
한국	0.4	1.4	13.8	37.9	46.6	(2,500) 100.0
	(1.8)		(13.8)	(84.5)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불확실성						
스웨덴	4.2	9.8	31.5	32.1	22.5	(2,500) 100.0
	(14.0)		(31.5)	(54.6)		
한국	0.2	0.9	12.2	36.5	50.1	(2,500) 100.0
	(1.1)		(12.2)	(86.6)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바. 자녀 출산에 따른 생활 변화

다음으로 자녀를 출산하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표 5-7>이 보여주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스웨덴 응답자가 동의한 출산으로 인한 변화는 경제적 부담의 증가로 65.2%가 이러한 변화에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한국에서 역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경제적 부담의 증가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했는데 그 비율은 92.7%로 나타나 스웨덴보다 27.5%p 높았다. 양국 모두에서 경제적 부담의 증가는 출산으로 인한 가장 보편적인 변화로 보이지만, 그러한 변화를 크게 느끼는 시민의 비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듯하다. 스웨덴 조사에서 출산으로 인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데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절반 이상인 59.2%였지만, 출산 이후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 데 긍정적인 응답 비율(‘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의 응답 비율 합계)이 64.9%로 더 높게 나타났다.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는 점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스웨덴 응답자는 44.8%였는데 이는 한국의 34.8%보다 10.0%p 높은 수치다. 스웨덴의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한국보다 더 보편적이고 관대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많은 스웨덴 사람들은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노년기에 자녀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표 5-7〉 자녀 출산에 따른 생활 변화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계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스웨덴	4.5	8.8	27.5	36.0	23.2	(2,500) 100.0
	(13.3)		(27.5)	(59.2)		
한국	0.5	2.4	11.8	48.0	37.4	(2,500) 100.0
	(2.9)		(11.8)	(85.4)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						
스웨덴	2.8	5.9	26.4	36.0	28.9	(2,500) 100.0
	(8.7)		(26.4)	(64.9)		
한국	1.0	3.1	21.6	45.7	28.6	(2,500) 100.0
	(4.1)		(21.6)	(74.3)		
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스웨덴	7.0	17.2	38.2	25.8	11.8	(2,500) 100.0
	(24.2)		(38.2)	(37.6)		
한국	2.3	10.8	24.9	39.5	22.5	(2,500) 100.0
	(13.1)		(24.9)	(62.0)		
배우자(파트너 포함)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스웨덴	12.2	21.7	36.4	20.9	8.8	(2,500) 100.0
	(33.9)		(36.4)	(29.7)		
한국	4.8	15.8	28.0	37.1	14.3	(2,500) 100.0
	(20.6)		(28.0)	(51.4)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						
스웨덴	5.4	10.3	39.5	32.4	12.4	(2,500) 100.0
	(15.7)		(39.5)	(44.8)		
한국	7.6	20.8	36.8	26.8	8.0	(2,500) 100.0
	(28.4)		(36.8)	(34.8)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계
배우자(파트너 포함)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						
스웨덴	8.0	17.4	39.6	24.1	10.9	(2,500) 100.0
	(25.4)		(39.6)	(35.0)		
한국	3.1	8.7	35.5	39.8	12.9	(2,500) 100.0
	(11.8)		(35.5)	(52.7)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						
스웨덴	3.1	5.8	26.0	40.0	25.2	(2,500) 100.0
	(8.9)		(26.0)	(65.2)		
한국	0.3	0.6	6.4	32.8	59.9	(2,500) 100.0
	(0.9)		(6.4)	(92.7)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성역할 인식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의 인구정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가정에 남아 있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이중 성역할 분업체계가 시장 노동과 육아 및 가사 노동 등에 대한 여성의 이중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Brinton & Oh, 2019).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하였다.

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

먼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은 누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물어보았다. <표 5-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과 스웨덴에서 공통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역할이라는 응답이 각각 67.6%, 69.0%로 가장 높았다. 확실히 남성 또는 대체로 남성이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한국(29.8%)이 스웨덴(21.2%)보다 많았고, 확실히 여성 또는 대체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스웨덴(9.7%)이 한국(2.6%)보다 높았다.

스웨덴 조사 결과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나이가 적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은 남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거주지역 측면에서는 대도시나 대도시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보다 남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가구소득 측면에서는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소득 수준 집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에 대한 성역할 인식

(단위: %, 명)

구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합계
한국	6.4	23.4	67.6	1.8	0.8	(2,500) 100.0
스웨덴	6.1	15.1	69.0	6.3	3.4	(2,500) 100.0
성별($\chi^2=95.690^{***}$)						
남자	8.7	18.1	60.6	8.4	4.3	(1,288) 100.0
여자	3.4	11.9	78.1	4.1	2.6	(1,212) 100.0

구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합계
연령($\chi^2=80.760^{***}$)						
20~24세	8.0	22.1	53.4	8.9	7.7	(326) 100.0
25~29세	6.4	17.6	66.6	5.7	3.7	(437) 100.0
30~34세	5.8	16.1	66.7	7.7	3.7	(535) 100.0
35~39세	5.8	11.1	74.2	6.6	2.3	(395) 100.0
40~44세	5.4	13.4	75.1	5.2	0.9	(441) 100.0
45~49세	5.7	10.7	76.5	3.8	3.3	(366) 100.0
지역($\chi^2=45.034^{***}$)						
대도시	7.1	16.3	64.1	8.3	4.2	(882) 100.0
대도시의 외곽	7.1	14.8	65.4	8.8	4.0	(480) 100.0
중소도시	4.8	15.4	73.1	3.7	3.0	(810) 100.0
농어촌	5.2	11.3	77.7	4.0	1.8	(328) 100.0
교육($\chi^2=31.285^*$)						
ISCED 1 or 2	9.8	13.7	61.7	7.1	7.7	(183) 100.0
ISCED 3	6.3	15.9	68.6	6.3	2.9	(1,151) 100.0
ISCED 4 or 5	5.8	16.0	66.9	6.7	4.6	(520) 100.0
ISCED 6	3.7	14.1	74.1	5.8	2.3	(433) 100.0
ISCED 7 or 8	7.5	11.7	72.3	6.1	2.3	(213) 100.0
혼인상태($\chi^2=28.251^{**}$)						
미혼	6.0	15.3	70.3	4.9	3.5	(777) 100.0
동거/사실혼	4.9	13.6	71.1	6.3	4.0	(889) 100.0
법률혼	7.3	15.9	64.4	9.4	2.9	(616) 100.0
이혼/별거/사별	7.8	17.9	69.3	2.8	2.3	(218) 100.0
자녀 여부($\chi^2=15.339^{**}$)						
자녀 있음	6.3	14.7	71.2	5.7	2.2	(1,276) 100.0
자녀 없음	6.0	15.5	66.8	6.9	4.7	(1,224) 100.0

구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합계
취업 여부($\chi^2=6.171$)						
취업	6.2	14.9	68.3	6.8	3.8	(1,940) 100.0
비취업	5.7	15.5	71.6	4.8	2.3	(560) 100.0
가구소득($\chi^2=31.123^*$)						
19,999크로나 or lower	6.2	14.4	71.6	4.1	3.7	(437) 100.0
20,000~29,999크로나	6.1	16.1	68.2	7.1	2.5	(553) 100.0
30,000~44,999크로나	4.6	17.1	67.4	7.1	3.8	(651) 100.0
45,000~64,999크로나	5.3	13.4	72.3	5.6	3.4	(589) 100.0
65,000~75,000크로나	11.5	13.0	63.3	8.1	4.1	(270) 100.0
가구 유형($\chi^2=51.983^{***}$)						
무자녀 미혼	6.7	16.0	67.9	5.3	4.0	(655) 100.0
유자녀 미혼	2.5	11.5	82.8	2.5	0.8	(122) 100.0
무자녀 기혼 ¹⁾	5.1	14.9	65.6	8.8	5.6	(56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8.2	18.1	62.7	8.0	3.1	(426)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5.8	13.2	74.2	4.9	1.9	(728)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 일상적 가사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에 대한 성역할 인식의 경우에도 한국과 스웨덴 조사 결과 모두 남성과 여성 모두의 역할이라는 응답이 각각 76.1%, 71.4%로 가장 많았다. 일상적 가사가 남성의 역할이라는 응답(‘확실히 남성’ 또는 ‘대체로 남성’ 응답) 비율은 스웨덴 3.9%, 한국 1.1%

로 나타나 스웨덴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일상적 가사가 여성의 역할이라는 응답(‘확실히 여성’ 또는 ‘대체로 여성’ 응답)은 스웨덴 24.7%, 한국 22.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국가 사이에 일상적 가사에 대한 성역할 인식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스웨덴 조사 결과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나이가 적을수록 일상적 가사는 여성의 역할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혼인상태와 관련해서는 미혼인 사람들이 다른 집단(동거/사실혼, 법률혼, 이혼/별거/사별)보다 일상적 가사가 여성의 역할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면, 취업한 사람들은 미취업인 사람들보다 일상적 가사가 여성의 역할이라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9〉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에 대한 성역할 인식

(단위: %, 명)

구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합계
한국	0.2	0.9	76.1	19.6	3.2	(2,500) 100.0
스웨덴	1.1	2.8	71.4	17.4	7.3	(2,500) 100.0
성별($\chi^2=51.305^{***}$)						
남자	1.9	4.4	67.5	19.1	7.0	(1,288) 100.0
여자	0.2	1.1	75.5	15.6	7.6	(1,212) 100.0
연령($\chi^2=33.110^*$)						
20~24세	1.2	3.7	60.1	24.2	10.7	(326) 100.0
25~29세	1.4	2.7	71.6	17.2	7.1	(437) 100.0
30~34세	1.3	2.4	70.8	18.5	6.9	(535) 100.0
35~39세	1.5	2.0	74.2	14.9	7.3	(395) 100.0
40~44세	0.5	2.7	75.3	15.6	5.9	(441) 100.0
45~49세	0.8	3.6	74.3	14.8	6.6	(366) 100.0

구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합계
지역($\chi^2=34.766^{**}$)	.	.	.	.	.	.
대도시	1.2	3.7	68.0	20.2	6.8	(882) 100.0
대도시의 외곽	1.9	3.5	66.3	18.8	9.6	(480) 100.0
중소도시	0.6	1.5	77.0	14.6	6.3	(810) 100.0
농어촌	0.9	2.4	74.1	14.9	7.6	(328) 100.0
교육($\chi^2=25.188$)	.	.	.	.	.	.
ISCED 1 or 2	2.2	4.9	62.8	20.2	9.8	(183) 100.0
ISCED 3	1.1	2.6	71.2	18.2	6.9	(1,151) 100.0
ISCED 4 or 5	1.5	2.5	69.2	18.5	8.3	(520) 100.0
ISCED 6	0.2	2.8	78.3	13.2	5.5	(433) 100.0
ISCED 7 or 8	0.9	2.8	71.4	16.4	8.5	(213) 100.0
혼인상태($\chi^2=19.534$)	.	.	.	.	.	.
미혼	1.2	2.6	74.4	15.1	6.8	(777) 100.0
동거/사실혼	1.0	2.2	70.4	19.6	6.7	(889) 100.0
법률혼	0.6	4.1	69.3	17.5	8.4	(616) 100.0
이혼/별거/사별	2.8	2.3	70.6	16.5	7.8	(218) 100.0
자녀 여부($\chi^2=5.664$)	.	.	.	.	.	.
자녀 있음	0.8	3.1	72.3	17.4	6.5	(1,276) 100.0
자녀 없음	1.5	2.5	70.5	17.4	8.1	(1,224) 100.0
취업 여부($\chi^2=9.975^*$)	.	.	.	.	.	.
취업	1.2	2.8	70.0	18.5	7.5	(1,940) 100.0
비취업	0.7	2.9	76.3	13.6	6.6	(560) 100.0
가구소득($\chi^2=23.553$)	.	.	.	.	.	.
19,999크로나 or lower	1.6	2.5	75.3	13.0	7.6	(437) 100.0
20,000~29,999크로나	1.3	2.7	70.9	18.3	6.9	(553) 100.0
30,000~44,999크로나	1.2	3.4	71.7	17.2	6.5	(651) 100.0

구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합계
45,000~64,999크로나	0.3	2.2	71.3	19.7	6.5	(589) 100.0
65,000~75,000크로나	1.5	3.3	65.6	18.1	11.5	(270) 100.0
가구 유형($\chi^2=22.728$)						
무자녀 미혼	1.4	2.3	73.0	15.9	7.5	(655) 100.0
유자녀 미혼	0.0	4.1	82.0	10.7	3.3	(122) 100.0
무자녀 기혼 ¹⁾	1.6	2.8	67.7	19.2	8.8	(56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0.5	3.8	68.8	19.2	7.7	(426)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1.1	2.5	72.7	17.4	6.3	(728)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 자녀 양육

어린 자녀 양육에 대한 성역할 인식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스웨덴에서의 조사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두 국가에서 공통으로 양육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역할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지만, 한국은 그 비율이 77.4%였고, 스웨덴은 67.0%였다. 즉, 어린 자녀 양육은 남녀가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이 한국 시민들 사이에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이 남성의 역할이라는 응답(‘확실히 남성’ 또는 ‘대체로 남성’ 응답) 비율은 스웨덴과 한국이 각각 3.1%와 1.3%였다. 한편 여성의 역할이라는 응답(‘확실히 여성’ 또는 ‘대체로 여성’ 응답) 비율은 스웨덴 29.9%, 한국 21.4%로 집계되었다. 적어도 40대 이하 인구 집단에서 자녀 양육에 관하여 한국 시민들이 스웨덴보다 더 평등한 성역할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조사 결과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대도시나 대도시의 외곽에 거주할수록, 미혼이 아닐수록, 미취업보다는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린 자녀의 양육은 여성의 역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표 5-10〉 어린 자녀 양육에 대한 성역할 인식

(단위: %, 명)

구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합계
한국	0.3	1.0	77.4	18.0	3.4	(2,500) 100.0
스웨덴	1.1	2.0	67.0	22.5	7.4	(2,500) 100.0
성별($\chi^2=44.217^{***}$)						
남자	1.7	3.3	63.4	24.7	6.9	(1,288) 100.0
여자	0.4	0.6	70.9	20.2	7.9	(1,212) 100.0
연령($\chi^2=21.954$)						
20~24세	1.2	4.6	62.0	24.8	7.4	(326) 100.0
25~29세	1.1	1.4	67.7	22.2	7.6	(437) 100.0
30~34세	1.1	2.1	65.8	23.9	7.1	(535) 100.0
35~39세	1.3	1.5	70.6	19.7	6.8	(395) 100.0
40~44세	0.7	1.1	69.4	21.8	7.0	(441) 100.0
45~49세	1.1	1.6	65.8	22.7	8.7	(366) 100.0
지역($\chi^2=15.501$)						
대도시	1.2	2.7	64.9	23.4	7.8	(882) 100.0
대도시의 외곽	1.0	2.3	63.3	24.8	8.5	(480) 100.0
중소도시	0.9	1.2	69.8	21.6	6.5	(810) 100.0
농어촌	1.2	1.2	71.6	19.2	6.7	(328) 100.0
교육						
ISCED 1 or 2	2.2	5.5	62.3	21.9	8.2	(183) 100.0
ISCED 3	1.2	2.1	67.2	22.7	6.9	(1,151) 100.0
ISCED 4 or 5	1.0	1.2	63.5	25.6	8.8	(520) 100.0

구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합계
ISCED 6	0.2	1.6	72.1	20.6	5.5	(433) 100.0
ISCED 7 or 8	1.4	0.9	69.0	18.8	9.9	(213) 100.0
혼인상태($\chi^2=17.593$)						
미혼	1.2	1.5	70.7	19.9	6.7	(777) 100.0
동거/사실혼	0.9	1.7	67.3	23.1	7.1	(889) 100.0
법률혼	1.0	2.4	62.8	26.0	7.8	(616) 100.0
이혼/별거/사별	1.8	3.2	65.1	19.7	10.1	(218) 100.0
자녀 여부($\chi^2=1.480$)						
자녀 있음	0.9	2.0	67.3	22.7	7.1	(1,276) 100.0
자녀 없음	1.3	2.0	66.7	22.3	7.7	(1,224) 100.0
취업 여부($\chi^2=6.606$)						
취업	1.1	2.1	65.9	23.0	7.9	(1,940) 100.0
비취업	1.1	1.4	71.1	20.7	5.7	(560) 100.0
가구소득($\chi^2=27.956^*$)						
19,999코로나 or lower	1.8	2.3	71.9	17.6	6.4	(437) 100.0
20,000~29,999코로나	1.3	2.0	63.8	25.0	8.0	(553) 100.0
30,000~44,999코로나	0.9	2.5	67.1	22.6	6.9	(651) 100.0
45,000~64,999코로나	0.5	0.8	68.8	23.6	6.3	(589) 100.0
65,000~75,000코로나	1.1	2.6	61.9	23.0	11.5	(270) 100.0
가구 유형 ($\chi^2=21.806$)						
무자녀 미혼	1.4	1.5	69.2	20.8	7.2	(655) 100.0
유자녀 미혼	0.0	1.6	78.7	15.6	4.1	(122) 100.0
무자녀 기혼 ¹⁾	1.2	2.5	64.0	24.1	8.3	(56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1.6	3.1	64.3	23.9	7.0	(426)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0.5	1.4	67.2	23.2	7.7	(728) 100.0

주: * p<0.05, ** p<0.01, *** p<0.001.

-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일과 가사 및 양육 병행의 어려움

일하면서 동시에 가사와 양육을 해야 할 때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이에 관한 문항은 함께 사는 파트너 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만 응답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 응답자 가운데 23.2%가 일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어려운 편이다’ 또는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44.0%는 보통이라고 했으며, 32.9%는 어렵지 않다(‘전혀 어렵지 않다’ 또는 ‘어렵지 않은 편이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과반인 57.6%가 일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반면, 보통이라는 의견과 어렵지 않다는 의견은 각각 27.6%와 14.8%에 그쳤다. 양국 사이의 차이는 한국 사람들보다 스웨덴 사람들은 일하면서 가사와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적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스웨덴 조사 결과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남성(19.7%)보다 여성(26.4%)이 더 높았다. 스웨덴에서도 여성이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어렵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더불어 자녀가 있거나 취업 상태에 있는 응답자 사이에서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이 어렵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았다.

〈표 5-11〉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합계
한국	2.5	12.3	27.6	43.5	14.1	(1,430) 100.0
스웨덴	9.2	23.7	44.0	20.7	2.5	(1,505) 100.0
성별($\chi^2=10.717^*$)						
남자	10.0	25.0	45.3	17.9	1.8	(741) 100.0
여자	8.5	22.4	42.7	23.3	3.1	(764) 100.0
연령($\chi^2=35.110^*$)						
20~24세	13.5	31.6	42.6	11.6	0.6	(155) 100.0
25~29세	9.7	26.7	42.1	20.2	1.2	(247) 100.0
30~34세	8.6	19.8	48.2	21.0	2.4	(338) 100.0
35~39세	8.2	20.8	41.6	25.1	4.3	(255) 100.0
40~44세	7.7	25.4	40.4	23.7	2.8	(287) 100.0
45~49세	9.9	21.5	48.0	17.9	2.7	(223) 100.0
지역($\chi^2=14.674$)						
대도시	9.3	24.9	43.5	19.9	2.3	(558) 100.0
대도시의 외곽	11.7	21.5	41.6	22.1	3.0	(298) 100.0
중소도시	9.6	21.3	46.3	21.3	1.6	(428) 100.0
농어촌	5.0	28.1	43.9	19.5	3.6	(221) 100.0
교육($\chi^2=54.232^{***}$)						
ISCED 1 or 2	20.2	26.9	38.5	10.6	3.8	(104) 100.0
ISCED 3	9.5	27.4	43.7	17.2	2.2	(645) 100.0
ISCED 4 or 5	9.2	19.7	47.1	22.5	1.5	(325) 100.0
ISCED 6	4.3	20.1	43.4	28.3	3.9	(279) 100.0
ISCED 7 or 8	9.9	20.4	43.4	24.3	2.0	(152) 100.0
혼인상태($\chi^2=5.791$)						
동거/사실혼	10.6	23.8	42.9	20.6	2.1	(889) 100.0

구분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합계
법률혼	7.3	23.4	45.6	20.8	2.9	(616) 100.0
자녀 여부($\chi^2=27.885^{***}$)						
자녀 있음	7.7	20.9	45.8	22.8	2.8	(1,007) 100.0
자녀 없음	12.2	29.3	40.4	16.3	1.8	(498) 100.0
취업 여부($\chi^2=2.524$)						
취업	9.5	23.1	43.7	21.2	2.5	(1,225) 100.0
비취업	8.2	26.1	45.4	18.2	2.1	(280) 100.0
가구소득($\chi^2=22.593$)						
19,999코로나 or lower	11.8	27.7	41.2	16.0	3.4	(119) 100.0
20,000~29,999코로나	9.0	25.2	45.7	19.0	1.0	(210) 100.0
30,000~44,999코로나	8.7	25.5	43.1	21.2	1.6	(439) 100.0
45,000~64,999코로나	7.7	19.9	46.0	23.4	3.1	(522) 100.0
65,000~75,000코로나	13.0	25.1	40.9	17.2	3.7	(215) 100.0
가구 유형($\chi^2=33.801^{***}$)						
무자녀 기혼 ¹⁾	12.2	29.3	40.4	16.3	1.8	(498)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9.0	23.0	46.0	19.3	2.6	(378)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7.0	19.6	45.6	25.0	2.9	(629)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최근 인구 변화에 대한 인식

최근 인구 변화와 관련하여 스웨덴과 한국 시민들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네 가지 항목에 관한 동의 정도를 물었다. 우선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라는 항목에 대해 스웨덴에서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

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16.8%에 그쳤지만, 한국에서 그 비율은 79.2%로 나타나 두 국가 사이에 차이는 62.4%p로 매우 컸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자국의 출산율 현상에 대해 두 나라 시민들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항목에 대해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스웨덴 22.0%, 한국 35.8%로 나타났다. 스웨덴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시민이 출산율 감소의 영향이 개인적으로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견된 것이다.

세 번째로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물었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 응답자 가운데 40.4%, 한국 응답자 가운데 75.6%가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다고 답하여 두 국가 사이에 35.2%p라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최근 한국의 출산율 감소 속도가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점이 양국 사이의 큰 차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스웨덴 응답자 중 26.1%, 한국 응답자 중 71.7%가 정부의 노력에 부정적인 의견(‘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을 표해 그 차이는 45.6%였다. 이러한 결과로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에 대한 양국 시민의 시각이 매우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스웨덴은 출산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을 도입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정부의 출산율 변화 대응에 대한 한국 시민의 만족도나 효능감이 매우 낮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12〉 최근 인구 변화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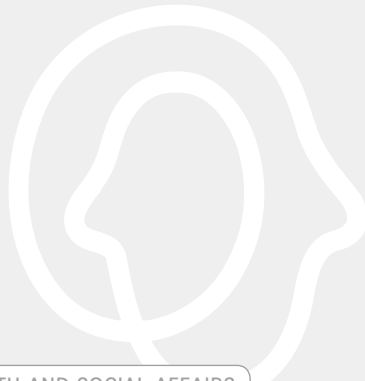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계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						
스웨덴	2.9	13.9	46.3	28.8	8.1	(2,500) 100.0
	(16.8)		(46.3)	(36.9)		
한국	44.7	34.5	13.0	6.0	1.8	(2,500) 100.0
	(79.2)		(13.0)	(7.8)		
출산을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	14.0	19.7	44.4	16.3	5.7	(2,500) 100.0
	(33.7)		(44.4)	(22.0)		
한국	10.3	20.5	33.4	23.9	11.9	(2,500) 100.0
	(30.8)		(33.4)	(35.8)		
출산을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	5.4	11.5	42.7	29.1	11.3	(2,500) 100.0
	(16.9)		(42.7)	(40.4)		
한국	3.3	5.5	15.6	38.4	37.2	(2,500) 100.0
	(8.8)		(15.6)	(75.6)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스웨덴	9.8	16.3	52.8	14.8	6.2	(2,500) 100.0
	(26.1)		(52.8)	(21.0)		
한국	43.5	28.2	20.6	6.3	1.4	(2,500) 100.0
	(71.7)		(20.6)	(7.7)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정책적 함의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1. 스웨덴 인구정책의 발전과 동향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930년대에 출산율 감소를 경험한 스웨덴은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시작하였다. 당시 알바와 군나르 뮈르달 부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들은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스웨덴은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였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 유급 출산휴가, 피임기구 판매 허용, 낙태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1960년대부터는 기존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일과 가정에서 성평등을 높이는 정책들이 폭넓게 도입되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고 지위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때 부모휴가제도가 확대되었고, 여성과 남성 모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공공 보육서비스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동시에 가정 내 성역할 평등을 높일 수 있었다.

최근까지도 스웨덴에서 가족정책은 인구 문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편적이고 관대한 가족정책은 부모와 아이의 삶의 질을 높이

고,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함으로써 결혼과 출산 결정의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위와 같은 정책들은 스웨덴의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스웨덴에서도 출산율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웨덴에서도 그 원인을 찾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 스웨덴의 인구 변화와 동향

역사적으로 스웨덴의 인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18세기 200만 명 이하였던 스웨덴 인구는 2023년 현재 1,055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인구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대 수명의 증가와 함께 국제적인 이민자 증가가 꼽힌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스웨덴에는 일자리를 찾아온 이민자와 난민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스웨덴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였다. 현재 스웨덴 인구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이주 배경 가정에 속한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1930년대까지 감소하였지만,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20세기 중반 이후 안정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6까지 떨어진 상태다.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불안정한 일자리의 확대와 이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령화 또한 최근 스웨덴 인구구조 변화에 핵심적인 요인이고, 이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스웨덴의 기대 수명은 여성 84.9세, 남성 81.6세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이다. 이와 같은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의료 및 복지 시스템에 대한 부담 증가, 사회적 비용 확대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의 인구구조는 출산을 감소, 이민자 증가, 고령화라는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스웨덴의 인구 관련 사회정책

가. 노동시장정책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과 인력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했던 배경은 높은 수준의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교섭 적용률 그리고 연대임금제도를 바탕으로 한 중앙집중적이고 포괄적인 국가와 산업 부문 단위에서의 단체교섭이 제도화되었다는 점이다.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된 점도 스웨덴 노동시장정책의 특징이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실업보험제도는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1년 이상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제공한다. 자영업자도 폐업하게 되면 피고용자들과 같은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안정적이고 관대한 소득보장은 실업자들이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으로 작동한다.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 공공부문 고용 창출, 임금보조금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스웨덴의 높은 수준

의 투자는 수십 년에 걸쳐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평가가 있다.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이민자들의 정착과 노동시장 참여를 돕기 위해서도 활용된다. 이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스웨덴어 교육, 직업훈련, 시민 교육 등을 제공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득보장을 위한 수당이 지급된다.

나. 이민자 정책

스웨덴의 이민자 정책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하면서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해 활용되기도 하고,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해오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웨덴은 산업 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이민자와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1970년대까지 경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북유럽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부터 대규모로 이민자가 스웨덴으로 몰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스웨덴 노동자와 평등하게 처우했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시장의 통합과 불평등 완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에 발생한 세계적인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스웨덴 경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동을 위한 이민자 규모도 크게 줄었다. 유럽연합 출범으로 인해 유럽 내 노동이민이 자유로워졌지만, 스웨덴은 고숙련 노동자의 이민은 장려하는 반면, 비숙련 노동자의 이민은 제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에도 스웨덴은 난민 수용에 대한 관대한 정책은 꾸준히 유지되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전쟁과 정치적 박해로 인해 자국을 떠나 스웨덴으로 이주하는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난

민 수가 급증하면서 1980년대에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난민 수용 관련 정책이 엄격해졌다. 이러한 기조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이민자가 유입되기 시작했던 초기 스웨덴은 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며 다문화주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한 이후부터 스웨덴 정부는 이민자들에게 스웨덴어 교육을 강조하고, 사회통합에 중점을 둔 정책과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정책들도 이민자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웨덴의 문화와 제도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다. 가족정책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가족을 위한 현금 급여와 사회서비스에서 높은 수준의 공공지출을 유지하고,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GDP 대비 가족정책을 위한 공공지출 규모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 부모 모두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세기 중반부터 각종 현금 급여와 공공 보육서비스를 확대했다.

스웨덴의 지방정부는 가족을 위한 주요 사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유아부터 노인에게까지 폭넓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사회서비스가 완전 무상은 아니며 가족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이용자 부담금을 내야 한다.

가족을 위한 현금 급여로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이 가장 대표적이다. 부모는 자녀 한 명당 최대 480일 동안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학생이나 실업자도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스웨덴 정책의 특징 중 하나다. 아동수당의 경우 자녀가 16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된다.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아동수당과 더불어 대가족보조금도 지급된다.

라. 노후 소득보장

스웨덴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는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다. 스웨덴의 현행 공적연금 제도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의 이상을 가장 잘 구현한 연금제도로 다른 국가들에서 시행해온 다양한 연금제도들에 비해 노인 빈곤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연금 모델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다른 국가들의 공적연금에 비해서 높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인구 고령화와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스웨덴의 연금 개혁의 성과이다. 이 개혁을 통해 소득연계 연금의 체계를 확정 급여형에서 확정 기여형으로 바꾸었고, 급여 산정 방식도 생애 소득에 기반한 계산식으로 조정하였으며, 기대 수명과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조정되는 장치를 도입하였다.

연금 개혁 이후 현재 스웨덴의 공적연금은 저소득 은퇴자를 위한 보장 연금, 소득 수준에 따라 정률로 납부한 기여금을 바탕으로 한 소득연금, 개인이 연금 펀드를 선택하여 추가로 적립하는 프리미엄 연금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체계 안에서 스웨덴의 공적연금 재정은 안정적으로 GDP 대비 7%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990년대 60% 중반에서 2020년 40% 중반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로 발생한 노후 소득 감소를 메우기 위해 직장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스웨덴의 연금 개혁은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연금제도 안에서도 양성평등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

결혼 의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스웨덴 응답자 중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비율은 절반 정도로 나타나 한국보다 조금 낮았고, 네 명 중 한 명은 아직 결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한국과 비교해 스웨덴 사람들이 결혼을 좀 더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여기고,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출산 의향에 있어서는 스웨덴 응답자 43.2%가 자녀를 낳겠다고 응답해 한국보다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평균 자녀 계획 수 또한 2.35명으로 한국(1.74명)을 크게 웃돌았다. 결혼 의향에 대한 결과와 이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스웨덴에서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갖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없는 사람보다 이미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낳겠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가족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을 살펴본 결과, 스웨덴 사람들은 본인의 건강, 배우자의 건강, 주거 여건 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비교해보면 경력 단절, 미래의 불안, 정부 지원에 대한 우려 등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고려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스웨덴의 관대하고 보편적으로 구축된 사회안전망과 평등하고 효과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영향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출산이 삶에 미치는 변화와 관련하여 스웨덴 응답자 삼 분의 이 정도가 출산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고 답했지만, 이는 한국 응답자 비율(92.7%)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출산으로 인해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 의견도 64.9%에 달했고,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는 의견도 44.8%로 나타나 상당수의 스웨덴 사람들이 출산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과 관련하여 양육, 가사,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 모두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60.0%를 넘게 집계되어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강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자녀 양육이 여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은 스웨덴(29.9%)이 한국(21.4%)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산율 감소가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 시민들은 한국 시민들보다 출산율 감소의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또한, 정부의 대응 노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스웨덴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제2절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살펴본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문제에 정책적 대응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영역의 다양한 정책들이 정합성 있게 도입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스웨덴은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로 꼽힌다. 또한, OECD 회원국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명시적으로 인구정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인구정책이라는 정책 분야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만 ‘저출산 대응 정책’이라는 표현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경향은 스웨덴뿐 아니라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영역의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국내에는 스웨덴의 높은 출산율 유지가 보편적이고 관대한 가족정책 덕분이라고 이해하고, 그래서 한국도 가족정책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족정책은 그러한 성과에 기여하는 한 가지 요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스웨덴은 가족정책은 물론 노동자의 삶의 질을 평등하게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정책을 오랜 기간 펼쳤고,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육아 부담과 상관없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 제도를 통한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아무리 가족정책을 확대하더라도 다른 영역의 제도가 출산 의향을 꺾거나 억제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면 가족정책 확대에 의한 출산율 제고 효과는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도 특정 영역의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어 파편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접근을 탈피하고,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제도를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출산율 문제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 간 정합성 제고 방안과 사회구조적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스웨덴 사례로부터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평등한 이민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은 오랜 기간에 걸쳐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한국 역시 이미 이주 노동자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는 산업부문이 많고,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면서 향후 노동력을 위해 더 많은 이민자의 유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이민자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한국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이민자들을 최대한 평등하게 대우했고, 그들의 사회통합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직업훈련 그리고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웨덴에서는 이민자와 기존 시민들 사이의 갈등이 종종 불거지고,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한 이민자들은 범죄조직을 구성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스웨덴의 이민자 정책은 실패한 것일까? 만약 스웨덴이 이민자를 좀 더 차별하고, 보편적 복지제도에서 배제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없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사회갈등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포용과 평등을 지향하는 이민자 정책이 최근 문제를 촉발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스웨덴의 인종 갈등이나 종교 갈등은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시민들이 이민자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고자 한다면 스웨덴이 보여주는 것처럼 포용적이고 평등한 이민자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최근 스웨덴에서 발생하는 이민자 관련 문제들이 향후 한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추가적인 고민과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결혼과 상관없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구조와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출산율 반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 비경제적 부담은 매우 크다. 앞서 살펴본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스웨덴과 비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 부담을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자녀를 키우는 부담이 줄어들어야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 의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원하는 상대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의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만듦으로써 적정 출산율을 유지해왔다. 더욱이 전통적인 성별 분업에 기초한 가족 모델이 아닌 새로운 가족 모델과 평등한 성역할을 지원했다는 점은 단순히 가족정책을 확대한 것 이상의 의미를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 역시 단순히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현금과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일과 가족생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김은지·이상정·유해미·박미진·최진희·성경·김수정·김나영·유민상·박미선·김수진·변수정·이주연·박신아·조숙인·김영민·오수미. (2023).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방안 연구: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지표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통계청. (2024). 2023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03호 출생통계.
- 통계청. (2024. 09. 23.).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7&act=view&list_no=432825
- Adamson, G. (2020). Migrants and crime in Sweden in the twenty-first century. *Society*, 57(1), 9-21.
- Alba, R. D., & Foner, N. (2015). *Strangers no more: Immigration and the challenges of integration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Åmark, K. (2011). *Att bo granne med ondskan: Sveriges förhållande till nazismen, Nazityskland och Förintelsen*. Bonniers Förlag.
- Anderson, K. M. (2015). *Occupational pensions in Sweden*. Friedrich-Ebert-Stiftung.
- Andersson, G. (2008). A review of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he 'highest-low' fertility of Sweden.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6, 89-102.
- Andersson, G., Hoem, J. M., & Duvander, A.-Z. (2006). Social differentials in speed-premium effects in childbearing in Sweden. *Demographic Research*, 14(4), 51-70.
- Anelli, M. & N. Balbo. (2021). Fertility Drain or Fertility Gain_Emigration and Fertility During the Great Recession in Italy. *Demography*,

58(2), 631-654.

Arbetsförmedlingen. (2024). Unemployment benefit. <https://arbetsfor-medlingen.se/other-languages/english-engelska/unemployed---what-happens-now/unemployment-benefit>

Bäckman, O., & Nilsson, A. (2016). Long-term consequences of being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as a young adult: Stability and change in three Swedish birth cohorts. *European Societies*, 18(2), 136-157. <https://doi.org/10.1080/14616696.2016.1153699>

Becker, G.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Bengtsson, M. (2012). *Transformation of labour market policies in the Nordic countries: towards a regime shift in Sweden and Denmark*. In Philadelphia: ILERA World Congress.

Bengtsson, T., Lundh, C., & Scott, K. (2005). From Boom to Bust. The Economic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Post War Sweden. In Zimmermann, K (Ed.). *European Migration: What Do We Know?* (pp. 15-58). Oxford University Press.

Bergenheim, S., & Klockar Linder, M. (2020). Pursuing pronatalism: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nd population and family policy in Sweden and Finland, 1940s-1950s. *The History of the Family*, 25(4), 671-703.

Bevelander, P. (2011). The employment integration of resettled refugees, asylum claimants, and family reunion migrants in Sweden. *Refugee Survey Quarterly*, 30(1), 22-43.

Billingsley, S., & Ferrarini, T. (2014). Family policy and fertility intentions in 21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6(2), 428-445.

- Billingsley, S., Neyer, G., & Wesolowski, K. (2022). Social investment policies and childbearing across 20 countries: Longitudinal and micro-level analyse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8(5), 951-974.
- Björklund, A. (2006). Does family policy affect fertility? Lessons from Swede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9(1), 3-24.
- Borevi, K., (2012). Sweden: The flagship of multiculturalism. In Brochmann, G., Hagelund, A., Borevi, K., Jønsson, H. V., Petersen, K., & Borevi, K (Ed.). *Immigration policy and the Scandinavian welfare state 1945-2010* (pp. 25-96). Palgrave Macmillan.
- Brinton, M. C., & Oh, E. (2019). Babies, work, or both? Highly educated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 in East Asi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5(1), 105-140.
- Byström, M., & Frohnert, P. (2017). *Invandringens historia: Från 'folkhemmet' til dagens Sverige*. Delegationen för migrationsstudier (Delmi).
- Byun, Y. H. (2024). Welfare expansion without inequality reduction: Institutional explanation of old-age poverty in Korea. *Journal of Social Policy*, 53(2), 491-511.
- Calmfors, L., Forslund, A., & Hemström, M. (2002). *Vad vet vi om den svenska arbetsmarknadspolitikens sysselsättningseffekter?* (No. 2002: 8). IFAU-Institute for Evaluation of Labour Market and Education Policy.
- Calmfors, L., Forslund, A., & Hemström, M. (2002). *Vad vet vi om den svenska arbetsmarknadspolitikens sysselsättningseffekter?* (No. 2002: 8). IFAU-Institute for Evaluation of Labour Market and Education Policy.
- Comolli, C. L., Neyer, G., Andersson, G., Dommermuth, L., Fallesen, P., Jalovaara, M., Jönsson, A. K., Kolk, M., & Lappegård, T. (2021).

- Beyond the economic gaze: Childbearing during and after recessions in the Nordic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7(2), 473-520. <https://doi.org/10.1007/s10680-020-09570-0>
- Daly, M. (2015). *Family Policy*. In Wright, J. D. (2nd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Elsevier.
- Danzer, L. & L. Zyska. (2023). Pensions and Fertility_Microeconomic Evidence.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5(2), 126-165.
- Desiderio, R. (2020). *The impact of international migration on fertility: an empirical study*. Global Knowledge Partnership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s://coilink.org/20.500.12592/k47z8t>
- Dribe, M., Eriksson, B., & Helgertz, J. (2023). From Sweden to America: Migrant selection in the transatlantic migration, 1890-1910. *European Review of Economic History*, 27(1), 24-44. <https://doi.org/10.1093/ereh/heac007>
- Dribe, M., Olsson, M., & Svensson, P. (2015). *Famines in the Nordic countries, AD 536-1875*. (Lund Papers in Economic History. General Issues; No. 138). Department of Economic History, Lund University. <http://lup.lub.lu.se/record/8001054>
- Duvander, A. Z., & Ferrarini, T. (2013). *Sweden's family policy under change: Past, present, future* (pp. 3-11). Friedrich-Ebert-Stiftung, Western Europe/North America.
- Duvander, A. Z., Lappegard, T., & Johansson, M. (2020). Impact of a reform towards shared parental leave on continued fertility in Norway and Sweden.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9, 1205-1229.

- Duvander, A., & M. Johansson. (2012). What are the effects of reforms promoting fathers' parental leave us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2(3), 319-330.
- Einhorn, E. S., & Logue, J. (2003). *Modern welfare states: Scandinavian politics and policy in the global age* (2nd ed.). Bloomsbury Publishing USA.
- Ellingsaeter, A. & A. Leira. (2006). *Politicising parenthood in Scandinavia. Gender relations in welfare states*. Bristol: Policy Press.
- Ellingsaeter, A. (2007). 'Old' and 'new' politics of time to care: Three Norwegian reform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7(1), 49-60.
- Esping-Andersen, G. (2009).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welfare states to women's new roles*. Polity.
- ETUI. (2024). *National Industrial Relations: Sweden*. <https://www.worker-participation.eu/national-industrial-relations/countries/sweden>
- Etzemüller, T. (2011). The population discourse: A transnational matrix. The case of Germany and Sweden. *Historical Social Research/Historische Sozialforschung*, 101-119.
- Evan, T., P. Vozárová. (2017). Influence of women's workforce participation and pensions on total fertility rate a theoretical and econometric study. *Eurasian Economic Review*, 8(1), 51-72.
- Försäkringskassan. (2024). *Social insurance authority of Sweden*. <https://www.forsakringskassan.se/english/moving-to-working-studying-or-newly-arrived-in-sweden/social-insurance-in-sweden>
- Frejka, T., S. Gietel-Basten. (2016) Fertility and family polic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fter 1990. *Comparative Population Studies*, 41(1), 3-56.

- Girsberger, E. M., Hassani-Nezhad, L., Karunanethy, K., & Lalive, R. (2023). Mothers at work: How mandating a short maternity leave affects work and fertility. *Labour Economics*, 84, 1-26.
- Greve, B. (2018). At the heart of the Nordic occupational welfare model: Occupational welfare trajectories in Sweden and Denmark.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52(2), 508-518.
- Hammar, T. (1964). *Sverige åt svenskarna: Invandringspolitik, utlänning skontroll och asylrätt 1900-1932* [Doktorsavhandling, Statsvetenskapliga institutionen, Stockholms universitet].
- Hansen, L. E. (2001). Jämlikhet och valfrihet: En studie av den svenska invandrapolitikens framväxt [Doktorsavhandling, Stockholms universitet].
- Hellstrand, J., Nisén, J., Miranda, V., Fallesen, P., Dommermuth, L., & Myrskylä, M. (2021). Not just later, but fewer: Novel trends in cohort fertility in the Nordic countries. *Demography*, 58(4), 1373-1399. <https://doi.org/10.1215/00703370-9373618>
- Hirdman, Y. (1994). Social engineering and the woman question: Sweden in the thirties.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44(1), 73-94.
- Hiriscu, A. (2024). The Effect of Paid Maternity Leave on Fertility and Mothers' Labor Force Participation. *Journal of Labor Research*, 45, 350-384. <https://doi.org/10.1007/s12122-024-09361-0>
- Hoem, J. M. (1990). Social policy and recent fertility change in Swede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6(4), 735-748.
- Hoem, J. M. (1993). Public policy as the fuel of fertility: Effects of a policy reform on the pace of childbearing in Sweden in the 1980s. *Acta Sociologica*, 36(1), 19-31.
- Hoem, J. M. (2005). Why does Sweden have such high fertility?. *Demographic Research*, 13, 559-572.

- Human Fertility Database. (2023). *HFD country*. <https://www.humanfertility.org/Country/Country?cntr=SWE>
- Informationsverige.se. (2024). Society for elderly people. <https://www.informationsverige.se/en/om-sverige/att-aldras-i-sverige/samhallet-for-aldre.html>
- Inspektionen för arbetslöshetsförsäkringen. (2024). *Antal personer som fått arbetslöshetsersättning - ersättningstagare*. <https://www.iaf.se/statistikdatabasen/nya-statistikdatabasen/antal-personer-som-fatt-arbetsloshetsersattning---ersattningstagare/>
- Knudsen, T., & Rothstein, B. (1994). State building in Scandinavia. *Comparative politics*, 26(2), 203-220.
- Korpi, W., & Palme, J.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5), 661-687.
- Lee, E. (1966). A Theory of Migration. *Demography*, 3(1), 47-57.
- Leibenstein, H. (1957). *Economic Backwardness and Economic Growth: Studies in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Leira, A. (2006). Parenthood change and policy reform in Scandinavia, 1970s-2000s. In *Politicising Parenthood in Scandinavia* (pp. 27-52). Policy Press.
- Ljungberg, J. (1997). The impact of the great emigration on the Swedish economy. *Scandinavian Economic History Review*, 45(2), 159-189. <https://doi.org/10.1080/03585522.1997.10414666>
- Luci, A., & Thévenon, O. (2013). The Impact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Trends in Developed Countries. *Eur J Population*, 29, 387-416.

- Lundkvist, A. (2011). *Family policy paradoxes. Gender equality and labour market regulation in Sweden, 1930-2010*. Bristol: Policy Press.
- Lundqvist, Å. (2015). Activating women in the Swedish model.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22(1), 111-132.
- Luthra, R., Soehl, T., & Waldinger, R. (2018). *Origins and destinations: The making of the second generation*. Russell Sage Foundation.
- Manhica, H., Lundin, A., & Danielsson, A-K. (2019).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and risk of alcohol use disorder: A nationwide register-linkage study with 485 839 Swedish youths. *BMJ Open*, 9(10), e032888. <https://doi.org/10.1136/bmjopen-2019-032888>
- Martin, J. P. (2015). Activation and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in OECD countries: stylised facts and evidence on their effectiveness. *IZA Journal of labor policy*, 4, 1-29.
- Miguel, B., V. Grandasegui, & M. Sanz. (2023). Growing Pains_Can Family Policies Revert the Decline of Fertility in Spain. *Social Inclusion* 11(1), 269-281.
-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The Swedish Old-Age Pension System: How the income pension, premium pension and guarantee pension work*.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 Mussino, E., Wilson, B., & Anderson, G. (2021). The Fertility of Immigrants From Low-Fertility Settings_Adaptation in the Quantum and Tempo of Childbearing. *Demography*, 58(6), 2169-2191.
- Myrdal, A. (1939). A programme for family security in Sweden. *International Labour Review*, 39(6), 723-763.

- Nelson, K., Fredriksson, D., Korpi, T., Korpi, W., Palme, J., & Sjöberg, O. (2020). The social policy indicators (SPIN) databas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9(3), 285–289.
- Nilsson, Å. (2004). *Efterkrigstidens invandring och utvandring*. OECD Data Explorer. Statistiska Centralbyrån. http://www.scb.se/statistik/_publikationer/be0701_1950i02_br_be51st0405.pdf
- Nordic Co-operation. (2024a). Unemployment benefit in Sweden. <https://www.norden.org/en/info-norden/unemployment-benefit-sweden>
- Nordic Co-operation. (2024b). Childcare in Sweden. <https://www.norden.org/en/info-norden/childcare-sweden>
- Nordic Co-operation. (2024c). Parental benefit in Sweden. <https://www.norden.org/en/info-norden/childcare-sweden>
- OECD. (2024a). *Fertility rates*.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fertility-rates.html?oecdcontrol-00b22b2429-var3=2075>
- OECD. (2024b). *Trade union density*. OECD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vis?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TUD_CBC%40DF_TUD&df\[ag\]=OECD.ELS.SAE&df\[vs\]=1.0&dq=..&pd=2000%2C&to\[TIME_PERIOD\]=false&vw=tb](https://data-explorer.oecd.org/vis?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TUD_CBC%40DF_TUD&df[ag]=OECD.ELS.SAE&df[vs]=1.0&dq=..&pd=2000%2C&to[TIME_PERIOD]=false&vw=tb)
- OECD. (2024c).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OECD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vis?tm=collective%20bargaining%20coverage&pg=0&snb=1&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TUD_CBC%40DF_CBC&df\[ag\]=OECD.ELS.SAE&df\[vs\]=1.0&dq=..&pd=2000%2C&to\[TIME_PERIOD\]=false&ly\[cl\]=TIME_PERIOD&ly\[rs\]=REF_AREA](https://data-explorer.oecd.org/vis?tm=collective%20bargaining%20coverage&pg=0&snb=1&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TUD_CBC%40DF_CBC&df[ag]=OECD.ELS.SAE&df[vs]=1.0&dq=..&pd=2000%2C&to[TIME_PERIOD]=false&ly[cl]=TIME_PERIOD&ly[rs]=REF_AREA)
- OECD. (2024d). *Infra-annual labour statistics*. [https://data-explorer.oecd.org/vis?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IALFS_INDIC&df\[ag\]=OECD.SDD.TPS&df\[vs\]=1.0&dq=UNE_LF_M...Y._T.Y_GE15..M&lom=LASTNPERIODS&lo=13&to\[TIME](https://data-explorer.oecd.org/vis?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IALFS_INDIC&df[ag]=OECD.SDD.TPS&df[vs]=1.0&dq=UNE_LF_M...Y._T.Y_GE15..M&lom=LASTNPERIODS&lo=13&to[TIME)

_PERIOD]=false

OECD. (2024e). *Public spending on labour markets*. OECD Data Explorer.

Public spending on labour markets. OECD. 2024e.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isseminateArchiveDMZ&df\[id\]=DF_DP_LIVE&df\[ag\]=OECD&df\[vs\]=&av=true&pd=2000%2C2022&dq=OAVG%2BUSA%2BGBR%2BTUR%2BCHE%2BSWE%2BESP%2BSVN%2BSVK%2BPRT%2BPOL%2BNOR%2BNZL%2BNLD%2BMEX%2BLUX%2BLTU%2BLVA%2BKOR%2BJPN%2BITA%2BISR%2BIRL%2BISL%2BHUN%2BGRC%2BDEU%2BFRA%2BFIN%2BST%2BDNK%2BCRI%2BCHL%2BCOL%2BCAN%2BBEL%2BAUT%2BAUS.PUBLMPEXP.TRAINING%2BTOT%2BINCENTIVE%2BSUPPEMP%2BJOBCREATION%2BPRERET%2BEMPINCENTIVE%2BOOWORKINCOME%2BPUBEMPSESV.PC_GDP.A&to\[TIME_PERIOD\]=false&vw=tb](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isseminateArchiveDMZ&df[id]=DF_DP_LIVE&df[ag]=OECD&df[vs]=&av=true&pd=2000%2C2022&dq=OAVG%2BUSA%2BGBR%2BTUR%2BCHE%2BSWE%2BESP%2BSVN%2BSVK%2BPRT%2BPOL%2BNOR%2BNZL%2BNLD%2BMEX%2BLUX%2BLTU%2BLVA%2BKOR%2BJPN%2BITA%2BISR%2BIRL%2BISL%2BHUN%2BGRC%2BDEU%2BFRA%2BFIN%2BST%2BDNK%2BCRI%2BCHL%2BCOL%2BCAN%2BBEL%2BAUT%2BAUS.PUBLMPEXP.TRAINING%2BTOT%2BINCENTIVE%2BSUPPEMP%2BJOBCREATION%2BPRERET%2BEMPINCENTIVE%2BOOWORKINCOME%2BPUBEMPSESV.PC_GDP.A&to[TIME_PERIOD]=false&vw=tb)

OECD. (2024f).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oecd-family-database.html>

OECD. (2024f).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oecd-family-database.html>

OECD. (2024g). *Public and private social expenditure*. OECD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vis?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SOCX_AGG%40DF_PUB_PRV&df\[ag\]=OECD.ELS.SPD&df\[vs\]=&pd=2003%2C2017&dq=.A..PT_B1GQ.ES10._T._T%2BT11%2BT111._Z&to\[TIME_PERIOD\]=false&vw=tb&lb=bt](https://data-explorer.oecd.org/vis?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SOCX_AGG%40DF_PUB_PRV&df[ag]=OECD.ELS.SPD&df[vs]=&pd=2003%2C2017&dq=.A..PT_B1GQ.ES10._T._T%2BT11%2BT111._Z&to[TIME_PERIOD]=false&vw=tb&lb=bt)

Ohlander, A. S. (2012). The invisible child? The struggle for a Social democratic family policy in Sweden, 1900-1960s. In G. Bock & P. Thane Editor (Eds.). *Maternity and Gender Policies: Women and the rise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s, 1880s-1950s* (1st

- ed., pp. 60-72). Routledge.
- Ohlsson-Wijk, S., & Andersson, G. (2022). Disentangling the Swedish fertility decline of the 2010s. *Demographic Research*, 47, 345-358.
- Österman, M., Palme, J., & Ruhs, M. (2024). Free movement versus European welfare states? Variations of the fiscal effects of EU migrants across welfare state regimes. *Politics & Society*, 52(3), 376-408.
- Palme, J. (1990). *Pension rights in welfare capitalism: The development of old-age pensions in 18 OECD countries 1930 to 1985*.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Stockholm University.
- Pensionsmyndigheten. (2024). *Förstå din pension*. <https://www.pensionsmyndigheten.se/forsta-din-pension.category.sa-fungerar-pensionen#pm-category-filter-last-card>
- Pignatti, C., Van, B. E. (2018. December). *Better together: Active and passive labor market policie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economies* (working paper no.37). ILO.
- Powell, B. (2015).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Market-Based Approaches, Social Science and Public Policy*. New York.
- Regeringskansliet. (2023, June 29). *Minister for migration to host round-table discussions on the situation of Ukrainians in Sweden [Press release]*. Ministry of Justice.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23/06/minister-for-migration-to-host-round-table-discussions-on-the-situation-of-ukrainians-in-sweden/>
- Riphahn, R. T., & Wijnck, F. (2017). Fertility effects of child benefit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0, 1135-1184.
- Rosenberg, G. (1995). Sweden and its immigrants: Policies versus opinions. *Daedalus*, 124(3), 209-218.

- Rossi, P., M. Godard. (2022). The Old-Age Security Motive for Fertility Evidence from the Extension of Social Pensions in Namibia.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4(4), 488-518.
- Runblom, H., & Norman, H. (1976). From Sweden to America: A history of the migration: A collective work of the Uppsala migration research project. Acta Universitatis Upsaliensis. <https://urn.kb.se/resolve?urn=urn:nbn:se:uu:diva-127786>
- Sköld, P. (2004). The birth of population statistics in Sweden. *The History of the Family*, 9(1), 5-21.
- Sobotka, T., A. Matysiak, Z. Brzozowska. (2019).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How effective are they*.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 Statistics Sweden. (2023). *400,000 more people in Sweden in 2030*. Statistikmyndigheten SCB. <https://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population/population-projections/population-projections/pong/statistical-news/the-future-population-of-sweden-2023-2070/>
- Statistics Sweden. (2024a). *Antal personer med utländsk eller svensk bakgrund (fin indelning) efter region, ålder och kön. År 2002-2023*. Statistikdatabasen. https://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sv/ssd/START_BE_BE0101_BE0101Q/UtlSvBakgFin/
- Statistics Sweden. (2024b). *Befolkningsutvecklingen i riket efter kön. År 1749-2023*. Statistikdatabasen. http://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sv/ssd/START_BE_BE0101_BE0101G/BefUtvKon1749/
- Statistics Sweden. (2024c). *Children per woman by country of birth 1970-2023 and projection 2024-2070*. Statistikmyndigheten SCB. <https://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population/population-projections/population-projections/pong/ta>

- bles-and-graphs/children-per-woman-by-country-of-birth-19702022-and-projection-20232070/
- Statistics Sweden. (2024d). *Life expectancy 1751-2023*. Statistikmyndigheten SCB. <https://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population/population-composition/population-statistics/pong/tables-and-graphs/births-and-deaths/life-expectancy-17512023/>
- Statistics Sweden. (2024e). *Lower fertility leads to a decreased number of school children in the future*. Statistikmyndigheten SCB. <https://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population/population-projections/population-projections/pong/statistical-news/the-future-population-of-sweden-2024-2070/>
- Statistics Sweden. (2024f). *Population aged 15-74 (LFS) by sex, age and labour status. Year 2001-2023*. Statistikdatabasen. http://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en/ssd/START__AM__AM0401__AM0401A/NAKUBefolkning2Ar/
- Statistics Sweden. (2024g). *Young people aged 15-34 (LFS) not in employment and not in any education and training (NEET) by sex and age. Year 2007-2023*. Statistikdatabasen. http://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en/ssd/START__AM__AM0401__AM0401U/NAKUNEETBefolkningAr/
- Statistiska Centralbyrån (SCB). (2024). *Statistiska Centralbyrån*. <https://www.scb.se>
- Stockholm stad. (2024). *Avgifter för förskola*. <https://forskola.stockholm/avgifter/>
- Sveriges Kommuner och Regioner. (2024). *Kommuner och regioner*. <https://skr.se/skr/tjanster/kommunerochregioner.431.html>

- Sveriges A-Kassor. (2024). *Unemployment benefits*. <https://www.sverigesakassor.se/sv/om-oss/unemployment-benefits/>
- Sweden.se. (2024). *Strong rights and school for all. Here are 10 aspects of children's lives in Sweden*. <https://sweden.se/life/society/children-in-sweden>
- van Nimwegen, N., van der Erf, R. (2010). Europe at the crossroads: Demographic challenges and international migratio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6(9), 1359-1379. <https://doi.org/10.1080/1369183X.2010.515132>
- Vignoli, D., Guetto, R., Bazzani, G., Pirani, E., & Minello, A. (2020). A reflection on economic uncertainty and fertility in Europe: The narrative framework. *Genus*, 76, 1-27. <https://doi.org/10.1186/s41118-020-00094-3>
- Vignoli, D., Minello, A., Bazzani, G., Matera, C., & Rapallini, C. (2022). Narratives of the future affect fertility: Evidence from a laboratory experiment.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8(1), 93-124. <https://doi.org/10.1007/s10680-021-09602-3>
- Winter, D. G. (1988). The power motive in women and 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3), 510.



[부록 1]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지 (국문)

응답자 ID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으로 2024년 일반과제로 『주요국의 인구정책 비교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주요국의 인구정책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구 현상, 결혼, 출산 및 육아,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를 시행하려 합니다.

본 조사는 **성인남녀 (만 20~49세)** 약 2,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소요시간은 약 15분 내외로 예상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인구정책 수립에 귀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주신 의견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개인정보는 코드화되며, 통계 산출에만 사용되며,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대상자 선별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만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세

※ 현재 조사에 참여해 주시는 날짜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SQ3.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SQ4. 현재 귀하의 거주지 유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대도시
② 대도시의 외곽/교외
③ 중소도시
④ 농어촌지역

SQ5.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 재학 중(휴학 포함) ④ 전문대졸
⑤ 대학 재학 중(휴학 포함) ⑥ 대졸 ⑦ 대학원 재학 중(휴학 포함)
⑧ 대학원 졸

SQ6. 귀하는 현재 함께 사는 파트너, 애인, 배우자가 있습니까?

- ① 예 → (SQ6-1로 이동) ② 아니오 → (SQ6-2로 이동)

SQ6-1. 귀하는 현재 함께 사는 파트너, 애인, 배우자와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 ① 동거 ② 사실혼/등록파트너 ③ 법률혼(married)

SQ6-2. 귀하의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 ① 미혼 ② 이혼 ③ 별거 ④ 사별

SQ7.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예 → (SQ7-1로 이동) ② 아니오 → (SQ8로 이동)

SQ7-1.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자녀 현황	자녀 만 나이	동거 여부
첫째 자녀	___세	동거/비동거
둘째 자녀	___세	동거/비동거
셋째 자녀	___세	동거/비동거
...	...	...
막내 자녀	___세	동거/비동거

SQ8. 귀하 가구의 가구원 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명

※ 배우자, 자녀 등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SQ9. 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 자신이 아닌, 함께 사는 가족이나 친인척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8시간(주당) 이상 일한 경우, '일하였음'입니다.

- ① 일하였음 [PROG. SQ9-1로 이동]
- ② 일시 휴직 (일거리나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사정상 일을 잠시 중단) [PROG. SQ9-1로 이동]
- ③ 교육·훈련 (일거리나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PROG. SQ10으로 이동]
- ④ 일하지 않았지만, 구직 활동을 했음 [PROG. SQ10으로 이동]
- ⑤ 일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았음 [PROG. SQ10으로 이동]
- ⑥ 장애가 있어 일할 수 없음 [PROG. SQ10으로 이동]
- ⑦ 사회복무 또는 군복무(입대 예정 포함) [PROG. SQ10으로 이동]
- ⑧ 가사, 육아 또는 가족 돌봄 [PROG. SQ10으로 이동]

SQ9-1. (SQ9의 ①, ② 응답자만)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지난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은 총 몇 시간입니까?

___시간

※ 지난 1주일 동안 일시 휴직에 해당할 경우, 그 이전 근로했던 마지막 1주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SQ9-2. (SQ9의 ①, ② 응답자만) 귀하의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 ② 계약직
- ③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 ④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⑤ 제로아워계약(zero-hours contract)
- ⑥ 프리랜서(freelancer) 또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 ⑦ 인턴십(internship) 또는 연수(traineeship)
- ⑧ 기타 (_____)

174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SQ10. (SQ6의 ① 응답자만) 파트너 또는 배우자는 지난 1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 자신이 아닌, 함께 사는 가족이나 친인척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8시간(주당) 이상 일한 경우, '일하였음'입니다.

- ① 일하였음 → (SQ10-1로 이동)
- ② 일시 휴직 (일거리나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사정상 일을 잠시 중단) → (SQ10-1로 이동)
- ③ 교육·훈련 (일거리나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④ 일하지 않았지만, 구직 활동을 했음
- ⑤ 일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았음
- ⑥ 장애가 있어 일할 수 없음
- ⑦ 사회복무 또는 군복무(입대 예정 포함)
- ⑧ 가사, 육아 또는 가족 돌봄

SQ10-1. (SQ10의 ①, ② 응답자만)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지난 1주일 동안의 파트너 또는 배우자의 근로시간은 총 몇 시간입니까?

_____시간

※ 지난 1주일 동안 일시 휴직에 해당할 경우, 그 이전 근로했던 마지막 1주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최소 1시간 ~ 최대 140시간)

SQ10-2. (SQ9의 ①, ② 응답자만) 파트너 또는 배우자의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 ② 계약직
- ③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 ④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⑤ 제로아워계약(zero-hours contract)
- ⑥ 프리랜서(freelancer) 또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 ⑦ 인턴십(internship) 또는 연수(traineeship)
- ⑧ 기타 (_____)

SQ11. 귀하 가구의 세후 월 소득은 얼마입니까?

※ 정확한 금액을 모를 경우, 추정치를 바탕으로 하나의 항목만 선택하십시오.

- ① 100만원 미만 / 월
- ② 100 ~ 199만원 / 월
- ③ 200 ~ 299만원 / 월
- ④ 300 ~ 399만원 / 월
- ⑤ 400 ~ 499만원 / 월
- ⑥ 500 ~ 599만원 / 월

- ㉓ 600 ~ 699만원 / 월
- ㉔ 700 ~ 799만원 / 월
- ㉕ 800 ~ 899만원 / 월
- ㉖ 900만원 이상 / 월

SQ12. 귀하는 현재 월소득으로 생활하시기에 얼마나 여유가 있으십니까?

※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입니다.

- ① 현재 가구 소득으로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음
- ② 현재 가구 소득으로 부족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음
- ③ 현재 가구 소득으로 생활하기는 어려움
- ④ 현재 가구 소득으로 생활하기 매우 어려움
- ⑤ 모르겠음

SQ13. (현재의 고용상태와 관계없이) 귀하는 향후 12개월 이내에 실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실업할 가능성 전혀 없음
- ② 실업할 가능성 작음
- ③ 실업할 가능성 있음
- ④ 실업할 가능성 큼
- ⑤ 실업할 가능성 매우 큼
- ⑥ 일할 계획 없음/구직 활동하지 않음
- ⑦ 모르겠음

A.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 다음은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귀하의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AQ1. (SQ6의 ②, SQ6-1의 ①,② 응답자만) 귀하는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결혼할 생각이 있다 ② 결혼할 생각이 없다
③ 생각해본 적 없다 ④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

AQ2. 귀하는 앞으로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낳을 생각이다 → (AQ2-1로 이동)
② 낳지 않을 생각이다 → (AQ3으로 이동)
③ 생각해본 적 없다 → (AQ3으로 이동)
④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 → (AQ3으로 이동)

AQ2-1. (AQ2의 ① 응답자만) 낳을 생각이시면, 몇 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_____명

AQ3.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0부터 입력 가능)

_____명

AQ4. 귀하가 가족(자녀 출산)계획을 세울 때 다음의 사항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십니까? [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가정의 경제적 여건	①	②	③	④	⑤
2) 본인의 건강	①	②	③	④	⑤
3) 배우자의 건강	①	②	③	④	⑤
4) 본인의 취업 상태	①	②	③	④	⑤
5) 배우자의 취업 상태	①	②	③	④	⑤
6) 주거 여건	①	②	③	④	⑤
7) 일-생활 균형	①	②	③	④	⑤
8) 경력 단절의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9)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10) 정부의 충분한 지원	①	②	③	④	⑤
11)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	①	②	③	④	⑤

AQ5.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더라도 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녀를 갖게 된다면 귀하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①	②	③	④
2) 집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	①	②	③	④
3) 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①	②	③	④
4) 배우자(파트너 포함)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①	②	③	④
5)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	①	②	③	④
6) 배우자(파트너 포함)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	①	②	③	④
7)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	①	②	③	④

AQ6. 귀하는 다음의 역할을 남성과 여성 중 누가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1)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	①	②	③	④	⑤
2) 음식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일	①	②	③	④	⑤
3)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	①	②	③	④	⑤

B.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BQ1. (SQ6의 ① 응답자만) 귀하와 배우자/애인/파트너의 실제 가사분담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본인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배우자/애인/파트너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BQ2. (SQ6의 ① 응답자만) 귀하와 배우자/애인/파트너의 적절한 가사분담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본인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배우자/애인/파트너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BQ3. (SQ6에 ①을 응답하고, SQ7-1의 막내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인 경우) 귀하와 배우자의 실제 육아분담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육아란 만 0세 ~ 만 12세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본인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배우자/애인/파트너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BQ4. (SQ6에 ①을 응답하고, SQ7-1의 막내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인 경우) 귀하와 배우자의 적절한 육아분담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육아란 만 0세 ~ 만 12세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본인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배우자/애인/파트너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BQ5. 귀하는 일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 ① 전혀 어렵지 않다 ② 어렵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어려운 편이다 ⑤ 매우 어렵다

BQ6. 우리 사회에서 돌봄에 대한 견해는 다양합니다. 아래에 언급된 각 항목에 대해 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족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주로 사회가 해야 할 일	가족보다는 사회가 해야 할 일	사회와 가족 모두가 해야 할 일	사회보다는 가족이 해야 할 일	주로 가족이 해야 할 일
1)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①	②	③	④	⑤
2) 병과 후 시간 중 취학 아동 에 대한 돌봄	①	②	③	④	⑤

C.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CQ1. 인구 변화에 대한 아래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표시해주시시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한국의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3)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4)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CQ2. 아래 다섯 그림은 다양한 사회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각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읽으신 후, 한국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그림을 선택해 주십시오.

				
유형A	유형B	유형C	유형D	유형E
상단은 소수의 엘리트, 중간에는 극소수의 사람들, 하단에 수많은 사람	피라미드처럼 상단에는 소수의 엘리트, 중간에는 더 많은 사람들, 맨 아래에는 대다수가 있는 사회	피라미드(유형B)와 유사하지만, 하단에 상대적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 점이 다름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사회	상단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단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있음

- ① 유형 A
- ② 유형 B
- ③ 유형 C
- ④ 유형 D
- ⑤ 유형E
- ⑥ 모르겠음

CQ3. 아래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또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자산이 너무 많다.	①	②	③	④	⑤
기후변화는 한국에 심각한 위협이다.	①	②	③	④	⑤

CQ4. 한국에서 개인이 성공(출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요인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지는 않다	상당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1) 부유한 가정	①	②	③	④	⑤
2)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	①	②	③	④	⑤
3) 개인의 노력	①	②	③	④	⑤
4) 정치적 인맥	①	②	③	④	⑤
5) 성별	①	②	③	④	⑤
6)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①	②	③	④	⑤

CQ5. 귀하의 현 생활 수준은 부모님께서 귀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훨씬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③ 차이가 거의 없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훨씬 나빠졌다

CQ6. 귀하의 자녀들이 귀하의 현재 나이가 될 때 자녀들의 생활수준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없더라도 있다고 가정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훨씬 좋아질 것이다 ② 약간 좋아질 것이다 ③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④ 약간 나빠질 것이다 ⑤ 훨씬 나빠질 것이다

D.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

DQ1. 다음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입니다. 이에 대하여 알고 계신 정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조금 안다	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
1) 임신, 출산 지원(의료보험 등)	①	②	③	④	⑤
2) 출산을 하였을 경우 수당이나 물품 지급 (출산장려금, 출산용품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3)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①	②	③	④	⑤
4) 어린이집 지원(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5) 자녀에 대한 수당(아동수당, 가족수당 등)	①	②	③	④	⑤
6) 세금을 통한 지원(세금 경감)	①	②	③	④	⑤
7) 다자녀가구 추가 지원	①	②	③	④	⑤
8)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	①	②	③	④	⑤

DQ2. 다음은 다양한 (가족, 인구, 일·가정 양립)정책들 중 귀하의 직장생활과 관련성이 있는 정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본인의 실제 경험 혹은 (본인의 활용 경험이 없다면) 주변 지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편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함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편	전혀 활용할 수 없음	모르겠음
1) 여성의 육아휴직	①	②	③	④	⑤	⑥
2) 남성의 육아휴직	①	②	③	④	⑤	⑥
3) 유연근로제	①	②	③	④	⑤	⑥
4) 출산휴가	①	②	③	④	⑤	⑥
5) 가족돌봄휴가	①	②	③	④	⑤	⑥

DQ3. 귀하는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정부가 예산 투입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 ② 관련 예산을 조금 늘려야 한다.
- ③ 관련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 ④ 관련 예산을 조금 줄여야 한다.
- ⑤ 관련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

[부록 2]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지 (스웨덴어)

Undersökning om syn på giftermål, barnafödelse, och barnomsorg

Koreanska institutet för hälsa och socialfrågor genomför en undersökning om befolkningspolicyer i olika länder. Som en del av detta projekt fokuserar vi på att förstå synen på samlevnad/giftermål, befolkningsfrågor, barnafödelse och barnomsorg.

Undersökningen vänder sig till 2500 vuxna i Sverige, mellan 20 och 49 år. Enkäten tar cirka 15 minuter att genomföra och dina svar kommer att vara helt anonyma. All data kommer enbart att användas i vetenskapliga syften, detta inkluderar, men är inte begränsat till, vetenskapliga publikationer (t.ex., tidningar, arbetsdokument, bokkapitel) och offentliga arrangemang där viktiga fynd från denna undersökning kommer att kommuniceras till allmänheten.

Förvaring, delning, och vetenskaplig användning av denna data regleras av Europeiska unionens allmänna dataskyddsbestämmelse (GDPR 2016/679). Om du samtycker till dessa villkor, kan du fortsätta med följande frågor och besvara dem så ärligt som möjligt.

Tack för ditt deltagande!

Juli 2024

Koreanska institutet för hälsa och socialfrågor

Urval av Respondenter i Undersökningen

SQ1. Vilket kön tillhör du?

① man

② kvinna

SQ2. Hur gammal är du? _____ år gammal

※ Vänligen ange din ålder som är aktuell på dagens datum (datum för ditt deltagande i undersökningen).

SQ3. Var bor du?

1. Stockholms län
2. Uppsala län
3. Södermanlands län
4. Östergötlands län
5. Jönköpings län
6. Kronobergs län
7. Kalmar län
8. Gotlands län
9. Blekinge län
10. Skåne län
11. Hallands län
12. Västra Götalands län
13. Värmlands län
14. Örebro län
15. Västmanlands län
16. Dalarnas län
17. Gävleborgs län
18. Västernorrlands län
19. Jämtlands län
20. Västerbottens län
21. Norrbottens län

SQ4. Välj det som bäst beskriver var du för närvarande bor.

- ① i en stor stad
- ② i utkanten/förort av en stor stad
- ③ i en liten/medel-stor stad
- ④ i en landsbygdsregion

SQ5. Vilken är din högsta utbildningsnivå?

1. Ej avslutad folkskola/grundskola skolår 1-6
2. Avslutad folkskola, Grundskolan skolår 7-8
3. Avslutad grundskola skolår 9
4. Fackskola (1963-1970) - 2-årig gymnasielinje, 2-årig yrkesskola
5. Studieförberedande gymnasieprogram (3 år)
6. Gamla gymnasieutbildningar på två år
7. Yrkesinriktade gymnasieprogram (3 år)

8. 4-årig gymnasielinje (före 1995)/Tekniskt basår
9. Universitet/Högskola, 1 år, med examen
10. Eftergymnasial utbildning, ej universitet/högskola, 1 år (t ex KY-utbildning, militärutbildning)
11. Universitet/Högskola, 2 år, med examen (högskoleexamen)
12. 2-3 år KY-utbildning, eftergymnasial utbildning, ej universitet/högskola 3 år
13. Kandidat och/eller yrkesexamen från högskola, 3-4 år
14. Kandidat och/eller yrkesexamen från universitet, Kungliga tekniska högskolan, Chalmers tekniska högskola, Handelshögskolan, 3-4 år
15. Magisterexamen och/eller yrkesexamen från Högskola, >4 år
16. Mastersexamen från högskola
17. Magisterexamen och/eller yrkesexamen från universitet, KTH, CTH, Handelshögskolan >4 år
18. Mastersexamen från universitet, KTH, CTH, Handelshögskolan
19. Forskarutbildning: Licentiatexamen
20. Forskarutbildning: Doktorsexamen

SQ6. Har du en make/maka, tillfällig partner, eller stadigvarande partner som bor med dig?

- ① Ja ② Nej

SQ6-1. Vilken sorts förhållande har du med din nuvarande make/maka, tillfällig partner, eller stadigvarande partner?

- ① Bor tillsammans utan att vara gifta ② Gifta

SQ6-2. Vilket är ditt civilstånd?

- ① ogift ② skild ③ separerad ④ änka

SQ7. Har du barn?

- ① Ja ② Nej

SQ7-1. Hur många barn har du?

Totalt antal barn: _____

Antal biologiska barn: _____

(※ Om du enbart har ett barn, vänligen svara för det barnet)

Nuvarande Barn	Födelseår	Födelsemånad	Bor med dig?	
Första barnet			① Ja	② Nej
Andra barnet			① Ja	② Nej
Tredje barnet			① Ja	② Nej
Fjärde barnet			① Ja	② Nej
Femte barnet			① Ja	② Nej
Sjätte barnet			① Ja	② Nej
Sjunde barnet			① Ja	② Nej
Åttonde barnet			① Ja	② Nej

Nionde barnet			① Ja	② Nej
Sista barnet			① Ja	② Nej

SQ8. Hur många medlemmar ingår i ditt hushåll? _____

※ Vänligen svara inklusive dig själv och alla som just nu bor med dig, som fru och barn.

SQ9. Vad har du mest gjort under den gångna veckan?

* Om du arbetat under minst 18 timmar (per vecka) utan att få kompensation av en affärsverksamhet eller bondgård som tillhör en familjemedlem eller släkting som bor med dig, så anses det att du har "arbetat".

- ① arbetat
- ② på temporär ledighet (temporärt uppehåll av arbete medan du är anställd eller har ett arbete)
- ③ utbildning/träning (deltagande i utbildning/träning medan du är arbetslös eller utan ett arbete)
- ④ arbetade inte men letade efter ett arbete
- ⑤ arbetade inte och letade inte efter ett arbete
- ⑥ kunde inte arbeta på grund av funktionsnedsättning
- ⑦ samhällstjänst eller militärtjänst (inklusive förväntad mönstring)
- ⑧ hushållsarbete, barnomsorg, eller familjevård

SQ9-1. Hur många timmar har du totalt arbetat under den senaste veckan, exklusive måltider och raster? _____ timmar

※ Om du har varit på en temporär ledighet under den senaste veckan, vänligen svara baserat på din senaste arbetsvecka.

SQ9-2. Vilket av följande beskriver bäst din anställning?

- ① tillsvidareanställning (fast anställning)
- ② tidsbegränsad anställning (visstidsanställning)
- ③ egenanställd med anställda
- ④ egenanställd utan anställda
- ⑤ nolltimmarsavtal
- ⑥ frilansare eller oberoende uppdragstagare
- ⑦ praktik eller lärlingsplats
- ⑧ annat (_____)

SQ10. Vad har din partner eller make/maka huvudsakligen gjort under den gångna veckan?

* Om din partner eller make/maka arbetat under minst 18 timmar (per vecka) utan att få kompensation på en affärsverksamhet eller bondgård som tillhör en familjemedlem eller släkting som bor med honom/henne så anses det att hon/han har "arbetat".

- ① arbetat
- ② på temporär ledighet (temporärt uppehåll i arbetet medan du är anställd eller har ett arbete)

- ③ utbildning/träning (deltagande i utbildning/träning medan du är arbetslös eller utan ett arbete)
- ④ arbetade inte men letade efter ett arbete
- ⑤ arbetade inte men letade inte efter ett arbete
- ⑥ kunde inte arbeta på grund av funktionsnedsättning
- ⑦ samhällstjänst eller militärtjänst (inklusive förväntad mönstring)
- ⑧ hushållsarbete, barnomsorg, eller familjeomsorg

SQ10-1. Hur många timmar har din partner eller make/maka totalt arbetat under den gångna veckan, exklusive måltider och raster?

_____ timmar

※ Om din partner eller make/maka har varit temporärt ledig under den gångna veckan, vänligen svara baserat på hans/hennes senaste arbetsvecka.

SQ10-2. Vilket av följande beskriver bäst din partners eller makes/makas anställning?

- ① tillsvidareanställning (fast anställning)
- ② tidsbegränsad anställning (visstidsanställning)
- ③ egenanställd med anställda
- ④ egenanställd utan anställda
- ⑤ nolltimmarsavtal
- ⑥ frilansare eller oberoende uppdragstagare
- ⑦ praktik eller lärlingsplats
- ⑧ annat (_____)

SQ11. Vilken månadsinkomst har ditt hushåll efter skatter och transfereringar?

※ Om du inte vet exakt summa, vänligen välj ett alternativ baserat på din uppskattning.

- 1. Mindre än 15,000 SEK / månad
- 2. 15,000 - 19,999 SEK / månad
- 3. 20,000 - 24,999 SEK / månad
- 4. 25,000 - 29,999 SEK / månad
- 5. 30,000 - 34,999 SEK / månad
- 6. 35,000 - 44,999 SEK / månad
- 7. 45,000 - 54,999 SEK / månad
- 8. 55,000 - 64,999 SEK / månad
- 9. 65,000 - 74,999 SEK / månad
- 10. 75,000 SEK / månad eller mer

SQ12. Med nuvarande hushållsinkomst, hur svårt är det att få ekonomin att gå ihop?

※ Ett "hushåll" är en boenhet som består av bara en individ, eller minst två personer som delar samma uppehälle så som matlagning och sömn.

- ① Väldigt enkelt
- ② Enkelt
- ③ Svårt

- ④ Väldigt svårt
- ⑤ Vet inte

SQ13. Hur sannolikt tror du att det är att du blir arbetslös under de kommande 12 månaderna (oavsett din nuvarande anställningsstatus)?

- ① Definitivt osannolikt
- ② Väldigt osannolikt
- ③ Ganska sannolikt
- ④ Sannolikt
- ⑤ Väldigt sannolikt
- ⑥ Inga planer på att arbeta/söker inte anställning
- ⑦ Vet inte

A. Uppfattningar om giftermål, barnafödelse, och könsroller

※ Följande frågor handlar om dina tankar kring giftermål och barnafödelse.

AQ1. Har du planer på att gifta dig i framtiden?

- ① Ja
- ② Nej
- ③ Jag har aldrig tänkt på det.
- ④ Jag har inte bestämt mig än (jag vet inte).

AQ2. Har du planer på att skaffa barn i framtiden?

- ① Ja
- ② Nej
- ③ Jag har aldrig tänkt på det
- ④ Jag har inte bestämt mig än (jag vet inte)

AQ2-1. Om du funderar på att skaffa barn, hur många planerar du att skaffa?
(* Vänligen inkludera ditt/dina barn i svaret.)

AQ3. I allmänhet, vad tycker du är det bästa antalet barn att skaffa sig? (Ange ett nummer på 0 eller högre)

AQ4. Hur viktiga är följande faktorer för dig när du fastställer en familjeplan (för att skaffa barn)?

Kategori	Inte alls viktigt	Inte viktigt	Varken viktigt eller oviktigt	Viktigt	Väldigt viktigt
1) Finansiella förhållanden i hushållet	①	②	③	④	⑤
2) Min hälsa	①	②	③	④	⑤

3) Min makes/makas hälsa	①	②	③	④	⑤
4) Min anställningsstatus	①	②	③	④	⑤
5) Min make/makas anställningsstatus	①	②	③	④	⑤
6) Boendeförhållanden	①	②	③	④	⑤
7) Balans mellan arbete och privatliv	①	②	③	④	⑤
8) Oro och osäkerhet för karriärmöjlighet	①	②	③	④	⑤
9) Möjlighet till barnomsorgstjänster	①	②	③	④	⑤
10) Tillräckligt myndighetsstöd	①	②	③	④	⑤
11) Ängest, oro, och osäkerhet kring framtiden	①	②	③	④	⑤

AQ5. Även om du inte planerar att skaffa barn, så vill vi höra din åsikt om möjligheten. Hur tror du att det skulle påverka olika aspekter av ditt liv att skaffa barn?

Kategori	Håller inte alls med	Håller inte med	Neutral	Håller med	Håller helt med
1) Det är mindre sannolikt att jag fritt kan göra det jag vill.	①	②	③	④	⑤
2) Glädjen och tillfredsställelsen jag får från livet kommer att öka.	①	②	③	④	⑤
3) Jag kommer att få färre Karriärmöjligheter.	①	②	③	④	⑤
4) Min make/make (eller partner) kommer att få färre Karriärmöjligheter.	①	②	③	④	⑤
5) Jag kommer att få ökad omsorg och säkerhet när jag blir gammal.	①	②	③	④	⑤
6) Det kommer att finnas mer intimitet mellan mig och min make/maka (eller partner).	①	②	③	④	⑤
7) Det kommer att innebära en större finansiella börda.	①	②	③	④	⑤

AQ6. Tror du att följande uppgifter är bäst lämpade för män eller kvinnor?

Kategori	Män	Mest män	Både män och kvinnor	Mest kvinnor	Kvinnor
1) Arbeta och tjäna pengar för att stödja ens familj	①	②	③	④	⑤
2) Dagligt hushållsarbete som förberedelse av måltider, rengöring av hem, och tvätt	①	②	③	④	⑤
3) Att ta hand om små barn	①	②	③	④	⑤

B. Delat hushållsarbete och barnomsorg

※ Följande frågor handlar om dina tankar kring delat hushållsarbete och barnomsorg.

BQ1. Vad tror du är den aktuella procentandel för hushållsarbete som delas mellan dig och din make/maka/sambo/partner? Vänligen välj bland följande alternativ.

Kategori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u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Make/maka/ sambo/partner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BQ2. Vad tycker du skulle vara den bästa procentandelen för hushållsarbete som delas mellan dig och din make/maka/sambo/partner? Vänligen välj bland följande alternativ.

Kategori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u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Make/maka/ sambo/part ner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BQ3. Vad tror du är den aktuella procentandelen för barnomsorg är mellan dig och din partner? Vänligen välj bland följande alternativ.

※ "Barnomsorg" refererar till direkt omsorg för barnen mellan åldern 0 och 12 år.

Kategori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u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Make/maka/ sambo/part ner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BQ4. Vad tror du skulle vara den bästa procentandelen för barnomsorg som delas mellan dig och din partner? Vänligen välj bland följande alternativ.

※ "Barnomsorg" refererar till direkt omsorg för barnen mellan åldern 0 och 12 år.

Kategori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u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Make/maka/ sambo/part ner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BQ5. Hur svårt är det för dig att balansera arbete, hushållsuppgifter och barnomsorg?

- ① inte alls svårt
- ② inte svårt
- ③ genomsnitt
- ④ svårt
- ⑤ extremt svårt

BQ6. Det finns olika åsikter om omsorg i ditt samhälle. För var och en av följande objekt, vänligen svara på om det är samhällets ansvar eller om det är familjens.

Kategori	Samhällets ansvar för det mesta	Mer samhällets ansvar än familjens	Både samhällets och familjens ansvar	Mer familjens ansvar än samhällets	Familjens ansvar för det mesta
1) Omsorg för förskolebarn	①	②	③	④	⑤
2) Fritidshem för barn i skolåldern	①	②	③	④	⑤

C. Uppfattningar om demografiska förändringar och samhället

※ Följande frågor handlar om vad du tänker kring demografiska förändringar och samhället.

CQ1. Vänligen ange hur mycket du håller med eller inte håller med om följande påståenden gällande demografiska förändringar.

Kategori	Håller inte alls med	Håller inte med	Neutral	Håller med	Håller helt med
1) Nuvarande födelsetal i Sverige är acceptabla.	①	②	③	④	⑤
2) Minskningen av de nationella födelsetalen har en negativ påverkan på mitt liv.	①	②	③	④	⑤
3) Minskningen av de nationella födelsetalen har en negativ påverkan på framtida generationer.	①	②	③	④	⑤
4) Regeringen gör tillräckliga ansträngningar för att motverka minskningen av de nationella födelsetalen.	①	②	③	④	⑤

CQ2. Följande fem figurer visar strukturerna av olika samhällen. Efter att du har läst beskrivningen av varje figur, vänligen välj den figur som bäst beskriver Sverige.

Typ A	Typ B	Typ C	Typ D	Typ E

192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Ett samhälle med ett litet antal eliter i toppen, ännu färre personer i mitten, och ett stort antal personer på botten	Ett samhälle med ett litet antal eliter på toppen, fler personer i mitten och majoriteten på botten, som en pyramid	Ett samhälle som liknar pyramiden (Typ B), men med ett litet antal personer på botten	Ett samhälle med majoriteten av personer i mitten	Ett samhälle där antalet personer minskar ju längre ned man går från toppen. Det finns ett stort antal personer på toppen och färre personer på botten.
--	---	---	---	---

① Typ A ② Typ B ③ Typ C ④ Typ D ⑤ Typ E ⑥ Jag vet inte

CQ3. Vänligen ange hur mycket du håller med om eller inte håller med om av följande uttalanden.

Kategori	Håller inte alls med	Håller inte med	Neutral	Håller med	Håller helt med
1) Sverige är överlag ett rättvist samhälle.	①	②	③	④	⑤
2) Inkomstskillnaderna i Sverige är inte så stora.	①	②	③	④	⑤
3) Den rikaste 1% av människor i Sverige har för mycket välstånd.	①	②	③	④	⑤
4) Klimatförändringarna utgör ett allvarligt hot mot vår nation.	①	②	③	④	⑤

CQ4. Hur viktig tror du att följande faktorer är för att en individ ska lyckas (nä framgång) i livet i Sverige

Kategori	Inte alls viktigt	Inte så viktigt	Viktigt	Väldigt viktigt	Avgörande
1) Rik familj	①	②	③	④	⑤
2) Föräldrar som fått en kvalitetsutbildning	①	②	③	④	⑤
3) Individuell ansträngning	①	②	③	④	⑤
4) Politiska kontakter	①	②	③	④	⑤
5) Kön	①	②	③	④	⑤
6) Ras eller etnisk bakgrund	①	②	③	④	⑤

CQ5. Hur mycket bättre eller värre tror du att din nuvarande levnadsstandard är jämfört med dina föräldrars när du var i deras ålder?

- ① mycket bättre ② något bättre ③ nästan ingen skillnad
④ något värre ⑤ mycket värre

CQ6. Hur tror du dina barns levnadsstandard kommer att se ut när de är i din ålder?

(Om du inte har några barn, vänligen anta att du har det och ge ett svar.)

- ① mycket bättre ② något bättre ③ nästan ingen skillnad
④ något värre ⑤ mycket värre

D. Befolkningspolicyer och budgetallokering

※ Följande frågor handlar om dina tankar om befolkningspolicy och investering.

DQ1. Följande är olika policyer som förespråkas av regeringen. Vänligen berätta för oss hur medveten du är om dessa polic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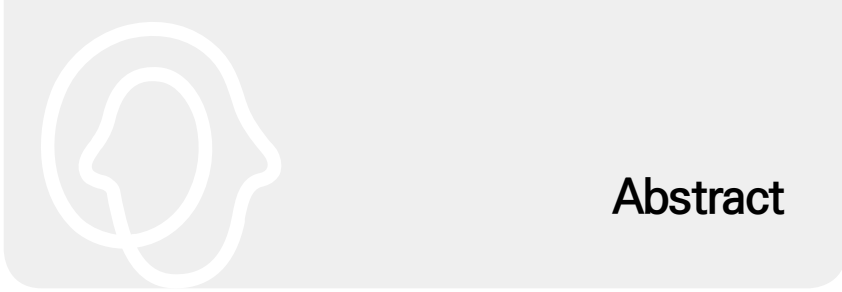
Kategori	Helt omedveten	För det mesta omedveten	En aning medveten	Någorunda medveten	Väldigt medveten
1) Stöd vid graviditet och barnafödselförlossningsvård, etc.	①	②	③	④	⑤
2) Betalning av ersättning eller gods efter barnafödselförlossningsvården, barnavården, etc.)	①	②	③	④	⑤
3) Föräldraledighet och föräldraförsäkring	①	②	③	④	⑤
4) Stöd till kommuners förskoleverksamhet (expansion av daghem, tillhandahållande av bidrag för dagisavgift, etc.)	①	②	③	④	⑤
5) Ersättning för barn (barnbidrag, bostadsbidrag för barnfamiljer, etc.)	①	②	③	④	⑤
6) Stöd genom skatter (skattelättnad)	①	②	③	④	⑤
7) Ytterligare stöd för familjer med flera barn (flerbarnstillägg)	①	②	③	④	⑤
8) Policyer för jämnare befolkningsutveckling i olika regioner	①	②	③	④	⑤

DQ2. Följande är några av de policyer (familj, befolkning, och arbetslivsbalans) som är relevant för ditt arbetsliv. Vänligen svara på användbarheten av var och en av följande objekt baserat på din egen erfarenhet eller någon du känner (om du aldrig har använt den tidigare).

Kategori	Kan användas väldigt fritt	Kan användas relativt fritt	Kan användas i viss utsträckning	Kan inte användas för det mesta	Kan inte användas	Jag vet inte
1) Barnomsorgsledighet för kvinnor	①	②	③	④	⑤	⑥
2) Barnomsorgsledighet för män	①	②	③	④	⑤	⑥
3) Flexitid	①	②	③	④	⑤	⑥
4) Föräldraledighet	①	②	③	④	⑤	⑥
5) Ledighet för närstående vård	①	②	③	④	⑤	⑥

DQ3. Hur bör regeringen allokera sin budget för barnafödelse och barnomsorg?

- ① Regeringen bör öka resurserna till barnafödelse och barnomsorg avsevärt.
- ② Regeringen bör öka resurserna till barnafödelse och barnomsorg något.
- ③ Regeringen bör behålla den nuvarande nivån på resurser till barnafödelse och barnomsorg.
- ④ Regeringen bör minska resurserna till barnafödelse och barnomsorg något.
- ⑤ Regeringen bör minska resurserna till barnafödelse och barnomsorg avsevärt.



Abstract

A Case Study on Sweden's Population Policy

Project Head: Shin, Young-Kyu

South Korea is facing a demographic crisis marked by persistently low fertility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despite long-standing governmental interventions. Existing policies have had limited success in reversing the trend, prompting the need for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Sweden, in contrast, has historically implemented a range of policy measures that have contributed to relatively higher fertility rates and a stable population structure. This study explores Sweden's experience in managing demographic changes, extending the analysis beyond traditional family policies to encompass labor market strategies, immigration frameworks, and pension systems. Additionally, it examines public perceptions of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rearing in both countries to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policy reform in South Korea.

Sweden's approach to demographic challenges has evolved over decades, beginning with targeted interventions in the 1930s to counter fertility decline. Policies such as housing assistance, paid maternity leave, and contraception legalization were introduced to encourage voluntary parenthood. From the 1960s onward, gender equality initiatives further supported

Co-Researchers: Cho, Sungho·Byun, Younghwan·Nam, Yunjae·Kim, Wooseong

work-life balance, reducing childcare burdens and increasing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Today, Sweden continues to maintain generous family policies, yet recent declines in fertility rates indicate the need for continuous policy refinement. Alongside family-focused policies, Sweden has embraced broader socio-economic strategies, including labor market policies that promote employment stability, vocational training, and structured immigrant integration. Immigration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sustaining population growth, shifting from a multicultural focus to a social integration model that prioritizes language acquisition and civic education.

For South Korea, the Swedish experience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an integrated policy approach. Rather than relying on fragmented measures, South Korea must align family, labor, immigration, and pension policies to create a more sustainable demographic strategy. The country also needs to reconsider its immigration policies, as labor shortages become more pronounced. By adopting a more inclusive and equitable approach to immigration, South Korea could mitigate workforce challenges while fostering long-term economic stability. Moreover, reducing the burden of childcare requires not only financial incentives but also cultural and institutional reforms that promote work-life balance and gender-inclusive family models. By learning from Sweden's holistic framework, South Korea can develop innovative solutions to address its demo-

graphic crisis and ensure a more sustainable future.

Key words: Sweden, population policy, gender equality, marriage, childbirth, child-rearing, family policy, immigration policy, labor market policy, old-age income security